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297-000290-12



2017년 보조기기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주관 연구기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책임 연구 : 김동아(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공동 연구진

정승민(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손소희(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자문위원

김선흥(국립재활원)

유성문(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임성은(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기민정(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김남희(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김명아(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재민(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김기향(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만석(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병용(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남세현(한신대학교)

이민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CONTENTS

I 서론 / 1

1. 조사배경	3
2. 조사목적	5

II 조사방법 / 7

1. 표본추출	9
1) 보조기기 이용실태	9
2) 보조기기 산업실태	9
2. 조사내용	10
1) 보조기기 이용실태	10
2) 보조기기 산업실태	11
3. 조사방법	11
1) 보조기기 이용실태	11
2) 보조기기 산업실태	12
4. 자료처리	12
1) 보조기기 이용실태	12
2) 보조기기 산업실태	12

III 보조기기 정의와 분류 / 15

1. 보조기기 정의	17
2. 보조기기 분류	18

CONTENTS

IV 조사결과 / 21

1. 보조기기 이용실태	23
1) 보조기기 이용현황	23
2) 보조기기 확보 및 서비스 이용현황	38
3) 제도 개선 사항	46
2. 보조기기 산업실태	48
1) 일반현황	48
2) 인력현황	59
3) 품목현황	64
4) 운영현황	69
5) 산업 시장규모	82
6) 제도개선	83

V 시사점 / 89

1. 보조기기 이용실태	91
2. 보조기기 산업실태	93

VI 참고문헌 / 95

VII 부록 / 99

부록 1. 2017년 보조기기 산업실태조사 조사표	101
부록 2. 산업실태조사 대상 사업체 정보	108
부록 3. 장애인보조기기법	123

〈표 2-1〉 모집단 현황	10
〈표 2-2〉 보조기기 이용실태 주요 조사항목	10
〈표 2-3〉 보조기기 산업실태 주요 조사항목	11
〈표 2-4〉 시장규모 추정식	13
〈표 3-1〉 사업별 보조기기 용어 사용 현황	17
〈표 3-2〉 보조기기 분류	19
〈표 4-1〉 보조기기 소지대비 사용률	24
〈표 4-2〉 소지한 보조기기 미사용 이유(중증1~3급)	26
〈표 4-3〉 소지한 보조기기 미사용 이유(경증4~6급)	27
〈표 4-4〉 보조기기 필요현황	28
〈표 4-5〉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하지 않는 이유(중증1~3급)	29
〈표 4-6〉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하지 않는 이유(경증4~6급)	30
〈표 4-7〉 주사용 보조기기 품목별 사용 빈도	31
〈표 4-8〉 주사용 보조기기 품목별 하루 사용 시간	33
〈표 4-9〉 주사용 보조기기 품목별 만족도	35
〈표 4-10〉 보조기기 이용 불만족 이유(중증1~3급)	36
〈표 4-11〉 보조기기 이용 불만족 이유(경증4~6급)	37
〈표 4-12〉 주사용 보조기기 품목별 구입 경로	40
〈표 4-13〉 보조기기 지원사업별 지원수준 충분도	42
〈표 4-14〉 상담평가 이용여부(중증1~3급)	43
〈표 4-15〉 상담평가 이용여부(경증4~6급)	43
〈표 4-16〉 사용교육 및 훈련 이용 여부(중증1~3급)	44
〈표 4-17〉 사용교육 및 훈련 이용 여부(경증4~6급)	44
〈표 4-18〉 사후관리 이용여부(중증1~3급)	45
〈표 4-19〉 사후관리 이용여부(경증4~6급)	45
〈표 4-20〉 제도개선 사항(중증1~3급)	46
〈표 4-21〉 제도개선 사항(경증4~6급)	47
〈표 4-22〉 설립시기	48
〈표 4-23〉 기업형태(설립근거, 준거법 기준)	50
〈표 4-24〉 기업형태(중소기업, 벤처기업)	51
〈표 4-25〉 소재지	52
〈표 4-26〉 주 업체유형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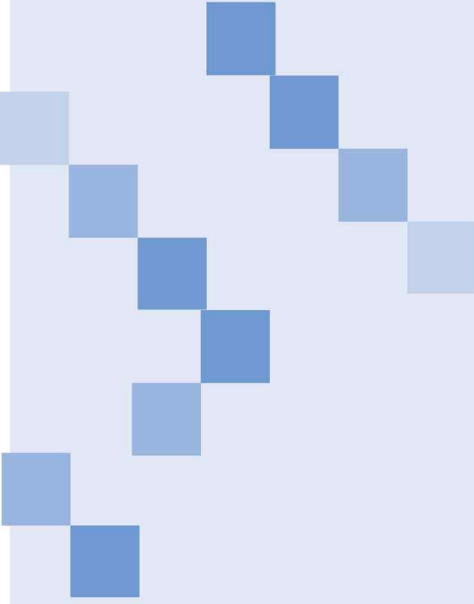
CONTENTS

〈표 4-27〉 주 취급분야	54
〈표 4-28〉 연구개발(R&D) 부서 유무	55
〈표 4-29〉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R&D) 유무	56
〈표 4-30〉 인증현황_1	57
〈표 4-31〉 인증현황_2	58
〈표 4-32〉 성별 평균 종사자 현황	59
〈표 4-33〉 고용형태별 평균 종사자 현황	60
〈표 4-34〉 부서별 평균 종사자 현황	61
〈표 4-35〉 학력별 평균 종사자 현황	62
〈표 4-36〉 자격증별 평균 종사자 현황	63
〈표 4-37〉 보유품목 국내 품질 인증 현황	64
〈표 4-38〉 보유품목 국제 품질 인증 현황	65
〈표 4-39〉 품질 취득인증 현황	66
〈표 4-40〉 판매제품	67
〈표 4-41〉 개발제품	68
〈표 4-42〉 연도별 평균 매출액	69
〈표 4-43〉 평균 매출액 규모별 비율	70
〈표 4-44〉 보조기기 부문 평균 매출액	71
〈표 4-45〉 보조기기 부문 평균 매출액 비율	72
〈표 4-46〉 총 매출액 대비 보조기기 부문 매출액 비율	73
〈표 4-47〉 판매처별 판매 비율	74
〈표 4-48〉 제품 판매 방식	75
〈표 4-49〉 제품 생산 방식	76
〈표 4-50〉 수출 현황	77
〈표 4-51〉 국가별 수출 현황	78
〈표 4-52〉 수입 현황	79
〈표 4-53〉 국가별 수입 현황	80
〈표 4-54〉 수입 병행 이유	81
〈표 4-55〉 보조기기 산업 시장규모	82
〈표 4-56〉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종합순위)	83
〈표 4-57〉 국내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	84
〈표 4-58〉 국내 보조기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86

[그림 1-1] 년도별 공적급여 지원 규모	4
[그림 3-1] 보조기기와 의료기기 관리 체계	18
[그림 4-1] 중증 및 경증장애별 보조기기 미사용 이유	26
[그림 4-2] 중증 및 경증장애별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하지 않는 이유	29
[그림 4-3] 주사용 보조기기 사용 빈도	31
[그림 4-4] 주사용 보조기기 하루 사용 시간	33
[그림 4-5] 주사용 보조기기 만족도	35
[그림 4-6] 중증 및 경증장애별 보조기기 이용 불만족 이유	36
[그림 4-7] 보조기기 지원사업 이용현황	38
[그림 4-8] 보조기기 구입경로 현황	39
[그림 4-9] 주사용 보조기기 구입 경로	40
[그림 4-10] 보조기기 지원사업별 지원수준 충분도	42
[그림 4-11] 보조기기 상담평가 이용여부(중증1~3급)	43
[그림 4-12] 보조기기 상담평가 이용여부(경증4~6급)	43
[그림 4-13] 보조기기 사용교육 및 훈련 이용여부(중증1~3급)	44
[그림 4-14] 보조기기 사용교육 및 훈련 이용여부(경증4~6급)	44
[그림 4-15] 보조기기 사후관리(A/S) 여부(중증1~3급)	45
[그림 4-16] 보조기기 사후관리(A/S)여부(경증4~6급)	45
[그림 4-17] 중증 및 경증 장애별 제도개선 사항	46
[그림 4-18] 설립시기	48
[그림 4-19] 설립근거 기준 기업형태	49
[그림 4-20] 준거법 기준 기업형태	49
[그림 4-21] 기업형태(중소기업, 벤처기업)	51
[그림 4-22] 소재지	52
[그림 4-23] 주 업체유형	53
[그림 4-24] 주 취급분야	54
[그림 4-25] 연구개발(R&D) 부서 유무	55
[그림 4-26]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R&D) 실시 유무	56

CONTENTS

[그림 4-27] 인증현황	57
[그림 4-28] 성별 평균 종사자 현황	59
[그림 4-29] 고용형태별 평균 종사자 현황	60
[그림 4-30] 부서별 평균 종사자 현황	61
[그림 4-31] 학력별 평균 종사자 현황	62
[그림 4-32] 자격증별 평균 종사자 현황	63
[그림 4-33] 보유품목 국내 품질 인증 현황	64
[그림 4-34] 보유품목 국제 품질 인증 현황	65
[그림 4-35] 품질 취득인증 현황	66
[그림 4-36] 판매제품	67
[그림 4-37] 개발제품	68
[그림 4-38] 연도별 평균 매출액	69
[그림 4-39] 평균 매출액 규모별 비율	70
[그림 4-40] 보조기기 부문 평균 매출액	71
[그림 4-41] 보조기기 부문 평균 매출액 비율	72
[그림 4-42] 총 매출액 대비 보조기기 부문 매출액 비율	73
[그림 4-43] 판매처별 판매 비율	74
[그림 4-44] 제품 판매 방식	75
[그림 4-45] 제품 생산 방식	76
[그림 4-46] 수출 현황	77
[그림 4-47] 국가별 수출 현황	78
[그림 4-48] 수입 현황	79
[그림 4-49] 국가별 수입 현황	80
[그림 4-50] 수입 병행 이유	81
[그림 4-51]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83



서론

1. 조사배경
2. 조사목적

I

1 조사배경

최근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 실행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등급제 폐지, 개인 예산제 도입 요구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정책요구와 실천 과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구수는 약 27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장애 발생 요인으로는 89%가 후천적인 것(질병, 사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을 반영해 볼 때, 장애 이후에도 사회적 활동 및 참여,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사회적 활동의 욕구 증가 및 장애인패러다임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듯 공적급여 보조기기 지원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적급여 보조기기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보훈처에서 각각의 재원 특성을 가지고 해당 장애인 및 노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 규모 또한 2014년 1,700억원에서 2017년 약 3,200억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공적급여를 통한 보조기기 지원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보조기기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부, 사용시간 및 사용 어려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공적급여 증가에 따른 보조기기 산업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것 등 보조기기와 관련한 종합적인 실태가 보고된 바가 없었다.



그간의 보조기기에 관한 실태조사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용자에 관한 사항이 실시되어 왔으나 보조기기 산업실태에 관한 사항은 단발적 조사에 그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실태추이 파악을 이어오지 못하였고, 보조기기 지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기기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보조기기에 관한 실태조사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다루고 있으나 보조기기 이용실태를 부각시키기에 한계가 있었고, 보조기기 산업 동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 보조기기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2015년 12월 30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 제정되었고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는 「장애인보조기기법」 제5조 및 장애인보조기기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3년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법 제5조 제4항)’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 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제4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 관해 조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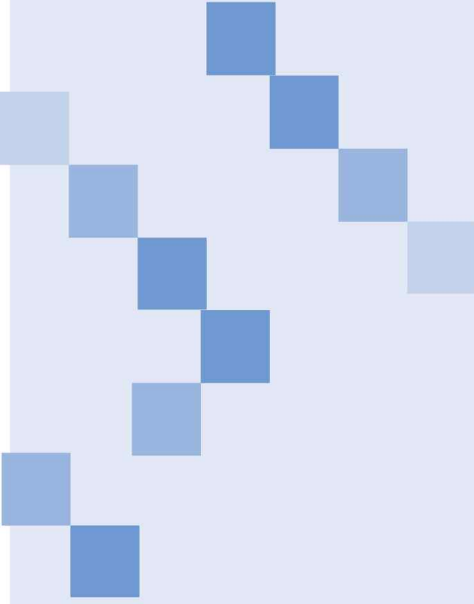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판매·유통·대여·수입·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보조기기에 관한 실태를 한 눈에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보조기기 이용실태와 산업실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목적

보조기기 실태조사는 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사항과 보조기기 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보조기기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장애인보조기기법 제5조 및 장애인보조기기법시행령 제2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보조기기 이용실태, 품목수요 및 산업실태(매출, 생산 및 정책적 욕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지속가능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방법

1. 표본추출
2. 조사내용
3. 조사방법
4. 자료처리

II

II Part 조사방법

II

조사 방법

1 표본추출

1) 보조기기 이용실태¹⁾

보조기기 이용실태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실시한 6,549명의 유효표본수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2) 보조기기 산업실태

보조기기 산업실태조사는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 사업별로 등록된 업체(4개 부처 8개 사업²⁾, 2017년 5월 등록 업체 기준) 데이터베이스(DB)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등록업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장애인보장구사업) 등록업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등록업체
-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등록업체
- 시·군·구에 신고한 의지/보조기 업체

각 사업별로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정보로 수집된 819개의 정보를 추출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 보청기 및 의지/보조기 업체로 구분하여 목록화 하였다. 이 중에서 중복된 업체, 폐업, 휴업, 보조기기 미취급, 결번,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59개의 업체를 제외한 총 760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실태조사에 활용하였다.

1) 보조기기 이용실태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장애인 전국 추정치 값이 아닌 실제 응답 값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 보건복지부(4개 사업), 고용노동부(2개 사업), 국가보훈처(1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개 사업)

〈표 2-1〉 모집단 현황

(단위 : 개)

구분	최초 리스트 확보 수(A)	중복 및 부적합 사업체 수(B)	최종 리스트 수 (A-B)
장애인 보장구 업체	298	22	276
의료기 업체	113	1	112
보청기 업체	133	10	123
의지/보조기 업체	275	26	249
합계	819	59	760

2

조사내용

1) 보조기기 이용실태

보조기기 이용실태조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실태와 보조기기의 품목·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시간, 실제 이용여부, 만족도 및 품목 수요 등을 중심으로 조사항목이 구성되었다.

〈표 2-2〉 보조기기 이용실태 주요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별 필요·소지·사용 여부 - 사용하는 주된 장애인보조기기 - 필요 보조기기의 미구입 주된 이유 - 소지 보조기기 미사용 주된 이유 - 보조기기 구입시 외부지원 여부·지원받은 곳·지원받은 형태 - 지원수준의 만족도 - 사용 보조기기의 사용 현황 및 만족도 - 보조기기의 구입 경로 - 보조기기 지원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전문적인 상담과 평가, 보조기기 사용교육 및 훈련, 사후관리) - 보조기기 지원사업에서의 개선사항

2) 보조기기 산업실태

보조기기 산업실태조사는 취급분야별(의지/보조기, 의료기기, 복지용구 및 장애인보조기기) 및 업체유형별(생산, 판매, 유통, 임대, 수입 및 수리)로 분류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산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표 2-3〉 보조기기 산업실태 주요 조사항목

구분	내용	
기본 정보	- 회사명 - 대표자명 - 설립시기(년) - 설립근거 기준 - 준거법 기준	- 소재지 - 업체유형 - 취급분야 - 연구개발 부서(R&D) 및 개발 유무 - 기업인증 취득현황
일반 현황	- 보유품목 품질 인증현황 - 품질 취득인증 종류 - 판매/개발 제품 - 인력 현황	
운영 현황	- 최근 3개년 매출 현황(2014년/2015년/2016년) - 판매처별 판매 비율 - 판매 방식 - 생산 방식 - 수출 유무, 수출액 및 수출 비중 - 수입 유무, 수입액 및 수입 비중 - 수출/수입 병행 이유	
제도 개선	- 보조기기 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국내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 - 국내 보조기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3

조사방법

1) 보조기기 이용실태

보조기기 이용실태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³⁾기간인 2017년 9월 2일부터 동년 10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된 6,549명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보조기기 산업실태

모집된 업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표를 활용하여 방문조사, 전화, 팩스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2017년 9월 4일 부터 11월 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전체 760개 업체 중 응답한 500개 업체(회수율: 65.7%)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처리

1) 보조기기 이용실태

보조기기 이용실태 결과 분석은 보조기기 이용현황, 보조기기 확보(구입) 및 서비스 현황,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주사용 보조기기 품목별 사용빈도, 이용시간 및 품목별 만족도 분석은 STATA 1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조기기 이용실태의 각 항목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보조기기 산업실태

보조기기 산업실태 결과 분석은 기본정보, 일반현황, 인력현황,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항목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기간 및 방법(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p94~p100 참조)

보조기기 산업의 시장규모는 다음의 추정식을 통해 도출하였다. 추정치(Estimate)란 모수(parameter)/모집단 크기를 구체적으로 추정한 값을 의미하고 보조기기 전체 사업체 매출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예상(추정)한 값이다.

〈표 2-4〉 시장규모 추정식

– 유형, 권역, 종사자규모별(5인 미만, 5~49인, 50~299인) 추정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층 h 의 추정된 매출액 총계 = $\hat{N}_h$ * 층 h 의 추정된 표본평균, $\bar{y}_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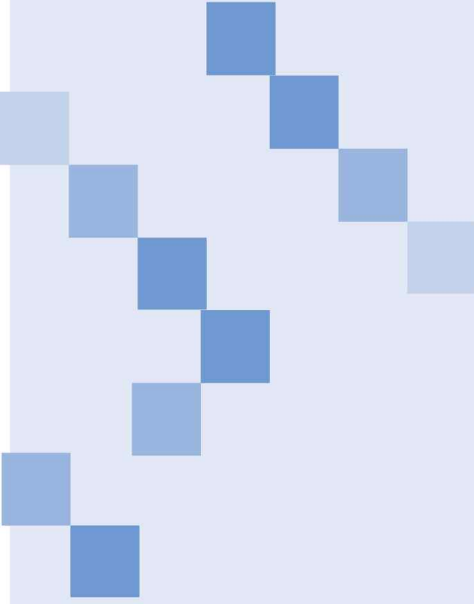
정리하면,

$$\hat{\tau}_h = \hat{N}_h * \bar{y}_h$$

– 여기에서 $\hat{\tau}_h$: 층 h 의 총계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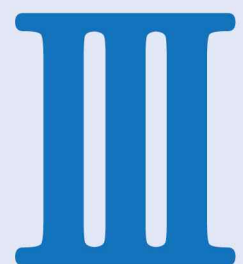
$\hat{N}_h$: 층 h 의 모집단 크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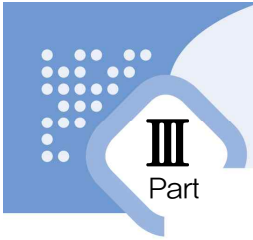
$\bar{y}_h$: 층 h 의 평균 추정치



보조기기 정의와 분류

1. 보조기기 정의
2. 보조기기 분류





보조기기 정의와 분류

III
Part

1

보조기기 정의

보조기기 관련 용어는 1982년 장애인복지법의 보장구로 시작하여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용어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한 용어를 도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장애인보조기기법이 제정(2015. 12.)됨에 따라 보조기기라는 용어를 명시하였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보조기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지원사업별 지급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 법적 용어는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에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국제적인 흐름⁴⁾을 맞추고 있다. 그 외에도 보장구(건강보험, 의료급여), 복지용구(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보조공학기기(장애인고용공단) 및 보철구(국가유공자지원) 등의 용어가 지원사업별 특성에 맞게 제각각 사용되고 있어 각 보조기기 지원사업별로 혼재된 용어를 정비하여 용어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3-1〉 사업별 보조기기 용어 사용 현황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사업	국민건강 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산업재해 보험	장애인보조 공학기기사업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용어	보장구	복지용구	보장구	장애인 보조기기	재활보조기구	보조공학 기기	보철구	정보통신 보조기기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보조기기(Assistive product)란 장애인 및 노인이 사용하는 제품, 기기, 설비, 기술 및 소프트웨어로 장애인의 기능손상,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을 예방, 보완, 경감 및 완화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범용적인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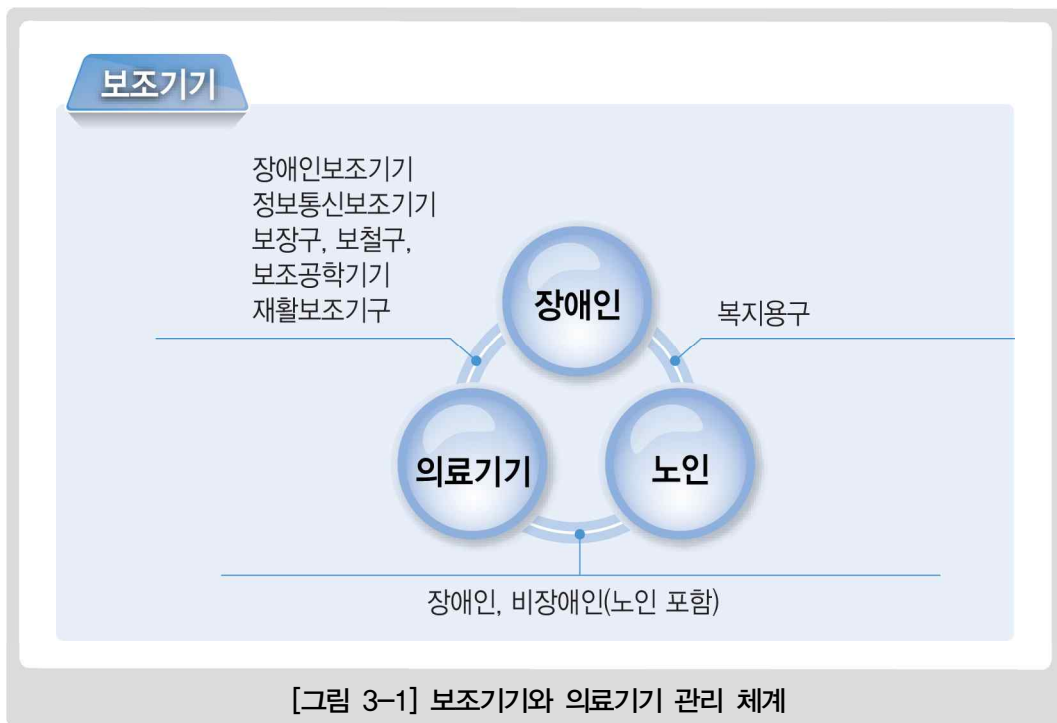
2

보조기기 분류

보조기기는 사용대상과 제도적 특성에 따라 용어 및 관리 범주를 분류하고 있다. 먼저 사용대상에 따른 분류는 장애인, 노인 및 비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노인은 복지용구, 비장애인은 의료기기로서 각 대상에 따라 범위가 설정되어진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는 크게 보조기기와 의료기기로 분류 될 수 있고, 장애인보조기기법과 의료기기법에서 정의와 분류를 하고 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 보조기기 품목분류를 고시하고 있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를 분류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 주체 및 제도적 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기기 사업별로, 보조기기라는 큰 틀 안에서 각 사업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용어체계와 관리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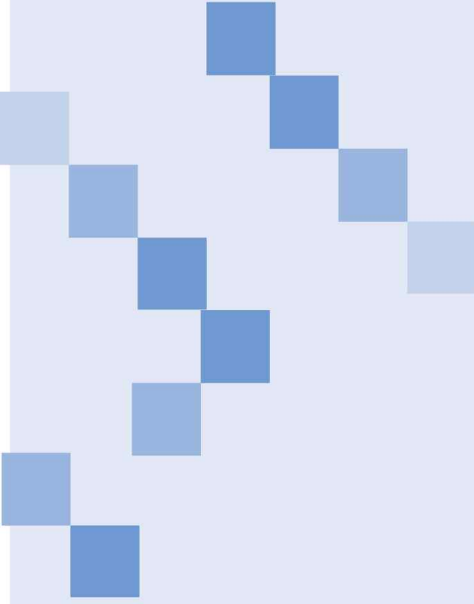
보조기기 종류는 장애인보조기기 품목고시에 따라 12개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해당분류체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분류체계와 동일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다. 관련 품목고시는 사회적, 정책적 및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2년마다 개정을 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조기기의 범주는 치료, 일상생활, 고용, 환경 및 여가생활까지 장애인이 필요한 모든 활동 범주를 포함하고 있고, 장애로 인한 사회적 장벽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3-2〉 보조기기 분류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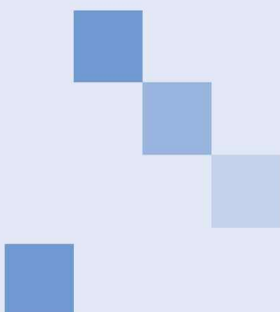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
4. 개인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 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조사결과

1. 보조기기 이용실태
2. 보조기기 산업실태

IV



IV Part

조사결과

1 보조기기⁵⁾ 이용실태

1) 보조기기 이용현황

(1) 소지한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현황

소지한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률⁶⁾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표4-1>와 같다.

장애유형 구분 없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지대비 사용률을 살펴본 결과, 지체 및 뇌병변 장애 관련 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목발이 5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각장애 관련 보조기기 중 보청기의 소지대비 사용률은 86.7%로 나타났고 지적 및 자폐성장애 관련 보조기기 중 의사소통보조기기는 소지대비 사용률이 0.0%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 유형에 해당되는 보조기기의 경우 기립보조기기, 각종스위치, 이동식전동 리프트, 주택개조,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안전손잡이,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가 소지대비 사용률이 각각 100.0%로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경우, 하지의지가 90.0%로 소지대비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팔받침대가 각각 5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에서는 상지보조기가 100.0%로 소지대비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맞춤형교정용신발(정형외과용구두)이 7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각장애의 경우 소지대비 사용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의안, 스크린리더가 각각 100.0%로

5)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보조기기로 용어 통일

6)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및 기타 항목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가장높게 나타났고 흰지팡이가 81.3%로 소지대비 사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는 문자전화기가 100.0%로 소지대비 사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화상전화기가 80.0%로 낮게 나타났다.

신장장애는 복막투석기구가 94.7%, 호흡기장애는 호흡치료용구인 산소발생기가 95.6%로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장루·요루장애는 장루주머니가 100.0%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보조기기 소지대비 사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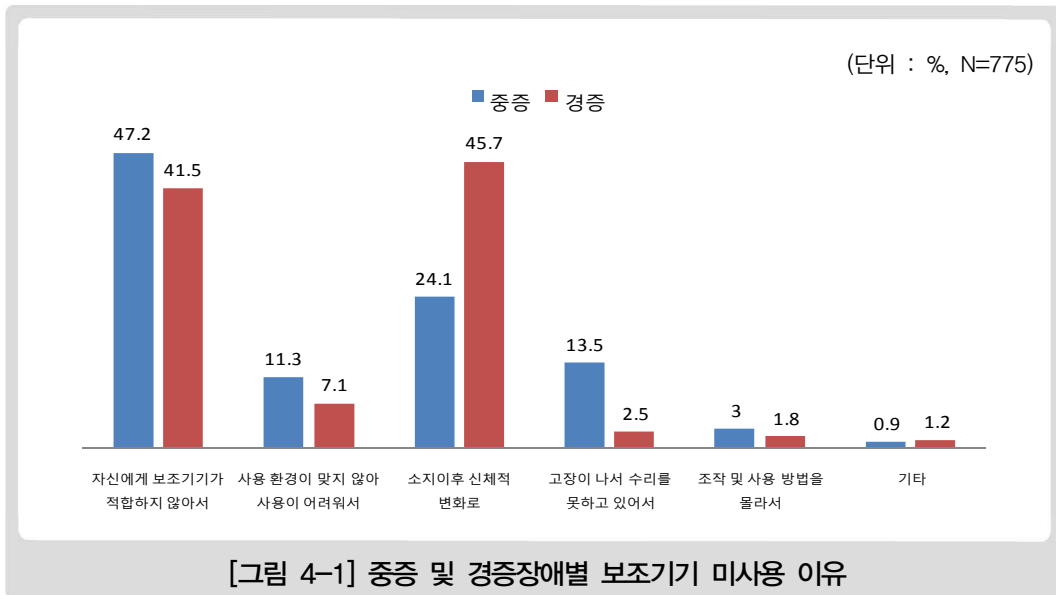
장애유형	품목	소지현황	사용현황	소지대비 사용률	장애유형	품목	소지현황	사용현황	소지대비 사용률
지체장애	01) 상지의지	1.6	1.0	62.5	언어장애	01) 인공후두(성대)	2.0	2.0	100.0
	02) 하지의지	1.0	0.9	90.0		02) 음성증폭기	2.0	2.0	100.0
	03) 척추보조기	7.0	3.8	54.3		03) 기타	0.0	0.0	0.0
					N		50		
	04) 상지보조기	0.8	0.4	50.0	지적 및 자폐성장애	1) 의사소통보조기기	0.1	0.0	0.0
	05) 하지보조기	2.9	1.9	65.5					
	06) 맞춤형교정용신발 (정형외과용구두)	1.6	1.2	75.0	자적장애	1)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기	0.2	0.2	100.0
	07) 자세보조용구	0.2	0.1	50.0		2) 터치모니터	0.2	0.2	100.0
	08) 상하지운동기구	0.5	0.4	80.0		3) 기타	0.0	0.0	0.0
	09) 팔발침대	0.2	0.1	50.0	N		465		
	10) 기타	5.1	4.9	96.1	자폐성장애	1)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기	0.0	0.0	0.0
	N		3215			2) 터치모니터	2.0	2.0	100.0
						3) 기타	2.0	2.0	100.0
					N		51		
뇌병변장애	01) 상지의지	0.0	0.0	0.0	신장장애	1) 복막투석기구	9.4	8.9	94.7
	02) 하지의지	0.2	0.2	100.0		2) 기타	2.1	1.6	76.2
	03) 척추보조기	1.4	1.1	78.6	N		192		
	04) 상지보조기	1.1	1.1	100.0	호흡기장애	1) 산소발생기	45.1	43.1	95.6
	05) 하지보조기	5.1	4.8	94.1		호흡치료용구 2) 인공호흡기	13.7	11.8	86.1
	06) 맞춤형교정용신발 (정형외과용구두)	1.2	0.9	75.0		3) 호흡근육훈련기	2.0	2.0	100.0
	07) 자세보조용구	1.6	1.4	87.5		4) 기타	13.7	13.7	100.0
	08) 상하지운동기구	0.7	0.5	71.4	N		51		
	09) 팔발침대	1.8	1.6	88.9	안면장애	1) 압력옷	0.0	0.0	0.0
	10) 기타	4.8	4.8	100.0		2) 기타	7.7	7.7	100.0
	N		567		N		13		
지체 및 뇌병변장애	1) 지팡이	21.8	17.7	81.2	장루요루 장애	1) 장루주머니	90.1	90.1	100.0
	2) 목발	3.4	1.9	55.9		2) 피부보호판	79.0	76.5	96.8
						3) 기타	28.4	28.4	100.0
					N		81		

장애유형	품목	소지현황	사용현황	소지대비 사용률	장애유형	품목	소지현황	사용현황	소지대비 사용률
	3) 보행기	7.8	6.8	87.2	전체	01) 욕창방지용매트	1.9	1.7	89.5
	4) 전동휠체어	3.0	2.6	86.7		02) 욕창방지용방석	1.3	1.1	84.6
	5) 수동휠체어	5.6	4.9	87.5		03) 침대(전동 및 수동)	1.7	1.6	94.1
	6) 전동스쿠터	2.8	2.6	92.9		04) 기립보조기기	0.4	0.4	100.0
시각장애	1) 안경/콘택트렌즈	52.1	48.4	92.9		05) 기저귀매트	2.2	2.1	95.5
	2) 저시력보조기	5.0	4.8	96.0		06) 목욕 의자 및 이동 욕조	2.2	2.0	90.9
	3) 흰자팡이	8.0	6.5	81.3		07) 이동변기	2.7	2.3	85.2
	4) 의안	10.8	10.8	100.0		08) 특수 키보드	0.0	0.0	0.0
	5) 스크린리더	1.2	1.2	100.0		09) 특수 마우스	0.0	0.0	0.0
	6) 화면확대기	2.2	2.0	90.9		10) 각종 스위치	0.1	0.1	100.0
	7) 점자정보발기	0.7	0.7	100.0		11) 음성인식장치	0.0	0.0	0.0
	8) 시각장애인용 시계	2.5	2.2	88.0		12)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0	0.0	0.0
	9)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0	0.0	0.0		13) 환경제어장치	0.0	0.0	0.0
	10) 점자프린터	0.3	0.3	100.0		14) 이동식 전동리프트	0.1	0.1	100.0
	11) 화면해설기	0.5	0.2	40.0		15) 주먹개(조경사로 등)	0.4	0.4	100.0
	12) 음향신호유도장치	0.5	0.3	60.0		16) 장애인용 의복	0.0	0.0	0.0
	13)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0.0	0.0	0.0		17)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0.4	0.4	100.0
	14) 점자라벨기	0.0	0.0	0.0		18) 경보 시스템	0.9	0.8	88.9
	15) 터치패드/레이어	0.5	0.5	100.0		19) 고용/직업훈련용 보조기기	0.0	0.0	0.0
	16) 기타	2.2	1.8	81.8		20)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0.0	0.0	0.0
	N		603		호흡보조기	21) 배회 감지기	0.0	0.0	0.0
청각장애	1) 보청기	12.0	10.4	86.7		22) 안전 손잡이	1.6	1.6	100.0
	2) 화상전화기	1.5	1.2	80.0		23)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0.3	0.3	100.0
	3) 골도전화기	0.0	0.0	0.0		24) 기타	0.4	0.4	100.0
	4) 문자전화기	0.7	0.7	100.0		25) 산소발생기	0.3	0.2	66.7
	5) 문자송수신기	0.2	0.2	100.0		26) 인공호흡기	0.0	0.0	0.0
	6) 음성증폭기	0.2	0.2	100.0		N		6549	
	7) 인공와우	2.4	2.1	87.5					
	8) 자막수신기	2.7	2.5	92.6					
	9) 신호표시기(시각,음향)	0.5	0.4	80.0					
	10) 진동시계	0.6	0.6	100.0					
	11) 기타	0.4	0.2	50.0					
	N		805						

* 주) 음영 부분 : 장애유형 구분 없이 전체 장애인에게 질문한 문항으로 전체 장애인(N=6549)에 대한 비율

(2) 소지한 보조기기에 대한 미사용 이유

소지한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중증장애는 자신에게 보조기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았고 경증장애는 소지 이후 신체적 변화로 인해 미사용한다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증장애의 경우 장애의 중증도에 맞는 제품의 기능이 맞춤화 되지 못한 것이고, 경증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진행됨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행되는 장애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4-2〉 소지한 보조기기 미사용 이유(중증1~3급)

(단위 :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신에게 보조기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42.1	32.0	49.0	72.2	100	20.0	0.0	100	54.2	0.0	50.0	0.0	0.0	0.0	0.0	47.2
사용환경이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워서	25.5	18.5	26.2	18.5	0.0	6.7	0.0	0.0	29.2	0.0	0.0	0.0	0.0	0.0	0.0	11.3
소지 이후 신체적 변화로	24.6	46.4	14.8	5.6	0.0	40.0	0.0	0.0	16.7	0.0	16.7	0.0	0.0	100	0.0	24.1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하고 있어서	5.1	3.1	3.3	3.7	0.0	0.0	100	0.0	0.0	0.0	33.3	0.0	0.0	0.0	0.0	13.5
조작 및 사용 방법을 몰라서	0.0	0.0	0.0	0.0	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
기타	2.7	0.0	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100.0	0.0	0.0	100.0	0.0	100.0

〈표 4-3〉 소지한 보조기기 미사용 이유(경증4~6급)

(단위 :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신에게 보조기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46.5	33.1	66.7	6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83.3	0.0	41.5
사용환경이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워서	11.6	18.8	4.9	14.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1
소지 이후 신체적 변화로	39.0	42.0	14.8	7.8	0.0	0.0	0.0	0.0	100	0.0	0.0	100	0.0	16	0.0	45.7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하고 있어서	0.5	3.0	0.0	14.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
조작 및 사용 방법을 몰라서	0.5	0.0	12.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8
기타	1.8	3.0	1.2	2.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
계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 보조기기 필요현황

보조기기 소지 및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보조기기 현황⁷⁾은 표 <4-4>와 같다.

장애유형 구분 없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지체 및 뇌병변장애 관련 보조기기 중 지팡이가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각장애 관련 보조기기 중 보청기는 14.0%로 나타났다. 지적 및 자폐성장애 관련 보조기기 중 의사소통보조기기는 0.7%로 필요 욕구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 장애 유형에 해당되는 보조기기의 경우 안전손잡이가 7.6%로 필요현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목욕의자 및 이동욕조(6.2%), 침대(전동 및 수동)(5.1%)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경우 척추보조기가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장애는 하지보조기가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각장애에서 필요현황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안경/콘택트렌즈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자막수신기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적장애의 경우 교육 과목훈련용 보조기기 3.7%, 신장장애에서는 복막투석기구가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호흡기장애의 경우에는 호흡치료용구인 산소발생기가 52.9%로 필요현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루·요루장애에서는 장루주머니가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및 기타 항목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 4-4〉 보조기기 필요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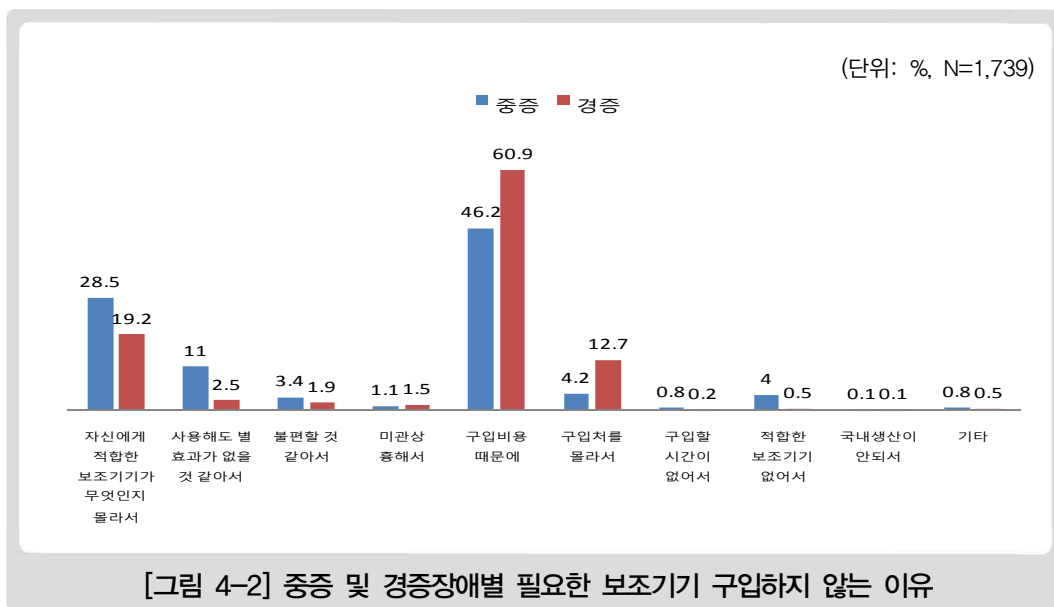
(단위 : %)

장애유형	품목	필요현황	장애유형	품목	필요현황	
지체장애	01) 상지의지	1.7	언어장애	01) 인공후두(성대)	4.0	
	02) 하지의지	1.2		02) 음성증폭기	6.0	
	03) 척추보조기	7.4		03) 기타	2.0	
	04) 상지보조기	1.0	N		50	
	05) 하지보조기	3.0	지적및자폐성장애	1) 의사소통보조기기	0.7	
	06) 맞춤형교정용신발(정형외과용구두)	2.4	지적장애	1)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기	3.7	
	07) 자세보조용구	1.7	2) 터치모니터	3.2		
	08) 상하지운동기구	1.9	3) 기타	0.0		
	09) 팔발침대	0.5	N		465	
	10) 기타	5.2	자폐성장애	1)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기	9.8	
N		3215	N		51	
뇌병변장애	01) 상지의지	0.2	신장장애	1) 복막투석기구	10.9	
	02) 하지의지	0.7		2) 기타	2.1	
	03) 척추보조기	2.1	N		192	
	04) 상지보조기	1.9	호흡기장애	1) 산소발생기	52.9	
	05) 하지보조기	6.7		호흡치료용구	2) 인공호흡기	23.5
	06) 맞춤형교정용신발(정형외과용구두)	1.8		3) 호흡근육훈련기	9.8	
	07) 자세보조용구	4.4		4) 기타	15.7	
	08) 상하지운동기구	6.0	N		51	
	09) 팔발침대	3.4	안면장애	1) 압력옷	7.7	
	10) 기타	4.9		2) 기타	15.4	
N		567	N		13	
지체 및 뇌병변장애	1) 지팡이	21.8	장루요루장애	1) 장루주머니	91.4	
	2) 목발	2.7		2) 피부보호판	81.5	
	3) 보행기	9.8		3) 기타	28.4	
	4) 전동휠체어	6.3	N		81	
	5) 수동휠체어	6.4	전체	01) 욕창방지용매트	3.3	
	6) 전동스쿠터	5.9		02) 욕창방지용방석	2.2	
시각장애	1) 안경/콘택트렌즈	54.9		03) 침대(전동 및 수동)	5.1	
	2) 저시력보조기	9.1		04) 기립보조기기	1.5	
	3) 흰자팡이	10.4		05) 기저귀매트	3.0	
	4) 의안	11.9		06) 목욕 의자 및 이동 욕조	6.2	
	5) 스크린리더	2.7		07) 이동변기	3.9	
	6) 화면확대기	8.1		08) 특수 키보드	0.2	
	7) 점자정보단말기	1.5		09) 특수 마우스	0.1	
	8) 시각장애인용 시계	7.0		10) 각종 스위치	1.3	
	9)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1.5		11) 음성인식장치	0.3	
	10) 점자프린터	1.0		12)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1	
	11) 화면해설기	3.2		13) 환경제어장치	0.4	
	12) 음향신호유도장치	1.7		14) 이동식 전동리프트	0.4	
	13)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0.5		15) 주택개조(경사로 등)	4.9	
	14) 점자라벨기	0.3		16) 장애인용 의복	0.1	
	15) 데이지플레이어	0.7		17)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0.5	
	16) 기타	2.3		18) 경보 시스템	4.9	
N		603		19) 고용/직업훈련용 보조기기	0.0	
청각장애	1) 보청기	14.0		20)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0.0	
	2) 화상전화기	5.0	21) 배회 감지기	0.5		
	3) 골도전화기	0.7	22) 안전 손잡이	7.6		
	4) 문자전화기	2.9	23)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0.4		
	5) 문자송수신기	1.5	24) 기타	0.5		
	6) 음성증폭기	3.7	호흡보조기	25) 산소발생기	0.4	
	7) 인공와우	3.5	26) 인공호흡기	0.1		
	8) 자막수신기	7.1	N		6549	
	9) 신호표시기(시각,음향)	3.7				
	10) 진동시계	4.5				
	11) 기타	1.0				
N		805				

* 주) 음영 부분 : 장애유형 구분 없이 전체 장애인에게 질문한 문항으로 전체 장애인(N=6549)에 대한 비율

(4)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않는 이유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중증장애의 경우 구입비용 때문에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몰라서(28.5%), 구입처를 몰라서(4.2%) 순으로 나타났다. 경증장애의 경우 구입비용 때문에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몰라서(19.2%), 구입처를 몰라서(1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하지 않는 이유(중증1~3급)

(단위 :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몰라서	12.9	17.6	27.6	41.9	12.5	40.1	41.7	61.1	23.1	33.3	12.2	0.0	0.0	75.0	0.0	28.5
사용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4.8	5.0	12.1	11.3	25.0	3.6	50.0	0.0	1.5	0.0	6.7	33.3	0.0	0.0	0.0	11.0
불편할 것 같아서	6.7	4.1	0.9	2.0	0.0	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3.4
미관상 흉해서	5.8	0.0	4.6	0.7	0.0	0.0	0.0	0.0	4.5	0.0	0.0	0.0	0.0	0.0	0.0	1.1
구입비용때문에	61.8	55.3	40.9	37.0	50.0	39.2	0.0	27.8	36.7	66.7	72.8	33.3	100.0	25.0	0.0	46.2
구입처를 몰라서	4.8	7.6	4.2	4.8	0.0	12.3	0.0	11.1	14.1	0.0	0.0	0.0	0.0	0.0	0.0	4.2
구입할시간이 없어서	0.5	0.9	0.0	0.0	0.0	1.7	0.0	0.0	0.0	0.0	8.3	0.0	0.0	0.0	0.0	0.8
적합한보조기기 없어서	2.3	3.0	8.8	2.2	12.5	3.1	8.3	0.0	15.5	0.0	0.0	0.0	0.0	0.0	0.0	4.0
국내생산이 안되서	0.0	0.0	0.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기타	0.3	6.5	0.0	0.0	0.0	0.0	0.0	0.0	4.5	0.0	0.0	0.0	0.0	0.0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6〉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하지 않는 이유(경증4~6급)

(단위 :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몰라서	17.3	23.1	24.0	16.6	0.0	0.0	0.0	0.0	0.0	0.0	0.0	100	0.0	11.1	0.0	19.2
사용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4.4	3.7	3.7	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5.6	0.0	2.5
불편할 것 같아서	2.1	2.0	4.1	1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9
미관상 좋지 않아서	6.2	2.3	3.7	3.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
구입비용때문에	59.3	60.8	53.4	52.4	100	0.0	0.0	0.0	0.0	0.0	0.0	0.0	100	83.3	100	60.9
구입처를 몰라서	6.4	5.2	9.6	6.1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12.7
구입할시간이 없어서	0.7	0.0	0.4	0.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적합한보조기기 없어서	2.7	1.3	0.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국내생산이 안되서	0.0	0.0	0.0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기타	1.0	1.4	0.4	1.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주사용 보조기기 사용빈도 및 이용시간 현황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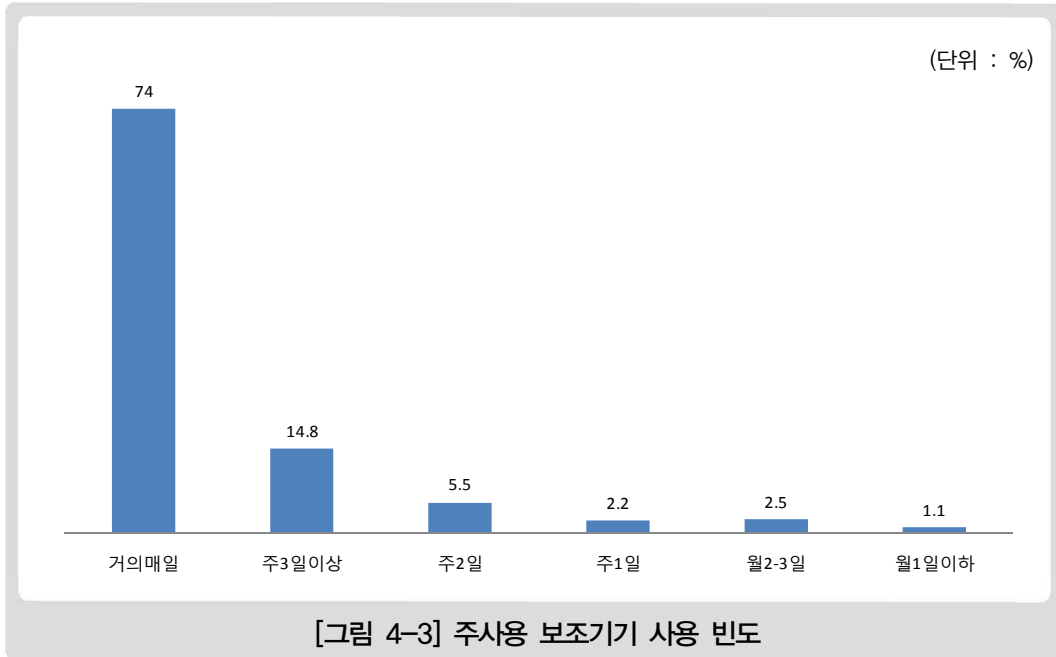
주사용 보조기기란 주된 보조기기 중 빈도가 높은 품목을 의미하며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3일 이상(14.8%), 주2일(5.5%) 순으로 나타났다(표4-7).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지체 및 뇌병변장애의 경우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보행기가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동스쿠터(72.5%), 전동휠체어(69.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주3일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전동휠체어가 17.1%로 가장 높았고, 전동스쿠터(15.3%), 지팡이(13.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는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안경/콘택트렌즈가 9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시력보조기(92.3%) 순으로 나타나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은 사용 빈도가 나타났다.

전체 장애 유형에서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침대(수동 및 전동)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욕창방지용매트(97.6%), 이동변기(87.0%) 순으로 나타났다.

8) 유효표본수 5표본 미만 및 기타 항목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 4-7〉 주사용 보조기기 품목별 사용 빈도

(단위 : %, 명)

구분	품목	거의매일	주3일이상	주2일	주1일	월2-3일	월1일이하	계	N
지체및뇌병변 장애	지팡이	68.9	13.7	6.5	3.5	4.1	3.5	100.0	636
	보행기	77.3	10.9	3.8	2.9	3.4	1.7	100.0	238
	전동휠체어	69.4	17.1	8.1	0.9	3.6	0.9	100.0	111
	수동휠체어	68.0	8.7	5.3	6.0	9.3	2.7	100.0	150
	전동스쿠터	72.5	15.3	3.8	5.3	2.3	0.8	100.0	131
시각장애	안경/콘택트렌즈	93.1	3.5	1.9	0.8	0.4	0.4	100.0	261
	저시력보조기	92.3	0.0	7.7	0.0	0.0	0.0	100.0	13
	흰지팡이	48.0	8.0	12.0	8.0	12.0	12.0	100.0	25
청각장애	보청기	91.6	4.3	2.1	0.6	1.0	0.5	100.0	632
언어장애	음성증폭기	100.0	0.0	0.0	0.0	0.0	0.0	100.0	1
지적 및 자폐성장애	의사소통보조기기	50.0	50.0	0.0	0.0	0.0	0.0	100.0	2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기	50.0	50.0	0.0	0.0	0.0	0.0	100.0	2
	터치모니터	0.0	50.0	50.0	0.0	0.0	0.0	100.0	2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88.2	11.8	0.0	0.0	0.0	0.0	100.0	17
호흡기장애	산소발생기	95.2	4.8	0.0	0.0	0.0	0.0	100.0	21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88.5	7.7	1.3	2.6	0.0	0.0	100.0	78
전체	욕창방지용매트	97.6	0.0	0.0	2.4	0.0	0.0	100.0	41
	침대(수동및전동)	100.0	0.0	0.0	0.0	0.0	0.0	100.0	38
	기립보조기기	66.7	33.3	0.0	0.0	0.0	0.0	100.0	6
	목욕의자및자동욕조	50.0	12.5	12.5	12.5	12.5	0.0	100.0	8
	이동변기	87.0	8.7	0.0	0.0	4.4	0.0	100.0	23
계		74.0	14.8	5.5	2.2	2.5	1.1	100.0	2,436

* 주된 보조기기 중 빈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분석함

주사용 보조기기에 대한 하루 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1시간~3시간 미만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분~60분 미만(20.0%), 24시간사용(하루종일)(12.7%) 순으로 나타났다(표4-8).

장애유형별로 하루(1일)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지체 및 뇌병변장애의 경우, 지팡이는 1시간~3시간 미만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분~60분 미만(21.7%), 30분 미만(14.6%)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기는 1시간~3시간 미만(38.7%), 30분~60분 미만(32.4%), 30분미만(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동휠체어는 1시간~3시간 미만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45.1%, 30분~60분미만(25.2%), 3시간~5시간미만(11.7%)순으로 나타났다. 수동휠체어는 1시간~3시간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33.3%, 30분~60분미만(20.0%), 3시간~5시간미만(16.0%) 순으로 나타났고, 전동스쿠터는 1시간~3시간미만(49.6%), 30분~60분미만(22.9%), 3시간~5시간미만(12.2%) 순이었다.

시각장애에서 안경/콘택트렌즈는 11시간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44.8%로 높게 나타났으며, 1시간~3시간 미만(13.0%), 7시간~9시간미만(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저시력 보조기는 3시간~5시간 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시간~3시간 미만(23.1%), 11시간이상(15.4%) 순으로 나타났다. 흰지팡이는 1시간~3시간 미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분~60분미만(20.0%), 30분미만(16.0%) 순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에서 보청기는 11시간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34.8%로 높게 나왔으며 9시간~11시간미만(14.9%), 7시간~9시간미만(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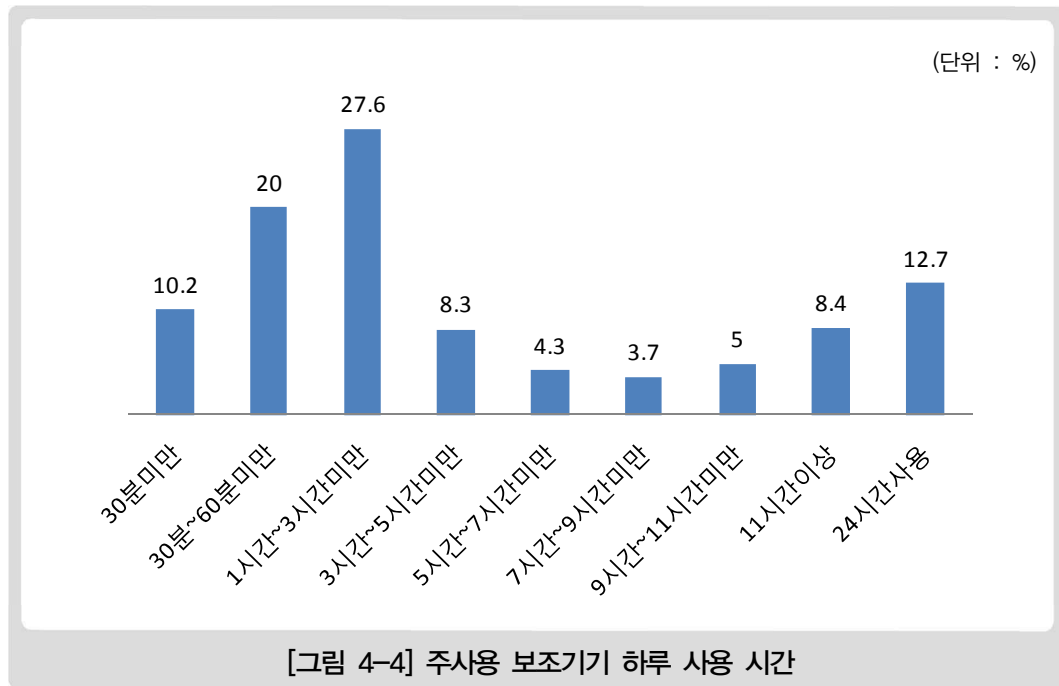
신장장애에서 복막투석기구 하루 이용 시간은 1시간 미만~3시간 미만(23.5%), 3시간~5시간 미만(23.5%)으로 동일한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장애에서 산소발생기는 11시간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시간~5시간 미만(19.1%), 1시간~3시간 미만(14.3%) 순으로 나타났다.

장루·요루장애에서 장루주머니는 보조기기 특성상 24시간사용(하루종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9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 장애 유형에서 욕창방지용매트는 24시간사용(하루종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85.4%, 침대(수동 및 전동) 역시 24시간사용(하루종일) 한다는 응답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시간이상(23.7%) 순으로 나타났다. 그외 이동변기는 30분 미만 이용한다는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분~60분 미만

(21.7%), 1시간~3시간 미만(17.4%) 순으로 나타났다.

장루주머니, 욕창방지용매트, 침대(수동 및 전동)는 보조기기 특성상 24시간사용(하루 종일)으로 장시간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동변기의 경우에는 다른 품목에 비해 이용 시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표 4-8〉 주사용 보조기기 품목별 하루 사용 시간

(단위 : %, 명)

장애유형	품목	30분미만	30분~60분미만	1시간~3시간미만	3시간~5시간미만	5시간~7시간미만	7시간~9시간미만	9시간~11시간미만	11시간 이상	24시간사용(하루종일)	계	N
지체 및 뇌병변장애	자전거	14.6	21.7	44.0	11.3	2.7	1.7	0.9	2.4	0.6	100.0	636
	보행기	11.8	32.4	38.7	10.9	2.1	0.4	2.5	1.3	0.0	100.0	238
	전동휠체어	6.3	25.2	45.1	11.7	6.3	2.7	1.8	0.9	0.0	100.0	111
	수동휠체어	12.0	20.0	33.3	16.0	9.3	4.0	0.0	4.0	1.3	100.0	150
	전동스쿠터	11.5	22.9	49.6	12.2	1.5	2.3	0.0	0.0	0.0	100.0	131
시각장애	안경/콘택트렌즈	2.3	2.3	13.0	6.5	5.8	11.5	11.1	44.8	2.7	100.0	261
	저시력보조기	7.7	7.7	23.1	30.8	7.7	7.7	0.0	15.4	0.0	100.0	13
	흰지팡이	16.0	20.0	44.0	8.0	8.0	4.0	0.0	0.0	0.0	100.0	25
청각장애	보청기	1.3	3.0	8.2	12.2	10.1	13.5	14.9	34.8	2.1	100.0	632
언어장애	음성증폭기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
지적 및 자폐성장애	의사소통보조기기	0.0	0.0	50.0	0.0	0.0	0.0	50.0	0.0	0.0	100.0	2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기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100.0	2
	터치모니터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0.0	5.9	23.5	23.5	11.8	11.8	11.8	0.0	11.8	100.0	17
호흡기장애	산소발생기	4.8	4.8	14.3	19.1	4.8	4.8	4.8	38.1	4.8	100.0	21

장애유형	품목	30분미만	30분~ 60분미만	1시간~ 3시간미만	3시간~ 5시간미만	5시간~ 7시간미만	7시간~ 9시간미만	9시간~ 11시간미만	11시간 이상	24시간사용 (하루종일)	계	N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0.0	0.0	0.0	0.0	2.6	0.0	1.3	5.1	91.0	100.0	78
전체	욕창방지용매트	0.0	7.3	0.0	0.0	0.0	0.0	2.4	4.9	85.4	100.0	41
	침대(수동및전동)	0.0	0.0	0.0	2.6	0.0	7.9	2.6	23.7	63.2	100.0	38
	기립보조기기	33.3	50.0	0.0	0.0	16.7	0.0	0.0	0.0	0.0	100.0	6
	목욕의자및이동욕조	50.0	25.0	25.0	0.0	0.0	0.0	0.0	0.0	0.0	100.0	8
	이동변기	43.5	21.7	17.4	8.7	0.0	4.4	0.0	0.0	4.4	100.0	23
계		10.2	20.0	27.6	8.3	4.3	3.7	5.0	8.4	12.7	100.0	2,436

* 주된 보조기기 중 빈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분석함

(6) 보조기기 이용 만족도⁹⁾

주사용 보조기기에 대한 품목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만족한다(20.7%), 약간불만족한다(10.9%) 순으로 나타났다(표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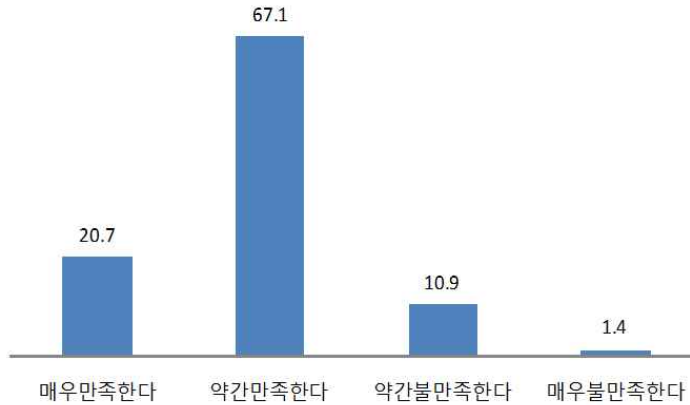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지체 및 뇌병변장애의 경우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지팡이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행기(76.1%), 수동휠체어(68.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동스쿠터가 52.7%로 가장 높았고, 전동 휠체어(30.6%), 수동휠체어(16.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는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흰지팡이가 8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경/콘택트렌즈(77.4%), 저시력보조기(53.9%) 순이었다. 이외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저시력보조기가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경/콘택트렌즈(16.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 유형에서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은 이동변기가 9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침대(수동및전동)(79.0%), 욕창방지용매트(68.3%)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욕창방지용매트가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침대(수동및전동)(13.2%), 이동변기(4.4%) 순으로 나타났다.

9) 유효표본수 5표본 미만 및 기타 항목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단위 : %)



[그림 4-5] 주사용 보조기기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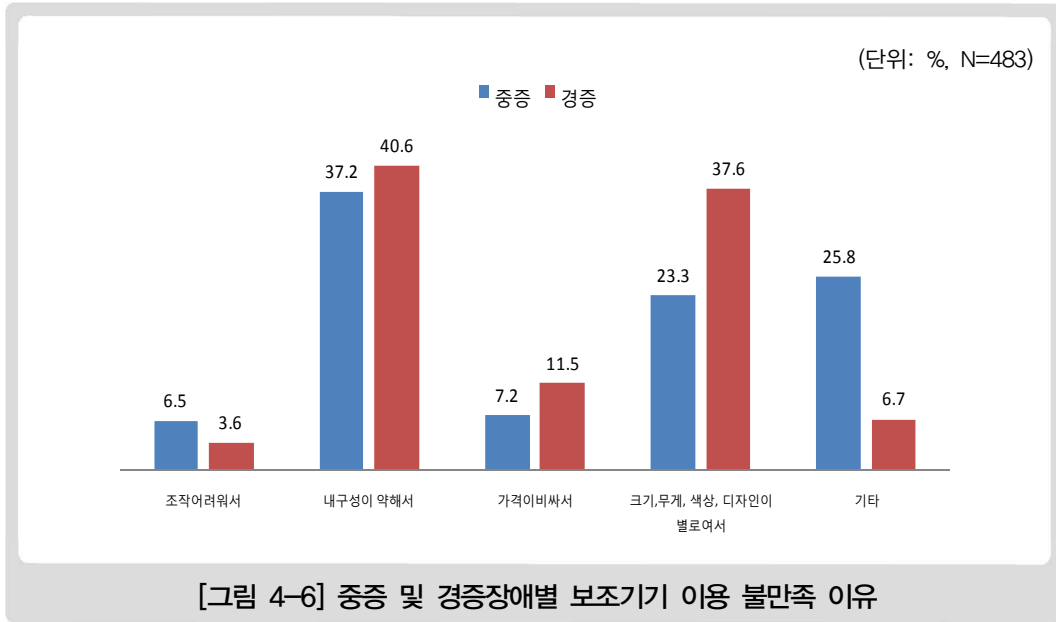
〈표 4-9〉 주사용 보조기기 품목별 만족도

(단위 : %, 명)

장애유형	품목	매우만족한다	약간만족한다	약간불만족한다	매우불만족한다	계	N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지팡이	11.8	80.0	7.2	0.9	100.0	636
	보행기	16.4	76.1	7.1	0.4	100.0	238
	전동휠체어	30.6	61.3	8.1	0.0	100.0	111
	수동휠체어	16.7	68.0	13.3	2.0	100.0	150
	전동스쿠터	52.7	45.0	0.8	1.5	100.0	131
시각장애	안경/콘택트렌즈	16.1	77.4	5.8	0.8	100.0	261
	저시력보조기	23.1	53.9	23.1	0.0	100.0	13
	흰지팡이	8.0	84.0	8.0	0.0	100.0	25
청각장애	보청기	11.9	54.9	25.5	7.8	100.0	632
언어장애	음성증폭기	100.0	0.0	0.0	0.0	100.0	1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보조기기	0.0	100.0	0.0	0.0	100.0	2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기	0.0	100.0	0.0	0.0	100.0	2
	터치모니터	0.0	50.0	50.0	0.0	100.0	2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5.9	82.4	11.8	0.0	100.0	17
호흡기장애	산소발생기	23.8	71.4	4.8	0.0	100.0	21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7.7	48.7	30.8	12.8	100.0	78
전체	욕창방지용매트	22.0	68.3	9.8	0.0	100.0	41
	침대(수동및전동)	13.2	79.0	5.3	2.6	100.0	38
	기립보조기기	33.3	66.7	0.0	0.0	100.0	6
	목욕의자및이동욕조	37.5	50.0	12.5	0.0	100.0	8
	이동변기	4.4	91.3	4.4	0.0	100.0	23
계		20.7	67.1	10.9	1.4	100.0	2,436

* 주된 보조기기 중 빈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분석함

보조기기 이용의 불만족 이유에 대해 중증장애는 내구성이 약해서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크기, 무게, 색상 디자인 별로여서(23.3%), 가격이 비싸서(7.2%), 조작이 어려워서(6.5%) 순으로 나타났다. 경증장애는 내구성이 약해서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크기, 무게, 색상, 디자인이 별로여서(37.6%), 가격이 비싸서(11.5%), 조작이 어려워서(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 보조기기 이용 불만족 이유(중증1~3급)

(단위 :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조작이 어려워서	14.0	9.6	0.0	10.9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6.5
내구성이 약해서	39.4	49.9	51.1	43.5	100.0	50.0	0.0	0.0	0.0	0.0	100.0	0.0	0.0	50.0	0.0	37.2
가격이 비싸서	13.3	18.5	24.4	37.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2
크기, 무게, 색상, 디자인 별로여서	20.8	22.1	6.7	2.7	0.0	50.0	0.0	100.0	50.0	0.0	0.0	0.0	0.0	50.0	0.0	23.3
기타	12.5	0.0	17.8	5.3	0.0	0.0	10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2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100.0	0.0	100.0

〈표 4-11〉 보조기기 이용 불만족 이유(경증4~6급)

(단위 :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조작이 어려워서	6.3	0.0	0.0	8.7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4	0.0	3.6
내구성이 약해서	45.7	83.3	55.7	5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4.3	0.0	40.6
가격이 비싸서	9.9	8.3	11.8	18.9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8	0.0	11.5
크기, 무게, 색상, 디자인 별로여서	24.5	8.3	17.1	4.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9.2	100.0	37.6
기타	13.6	0.0	15.4	13.5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	0.0	6.7
계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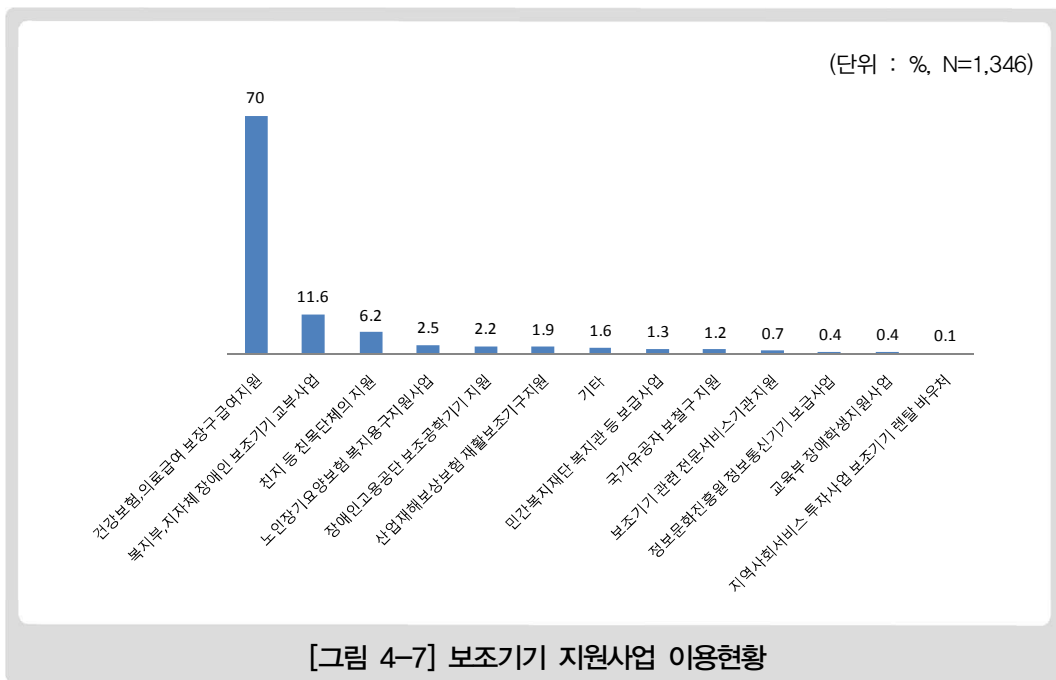
IV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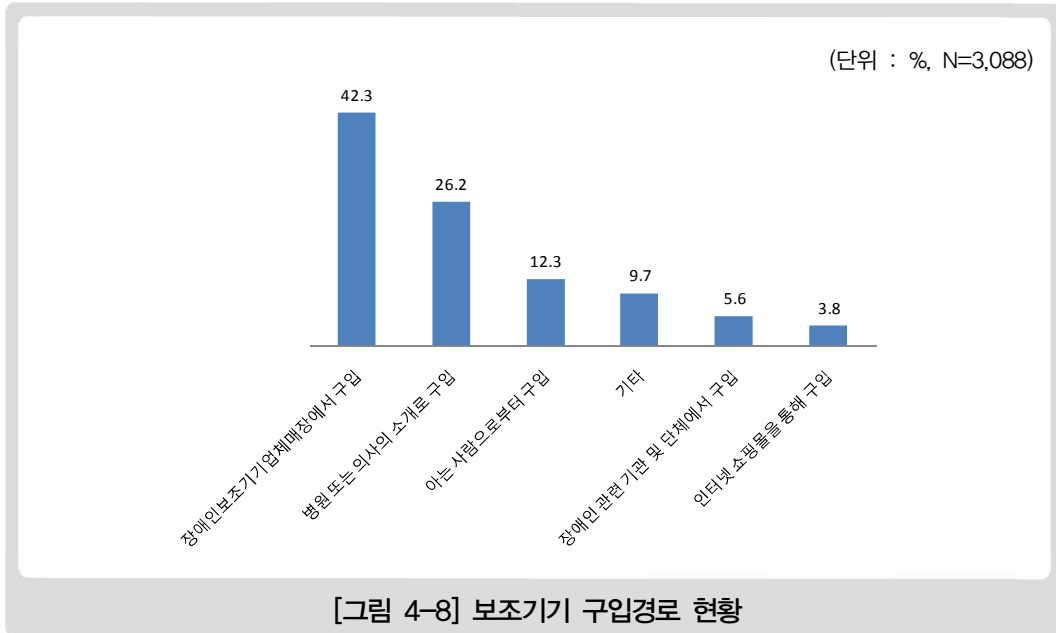
2) 보조기기 확보 및 서비스 이용현황

(1) 보조기기 확보(구입) 현황

보조기기 확보를 위해 이용하는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 사업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11.6%), 친구 등 친목단체의 지원(6.2%),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2.5%), 친구 등 친목단체의 지원(6.2%),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2.5%)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기 구입 경로는 장애인보조기기 업체매장에서 구입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원 또는 의사 소개로 구입(26.2%),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입(12.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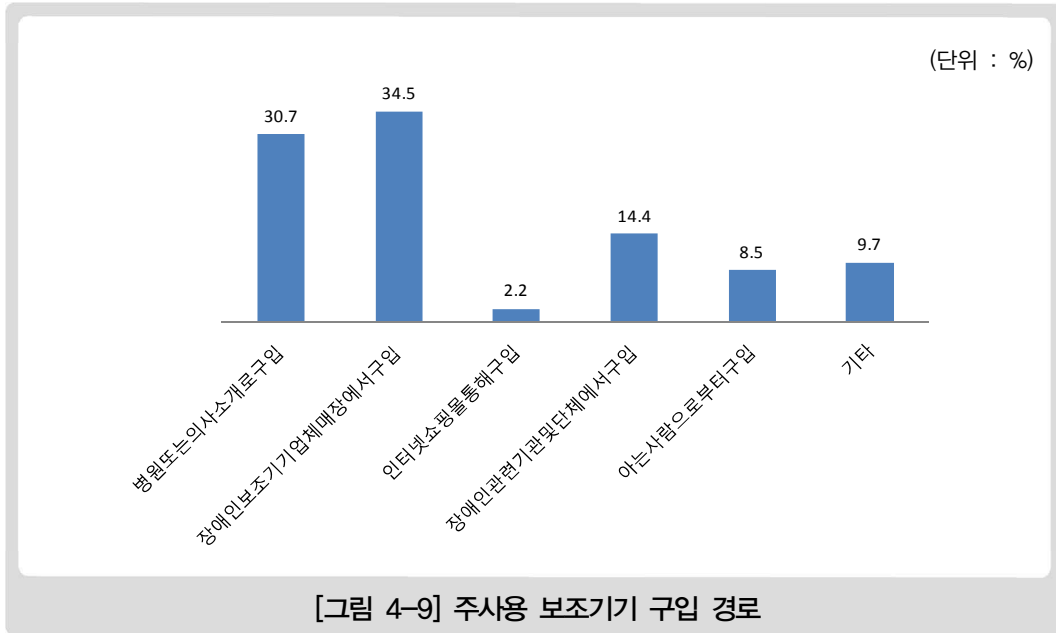
주사용 보조기기의 구입 경로¹⁰⁾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장애인보조기기업체 매장에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원 또는 의사 소개로 구입(30.7%),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구입(14.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지체 및 뇌병변장애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매장에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전동스쿠터가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동휠체어(57.7%), 수동휠체어(56.7%)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또는 의사 소개로 구입했다는 응답은 전동휠체어가 17.1%로 가장 높았고, 수동휠체어(14.7%), 전동스쿠터(13.0%)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매장에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저시력보조기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흰지팡이(36.0%), 안경/콘택트렌즈(8.1%)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또는 의사 소개로 구입했다는 응답은 안경/콘택트렌즈가 44.8%로 가장 높았고, 저시력보조기(15.4%), 흰지팡이(4.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 유형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매장에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이동변기가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침대(수동및전동)(50.0%), 욕창방지용매트(36.6%)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병원 또는 의사 소개로 구입했다는 응답은 욕창방지용매트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침대(수동및전동)(15.8%) 순으로 나타났다.

10) 유효표본수 5표본 미만 및 기타 항목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 4-12〉 주사용 보조기기 품목별 구입 경로

(단위 : %, 명)

장애유형	품목	병원 또는 의사소개로 구입	장애인보조기기 업체매장에서 구입	인터넷쇼핑몰 통해 구입	장애인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구입	아는사람으로부터 구입	기타	계	N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지팡이	4.9	42.5	4.7	4.6	30.8	12.6	100.0	636
	보행기	10.5	47.5	9.2	3.8	20.6	8.4	100.0	238
	전동휠체어	17.1	57.7	0.9	13.5	8.1	2.7	100.0	111
	수동휠체어	14.7	56.7	2.7	15.3	6.7	4.0	100.0	150
	전동스쿠터	13.0	64.1	0.8	14.5	3.8	3.8	100.0	131
시각장애	안경/콘택트렌즈	44.8	8.1	3.1	0.8	6.5	36.8	100.0	261
	저시력보조기	15.4	46.2	7.7	7.7	0.0	23.1	100.0	13
	환지팡이	4.0	36.0	0.0	44.0	12.0	4.0	100.0	25
청각장애	보청기	39.1	54.3	0.6	2.5	2.7	0.8	100.0	632
언어장애	음성증폭기	100.0	0.0	0.0	0.0	0.0	0.0	100.0	1
지적 및 자폐성장애	의사소통보조기기	0.0	0.0	0.0	50.0	50.0	0.0	100.0	2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기	50.0	0.0	0.0	50.0	0.0	0.0	100.0	2
	터치모니터	0.0	0.0	0.0	50.0	0.0	50.0	100.0	2
신장장애	복막투석기	88.2	5.9	0.0	5.9	0.0	0.0	100.0	17
호흡기장애	산소발생기	81.0	19.1	0.0	0.0	0.0	0.0	100.0	21
장루요루 장애	장루주머니	68.0	26.9	2.6	1.3	0.0	1.3	100.0	78

장애유형	품목	병원 또는 의사소개로 구입	장애인보조기기 업체매장에서 구입	인터넷쇼핑몰 통해 구입	장애인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구입	아는사람으로 부터 구입	기타	계	N
전체	욕창방지용매트	43.9	36.6	7.3	2.4	9.8	0.0	100.0	41
	침대 (수동및전동)	15.8	50.0	2.6	10.5	2.6	18.4	100.0	38
	기립보조기기	16.7	50.0	0.0	16.7	0.0	16.7	100.0	6
	목욕의자 및 이동욕조	12.5	50.0	0.0	0.0	25.0	12.5	100.0	8
	이동변기	4.4	73.9	4.4	8.7	0.0	8.7	100.0	23
계		30.7	34.5	2.2	14.4	8.5	9.7	100.0	2,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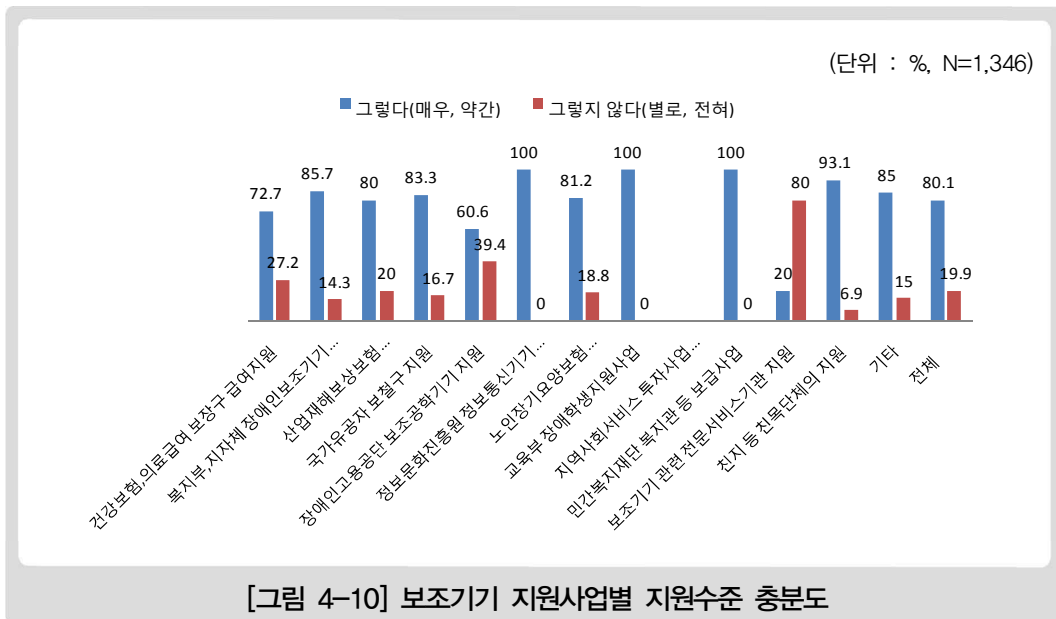
* 주된 보조기기 중 빈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분석함

IV

조사결과

(2) 보조기기 지원사업별 지원수준 충분도

보조기기 지원사업별 지원수준이 충분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매우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한국문화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교육부의 장애학생 지원사업, 공동모금회 또는 민간, 복지재단, 복지관 등의 보급사업이 각각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지 등 친목단체의 지원(93.1%),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85.7%)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전체 평균인 80.1% 수준보다 낮은 사업으로는 보조기기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의 지원이 20.0%로 가장 낮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60.6%),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사업(7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3〉 보조기기 지원사업별 지원수준 충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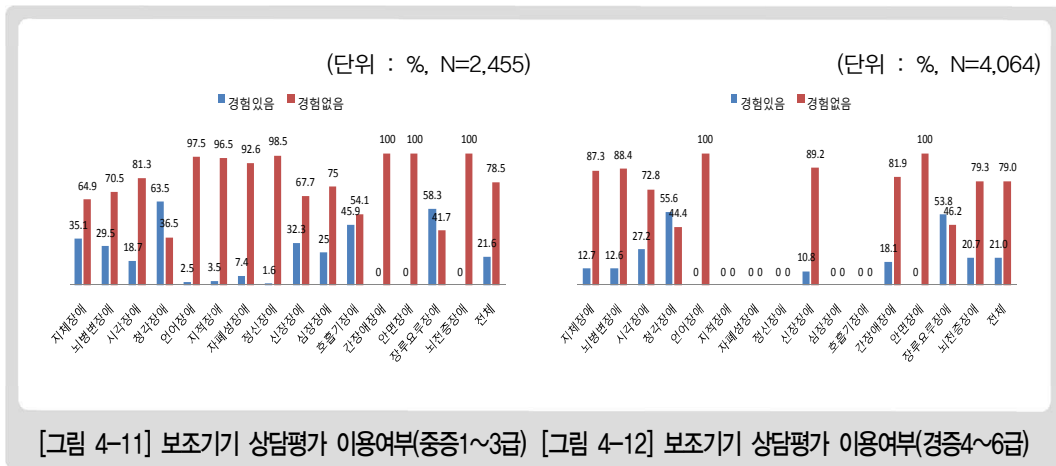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국민건강 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할 보조기구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보철구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보조공학 기기지원	한국정보 문화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교육부 장애학생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기기 렌탈바우처	공동모금회 또는 민간, 복지 재단, 복지관 등 보급사업	보조기기 관련 전문서비스 기관	친지, 이웃 또는 종교 및 친목단체의 지원	기타	전체
매우 그렇다	18.6	33.8	36.7	50.0	36.4	66.7	28.1	50.0	0.0	52.9	0.0	67.2	55.0	41.3
약간 그렇다	54.1	51.9	43.3	33.3	24.2	33.3	53.1	50.0	0.0	47.1	20.0	25.9	30.0	38.8
별로 그렇지 않다	23.5	9.8	13.3	16.7	39.4	0.0	18.8	0.0	0.0	0.0	70.0	6.9	15.0	17.8
전혀 그렇지 않다	3.7	4.5	6.7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100.0	100.0	100.0	100.0	100

(3) 보조기기 전문 서비스 이용 경험

① 상담과 평가 이용 여부

보조기기 상담·평가 이용 여부에서 중증장애의 경우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8.5%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각장애 63.5%, 장루·요루장애 58.3%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장애에서도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9.0%로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청각장애 55.6%, 장루·요루장애에서 53.8%로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상담평가 이용여부(중증1~3급)

(단위 :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경험있음	35.1	29.5	18.7	63.5	2.5	3.5	7.4	1.6	32.3	25.0	45.9	0.0	0.0	58.3	0.0	21.6
경험없음	64.9	70.5	81.3	36.5	97.5	96.5	92.6	98.5	67.7	75.0	54.1	100.0	100.0	41.7	100.0	7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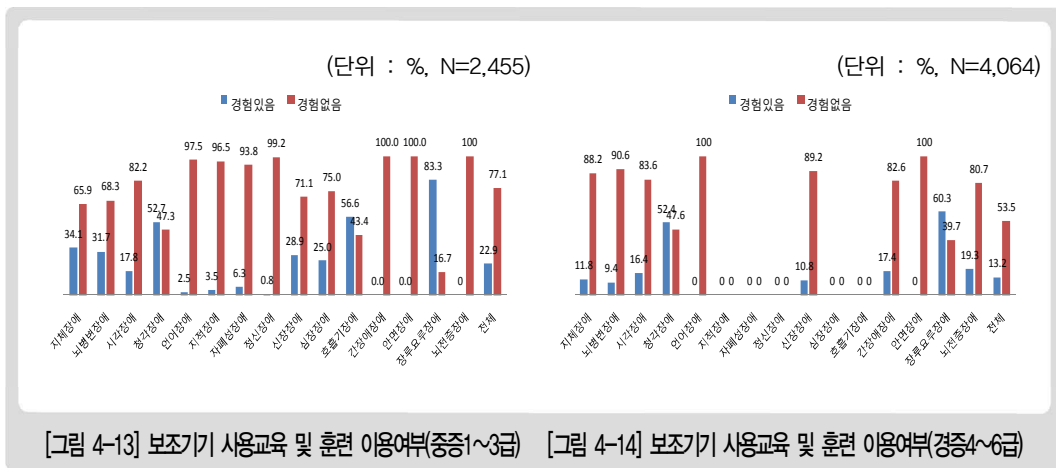
〈표 4-15〉 상담평가 이용여부(경증4~6급)

(단위 :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경험있음	12.7	12.6	27.2	55.6	0.0	0.0	0.0	0.0	10.8	0.0	0.0	18.1	0.0	53.8	20.7	21.0
경험없음	87.3	88.4	72.8	44.4	100.0	0.0	0.0	0.0	89.2	0.0	0.0	81.9	100.0	46.2	79.3	7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사용교육 및 훈련 이용 여부

보조기기 사용교육 및 훈련 이용 여부에서 중증장애의 경우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7.1%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사용교육 및 훈련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각장애 52.7%, 호흡기장애 56.6%, 장루·요루장애 83.3%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장애에서도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3.5%로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청각장애 52.4%, 장루·요루장애에서 60.3%로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가 의료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사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4-16〉 사용교육 및 훈련 이용 여부(중증1~3급)

(단위 :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경험있음	34.1	31.7	17.8	52.7	2.5	3.5	6.3	0.8	28.9	25.0	56.6	0.0	0.0	83.3	0.0	22.9
경험없음	65.9	68.3	82.2	47.3	97.5	96.5	93.8	99.2	71.1	75.0	43.4	100.0	100.0	16.7	100.0	7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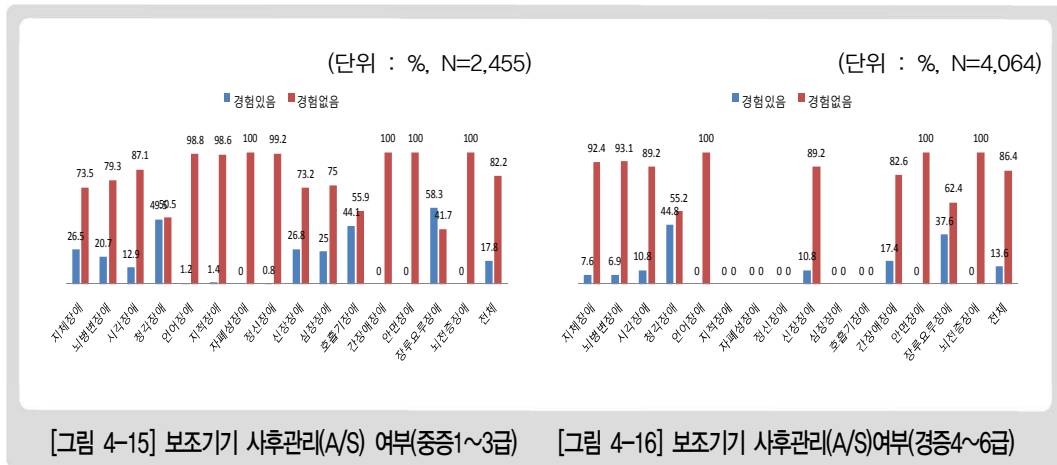
〈표 4-17〉 사용교육 및 훈련 이용 여부(경증4~6급)

(단위 :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경험있음	11.8	9.4	16.4	52.4	0.0	0.0	0.0	0.0	10.8	0.0	0.0	17.4	0.0	60.3	19.3	46.5
경험없음	88.2	90.6	83.6	47.6	100.0	0.0	0.0	0.0	89.2	0.0	0.0	82.6	100.0	39.7	80.7	5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사후관리(A/S) 이용 여부

사후관리(A/S) 이용여부에서 중증장애의 경우 82.2%, 경증장애의 경우에는 86.4%가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중증장애의 장루·요루 장애에서만 58.3%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장애유형에서는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사후관리 이용여부(중증1~3급)

(단위 :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경험있음	26.5	20.7	12.9	49.5	1.2	1.4	0.0	0.8	26.8	25.0	44.1	0.0	0.0	58.3	0.0	17.8
경험없음	73.5	79.3	87.1	50.5	98.8	98.6	100.0	99.2	73.2	75.0	55.9	100.0	100.0	41.7	100.0	8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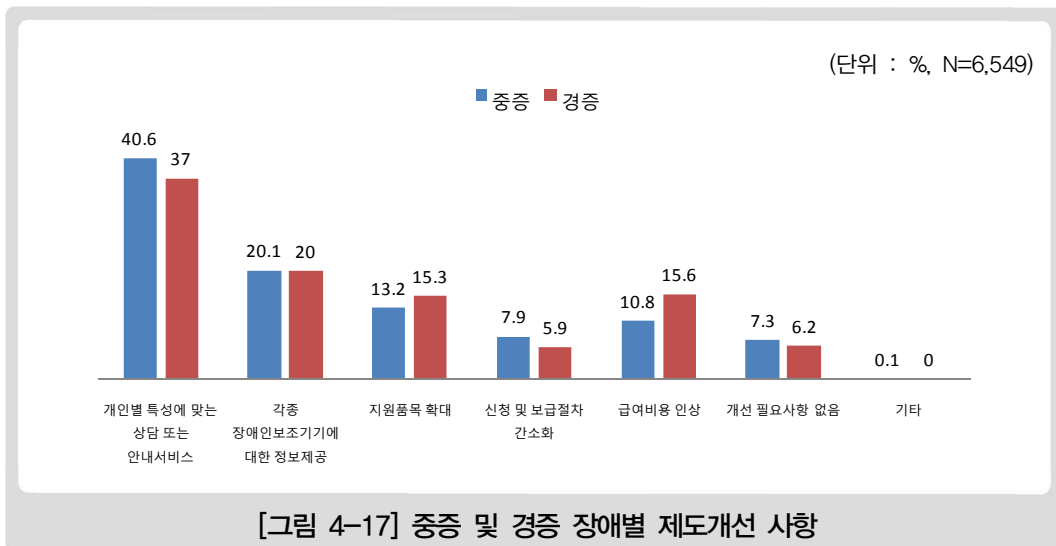
〈표 4-19〉 사후관리 이용여부(경증4~6급)

(단위 :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전체
경험있음	7.6	6.9	10.8	44.8	0.0	0.0	0.0	0.0	10.8	0.0	0.0	17.4	0.0	37.6	0.0	13.6
경험없음	92.4	93.1	89.2	55.2	100.0	0.0	0.0	0.0	89.2	0.0	0.0	82.6	100.0	62.4	100.0	8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제도 개선 사항

중증 및 경증 장애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서 중증장애의 경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서비스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각종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20.1%), 지원품목 확대(13.2%) 순으로 나타났다. 경증장애의 경우 역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안내 서비스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각종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20.0%), 급여비용 인상(15.6%)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과 경증 장애인의 제도개선사항은 지원품목확대와 급여비용 인상 사항에서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제도개선 사항(중증1~3급)

(단위 :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안내서비스	34.1	31.3	34.9	37.6	13.6	37.1	53.6	33.8	43.1	33.0	39.5	75.0	66.7	41.7	33.3	40.6
각종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17.4	21.1	24.6	16.9	18.5	20.7	16.6	32.0	15.1	6.8	16.9	8.3	33.3	8.3	44.4	20.1
지원품목 확대	18.3	22.0	22.9	10.9	3.7	11.3	6.7	6.4	4.1	26.1	15.3	8.3	0.0	41.7	0.0	13.2
신청 및 보급절차 간소화	7.9	7.3	5.8	3.6	46.9	5.2	6.5	2.0	10.0	14.8	9.0	0.0	0.0	0.0	0.0	7.9
급여비용 인상	19.0	14.3	9.2	26.3	4.9	10.9	5.3	4.6	22.1	19.3	18.2	8.3	0.0	0.0	0.0	10.8
개선 필요사항 없음	3.0	3.5	2.6	4.7	12.3	14.4	11.3	21.2	5.5	0.0	1.1	0.0	0.0	8.3	22.2	7.3
기타	0.2	0.5	0.0	0.0	0.0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21〉 제도개선 사항(경증4~6급)

(단위 :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안내서비스	35.4	32.3	37.2	35.5	38.9	0.0	0.0	0.0	0.0	0.0	0.0	71.3	28.6	33.2	20.3	37.0
각종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21.6	24.9	21.0	14.3	27.8	0.0	0.0	0.0	0.0	0.0	0.0	14.9	14.3	13.1	28.3	20.0
지원품목 확대	16.4	17.3	13.5	11.1	5.6	0.0	0.0	0.0	0.0	0.0	0.0	3.2	28.6	19.5	22.3	15.3
신청 및 보급절차 간소화	6.2	4.1	3.2	7.1	11.1	0.0	0.0	0.0	0.0	0.0	0.0	4.3	14.3	1.0	2.0	5.9
급여비용 인상	12.3	13.6	14.2	28.0	11.1	0.0	0.0	0.0	0.0	0.0	0.0	2.1	14.3	30.1	15.1	15.6
개선 필요사항 없음	8.1	7.8	10.8	3.9	5.6	0.0	0.0	0.0	0.0	0.0	0.0	4.3	0.0	3.1	12.0	6.2
기타	0.1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IV

조 사 결 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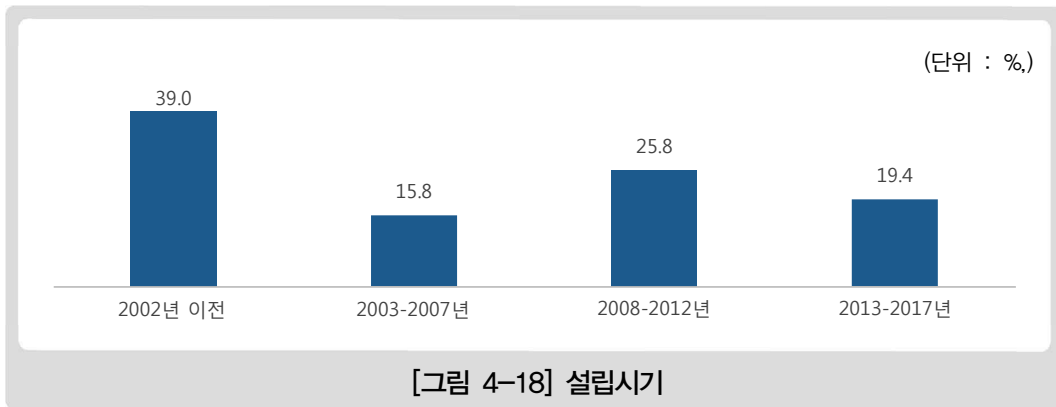
보조기기 산업실태

1) 일반현황

(1) 설립시기

보조기기 사업체는 2002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가 3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08-2012년(25.8%), 2013-2017년(19.4%), 2003-2007년(15.8%)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시기를 취급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의지/보조기(54.1%), 의료기기(35.6%), 복지용구(30.4%)는 2002년 이전 설립 수가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보조기기는 2013~2017년도에 34.2%로 가장 많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설립시기

(단위 : %)

구분		업체수	2002년 이전	2003-2007년	2008-2012년	2013-2017년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54.1	17.9	20.4	7.7
	의료기기	(73)	35.6	17.8	27.4	19.2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30.4	20.3	29.0	20.3
	장애인보조기기	(158)	24.7	10.8	30.4	34.2
	기타	(4)	75.0	0.0	25.0	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47.7	17.3	22.3	12.7
	유통업	(24)	33.3	12.5	45.8	8.3
	판매업	(173)	26.0	12.1	29.5	32.4
	임대업(대여업)	(6)	0.0	50.0	16.7	33.3
	수입업	(10)	30.0	30.0	30.0	10.0
	수리업	(2)	100.0	0.0	0.0	0.0
	기타	(2)	100.0	0.0	0.0	0.0
계		(500)	39.0	15.8	25.8	19.4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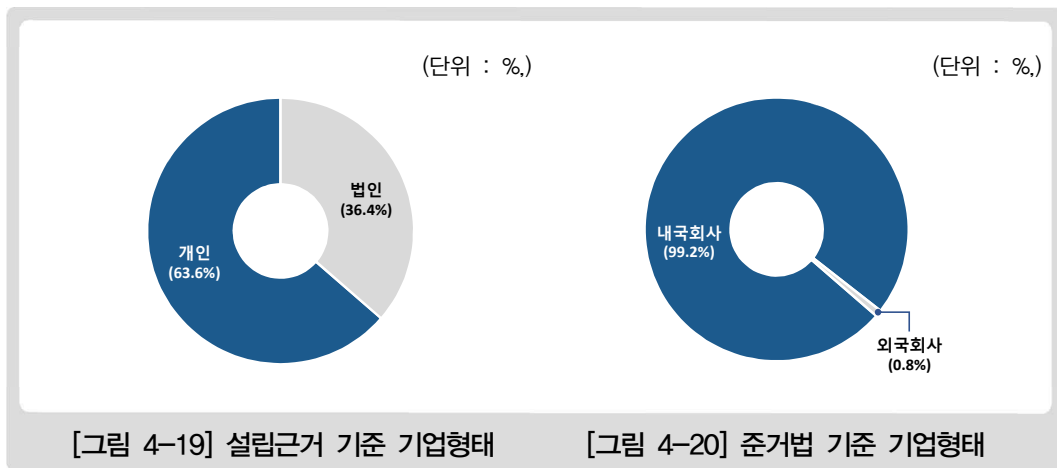
(2) 기업형태(설립근거, 준거법 기준)

설립근거를 기준으로 보조기기 사업체의 기업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63.6%로 나타났고 법인은 36.4%로 나타났다. 준거법 기준으로는 내국회사가 99.2%, 외국회사가 0.8%로 대부분이 내국회사의 기업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근거를 기준으로 개인은 취급분야별에서 의지/보조기(89.3%), 장애인보조기기(49.4%), 복지용구(46.4%), 의료기기(43.8%)순으로 나타났고, 법인은 의료기기(56.2%),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53.6%), 장애인보조기기(50.6%)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유형별에서 개인은 판매업(73.4%), 생산업(63.3%), 유통업(29.2%), 수입업(20%), 임대업(16.7%) 순으로 나타났고, 법인은 임대업(대여업)(83.3%), 수입업(80.0%), 유통업(70.8%) 순으로 나타났다.¹¹⁾

준거법 기준에서는 모든 계층에서 내국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외국회사 비율은 업체유형별 유통업(4.2%)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 4-23〉 기업형태(설립근거, 준거법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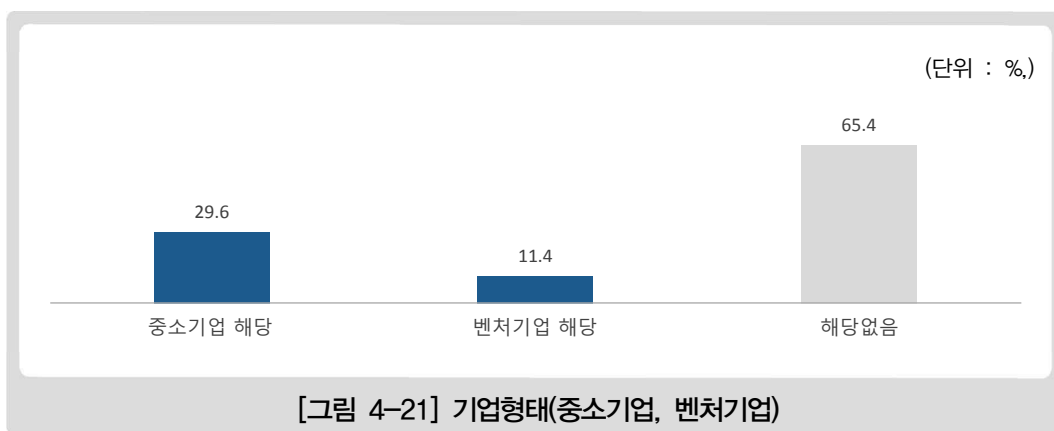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설립근거 기준		준거법 기준	
			개인	법인	내국회사	외국회사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89.3	10.7	98.5	1.5
	의료기기	(73)	43.8	56.2	98.6	1.4
	복자용구(고령친화용품)	(69)	46.4	53.6	100.0	0.0
	장애인보조기기	(158)	49.4	50.6	100.0	0.0
	기타	(4)	25.0	75.0	100.0	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63.3	36.7	98.9	1.1
	유통업	(24)	29.2	70.8	95.8	4.2
	판매업	(173)	73.4	26.6	100.0	0.0
	임대업(대여업)	(6)	16.7	83.3	100.0	0.0
	수입업	(10)	20.0	80.0	100.0	0.0
	수리업	(2)	100.0	0.0	100.0	0.0
	기타	(2)	0.0	100.0	100.0	0.0
계		(500)	63.6	36.4	99.2	0.8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3) 기업형태(중소기업, 벤처기업)

보조기기 사업체의 형태로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체가 29.6%로 나타났고, 벤처기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11.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사업체 중 취급분야별로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55.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체유형별로는 임대업(대여업)(83.3%)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업체 중에서는 취급분야별로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20.3%)가 가장 높고 업체유형별로는 생산업(제조업)(1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¹²⁾



〈표 4-24〉 기업형태(중소기업, 벤처기업)

(단위 : %)

구분		사례수	중소기업 해당	벤처기업 해당	해당없음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8.7	6.1	86.2
	의료기기	(73)	43.8	16.4	52.1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55.1	20.3	40.6
	장애인보조기기	(158)	36.7	12.0	57.6
	기타	(4)	75.0	0.0	25.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31.1	16.3	61.8
	유통업	(24)	54.2	8.3	41.7
	판매업	(173)	19.1	4.6	78.6
	임대업(대여업)	(6)	83.3	0.0	16.7
	수입업	(10)	70.0	0.0	30.0
	수리업	(2)	0.0	0.0	100.0
	기타	(2)	100.0	50.0	0.0
계		(500)	29.6	11.4	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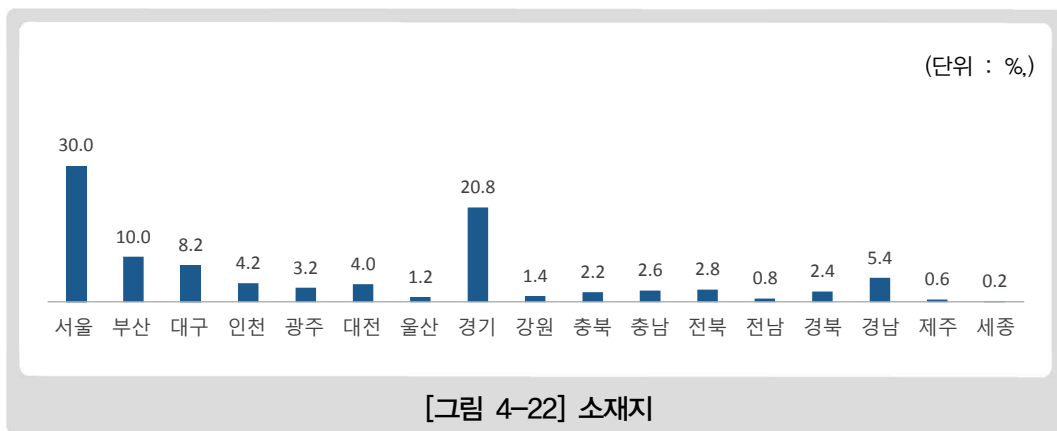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12)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4) 소재지

보조기기 사업체 소재지는 서울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기(20.8%), 부산(10.0%), 대구(8.2%), 경남(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사업체가 서울 및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취급 분야별 장애인보조기기(36.1%), 업체유형별로는 수입업(60.0%), 유통업(54.2%)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표 4-25〉 소재지

(단위 : %)

	구분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주 취급 분야	의지/보조기	(196)	28.6	13.3	9.7	2.6	5.6	5.6	1.5	9.7	2.0	2.6	2.6	3.6	1.5	3.6	6.6	1.0	0.0
	의료기기	(73)	27.4	8.2	5.5	6.8	1.4	4.1	1.4	27.4	0.0	2.7	5.5	2.7	0.0	2.7	4.1	0.0	0.0
	복지용구 (고령친화용품)	(69)	21.7	13.0	7.2	4.3	1.4	1.4	0.0	36.2	1.4	1.4	0.0	5.8	0.0	1.4	4.3	0.0	0.0
	장애인보조기기	(158)	36.1	5.7	8.2	5.1	1.9	3.2	1.3	24.1	1.3	1.9	2.5	0.6	0.6	1.3	5.1	0.6	0.6
	기타	(4)	5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업체 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27.2	13.1	8.5	3.9	3.2	3.5	1.4	20.5	1.4	2.1	3.5	2.8	0.7	2.1	5.3	0.7	0.0
	유통업	(24)	54.2	0.0	4.2	0.0	4.2	0.0	0.0	20.8	0.0	0.0	0.0	8.3	0.0	0.0	8.3	0.0	0.0
	판매업	(173)	28.3	7.5	8.1	5.8	2.9	5.8	1.2	21.4	1.2	2.9	1.7	2.3	1.2	3.5	5.2	0.6	0.6
	임대업(대여업)	(6)	50.0	0.0	16.7	0.0	0.0	0.0	0.0	16.7	16.7	0.0	0.0	0.0	0.0	0.0	0.0	0.0	0.0
	수입업	(10)	60.0	0.0	10.0	0.0	0.0	0.0	0.0	3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리업	(2)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기타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500)	30.0	10.0	8.2	4.2	3.2	4.0	1.2	20.8	1.4	2.2	2.6	2.8	0.8	2.4	5.4	0.6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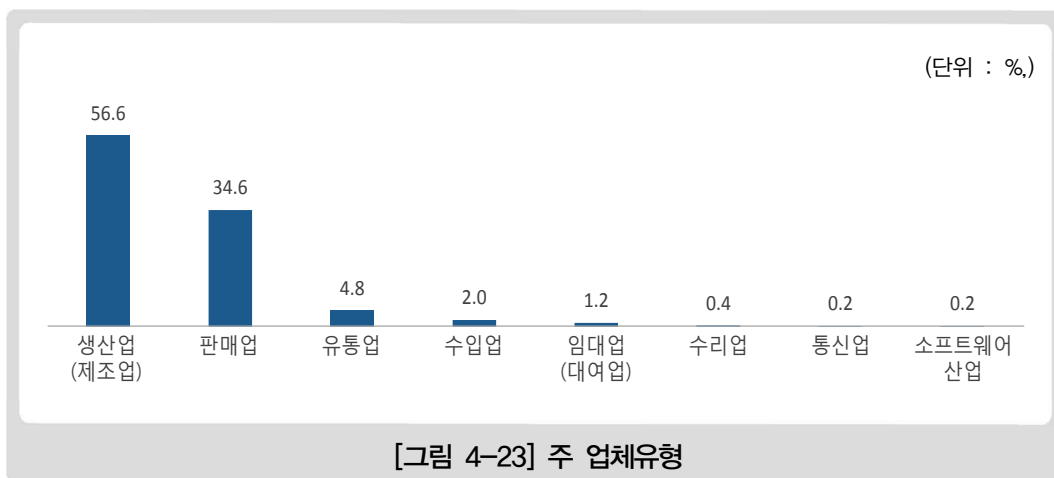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13)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5) 업체유형

보조기기 사업체의 업체유형은 생산업(제조업)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판매업(34.6%), 유통업(4.8%), 수입업(2.0%), 임대업(대여업)(1.2%)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유형별 취급분야를 살펴보면, 생산업(제조업)에서는 의지/보조기가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의지/보조기 업체 대부분이 제조(제작) 비중이 높은 이유로 볼 수 있다. 판매업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53.2%), 유통업은 장애인보조기기(9.5%), 수입업은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4.3%), 임대업(대여업)에서는 복지용구(8.7%)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주 업체유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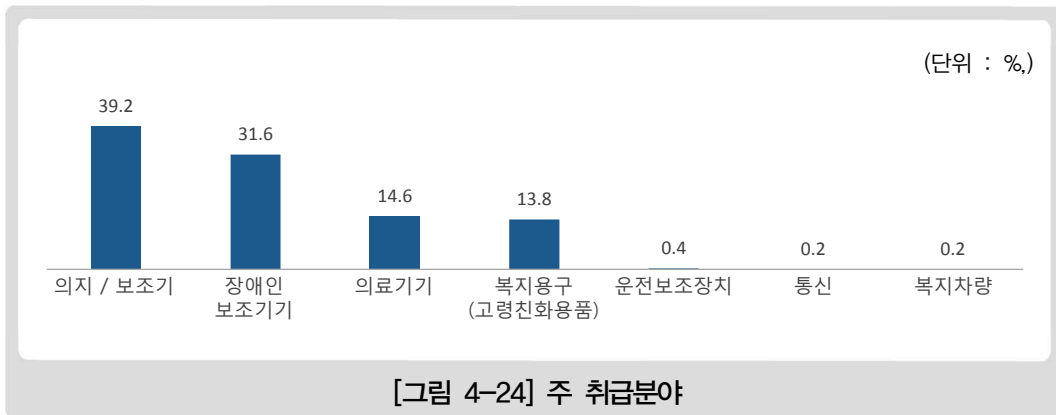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생산업 (제조업)	판매업	유통업	수입업	임대업 (대여업)	수리업	통신업	소프트웨어 산업
주 취급 분야	의지/보조기	(196)	82.1	15.8	1.0	0.0	0.0	1.0	0.0
	의료기기	(73)	43.8	49.3	6.8	0.0	0.0	0.0	0.0
	복지용구 (고령친화용품)	(69)	52.2	31.9	2.9	4.3	8.7	0.0	0.0
	장애인보조기기	(158)	32.9	53.2	9.5	3.8	0.0	0.0	0.6
	기타	(4)	50.0	0.0	0.0	25.0	0.0	0.0	25.0
계	(500)	56.6	34.6	4.8	2.0	1.2	0.4	0.2	0.2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6) 취급분야

보조기기 사업체의 취급분야는 의지/보조기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장애인보조기기(31.6%), 의료기기(14.6%),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13.8%), 운전보조장치(0.4%), 복지차량(0.2%) 순으로 나타났다.

취급분야별 업체유형을 살펴보면, 의지/보조기 업체는 생산업(제조업)이 56.9%로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보조기기에서는 유통업(62.5%), 의료기기는 유통업(20.8%)과 판매업(20.8%),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에서는 임대업(대여업)(10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¹⁴⁾



〈표 4-27〉 주 취급분야

(단위 : %)

구분		사례수	의지/ 보조기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기기	복지용구 (고령친화용품)	운전보조장치	통신	복지차량
주 업체 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56.9	18.4	11.3	12.7	0.4	0.0	0.4
	유통업	(24)	8.3	62.5	20.8	8.3	0.0	0.0	0.0
	판매업	(173)	17.9	48.6	20.8	12.7	0.0	0.0	0.0
	임대업(대여업)	(6)	0.0	0.0	0.0	100.0	0.0	0.0	0.0
	수입업	(10)	0.0	60.0	0.0	30.0	10.0	0.0	0.0
	수리업	(2)	100.0	0.0	0.0	0.0	0.0	0.0	0.0
	기타	(2)	0.0	50.0	0.0	0.0	0.0	50.0	0.0
계		(500)	39.2	31.6	14.6	13.8	0.4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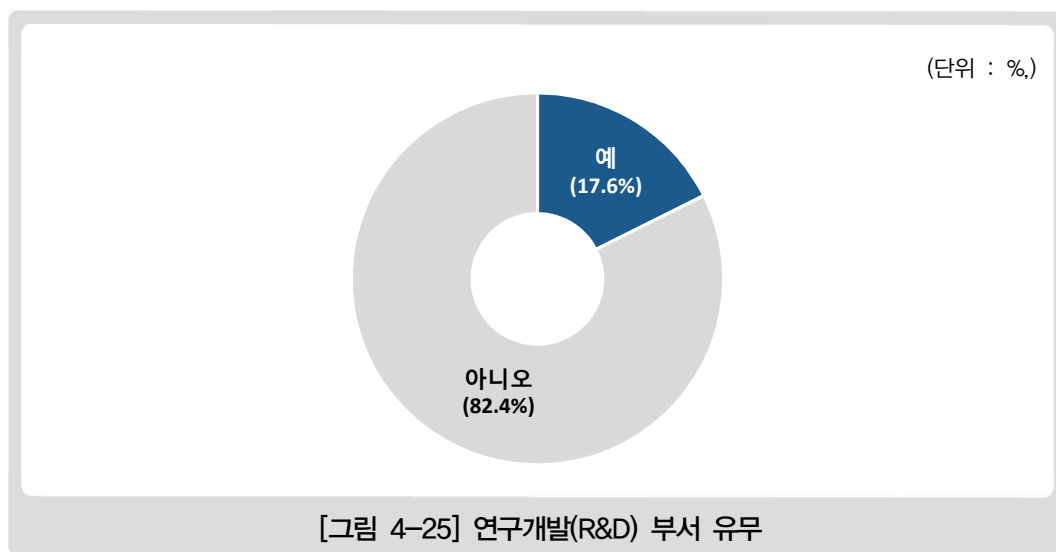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14)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7) 연구개발(R&D) 부서 유무

보조기기 사업체 중 연구개발(R&D) 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는 82.4%로 나타났고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17.6%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부서를 보유 중인 사업체 중에서 취급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가 30.4%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21.9%), 장애인보조기기(19%), 의지/보조기(9.7%)순으로 나타났다.¹⁵⁾ 업체유형별로는 생산업(제조업)에서 25.4%로 가장 높았고 유통업(2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8〉 연구개발(R&D) 부서 유무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9.7	90.3
	의료기기	(73)	21.9	78.1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30.4	69.6
	장애인보조기기	(158)	19.0	81.0
	기타	(4)	50.0	5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25.4	74.6
	유통업	(24)	20.8	79.2
	판매업	(173)	4.0	96.0
	임대업(대여업)	(6)	16.7	83.3
	수입업	(10)	10.0	90.0
	수리업	(2)	0.0	100.0
	기타	(2)	100.0	0.0
계		(500)	17.6	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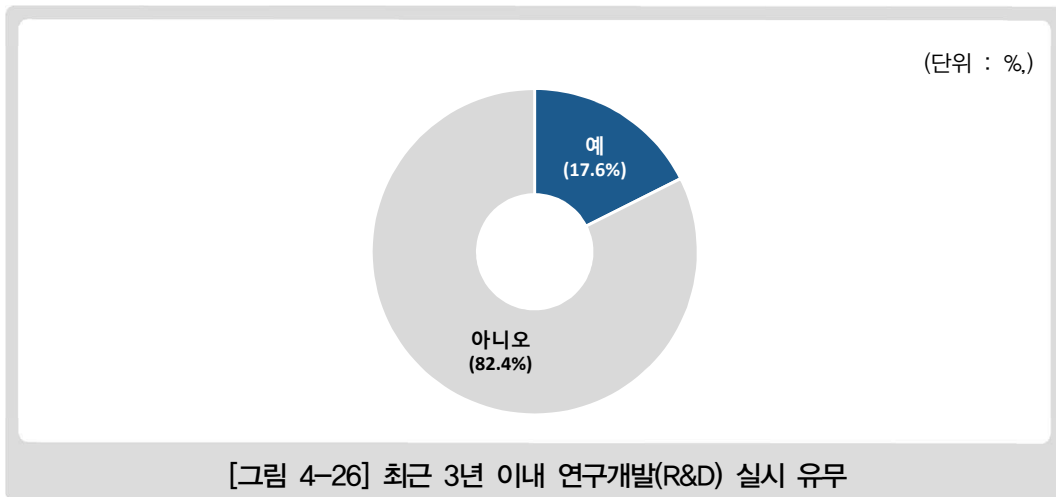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15)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8)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R&D) 실시 유무

보조기기 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R&D)의 실시 경험 여부에 대해 대부분 업체에서 아니오(81.8%)라고 응답했고, 18.2%만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보조기기 제품 개발을 통한 업체 육성, 제품의 다양화 및 연구기반 마련 등의 지원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R&D)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취급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가 39.1%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24.7%), 장애인 보조기기(18.4%) 순으로 나타났다.¹⁶⁾ 업체유형별로는 생산업(제조업)에서 28.3%로 가장 높았고 임대업(대여업)(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9〉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R&D) 유무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7.7	92.3
	의료기기	(73)	24.7	75.3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39.1	60.9
	장애인보조기기	(158)	18.4	81.6
	기타	(4)	50.0	5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28.3	71.7
	유통업	(24)	4.2	95.8
	판매업	(173)	4.0	96.0
	임대업(대여업)	(6)	16.7	83.3
	수입업	(10)	0.0	100.0
	수리업	(2)	0.0	100.0
	기타	(2)	100.0	0.0
계		(500)	18.2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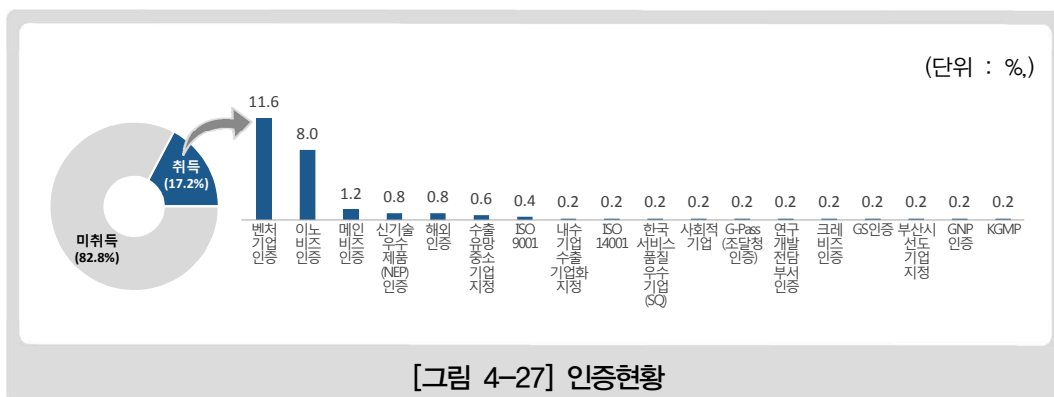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16)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9) 기업인증 취득현황

보조기기 사업체 중 기업인증을 취득한 사업체는 17.2%, 취득하지 않은 사업체는 82.8%로 나타났다. 기업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인증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벤처기업 인증이 1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이노비즈 인증(8.0%), 메인비즈 인증(1.2%), 신기술우수제품(NEP) 인증과 해외 인증(각각 0.8%)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취급분야별로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가 20.3%로 가장 높고, 의료기기(16.4%), 장애인보조기기(12.7%)순으로 나타났고 업체유형별로는 생산업(제조업)에서 1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표 4-30〉 인증현황_1

(단위 : %)

구분	사례수	미취득	취득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신기술 우수제품 (NEP) 인증	해외인증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ISO 9001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지정	ISO 14001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92.3	6.1	3.1	0.5	0.0	0.0	0.5	0.0	0.0	0.0
	의료기기	(73)	78.1	16.4	11.0	1.4	1.4	0.0	0.0	1.4	0.0	1.4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65.2	20.3	21.7	4.3	1.4	1.4	0.0	0.0	0.0	0.0
	장애인보조기기	(158)	81.6	12.7	6.3	0.0	1.3	1.9	0.6	0.6	0.6	0.0
	기타	(4)	50.0	0.0	25.0	25.0	0.0	0.0	0.0	0.0	0.0	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76.7	16.6	11.3	1.4	1.1	0.7	1.1	0.7	0.0	0.4
	유통업	(24)	87.5	8.3	4.2	0.0	0.0	0.0	0.0	0.0	0.0	0.0
	판매업	(173)	93.1	4.6	2.3	1.2	0.6	0.6	0.0	0.0	0.6	0.0
	임대업(대여업)	(6)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입업	(10)	70.0	0.0	20.0	0.0	0.0	10.0	0.0	0.0	0.0	0.0
	수리업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2)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계	(500)	82.8	11.6	8.0	1.2	0.8	0.8	0.6	0.4	0.2	0.2

* 주) 사업체 전체 기준(중복응답)

17)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 4-31〉 인증현황_2

(단위 : %)

구분		사례수	취득									
			한국 서비스 품질우수기업 (SQ)	사회적기업	G-Pass (조달청 인증)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	크레비즈 인증	GS 인증	부산시 선도기업 지정	GNP 인증	KGMP	취득계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0.0	0.0	0.0	0.0	0.0	0.0	0.0	0.0	0.0	7.7
	의료기기	(73)	1.4	0.0	0.0	0.0	0.0	0.0	0.0	0.0	1.4	21.9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0.0	0.0	0.0	0.0	0.0	0.0	1.4	0.0	0.0	34.8
	장애인보조기기	(158)	0.0	0.0	0.6	0.6	0.6	0.6	0.0	0.6	0.0	18.4
	기타	(4)	0.0	25.0	0.0	0.0	0.0	0.0	0.0	0.0	0.0	5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0.4	0.0	0.0	0.4	0.4	0.4	0.4	0.0	0.4	23.3
	유통업	(24)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5
	판매업	(173)	0.0	0.0	0.6	0.0	0.0	0.0	0.0	0.6	0.0	6.9
	임대업(대여업)	(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수입업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
	수리업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기타	(2)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
계		(500)	0.2	0.2	0.2	0.2	0.2	0.2	0.2	0.2	0.2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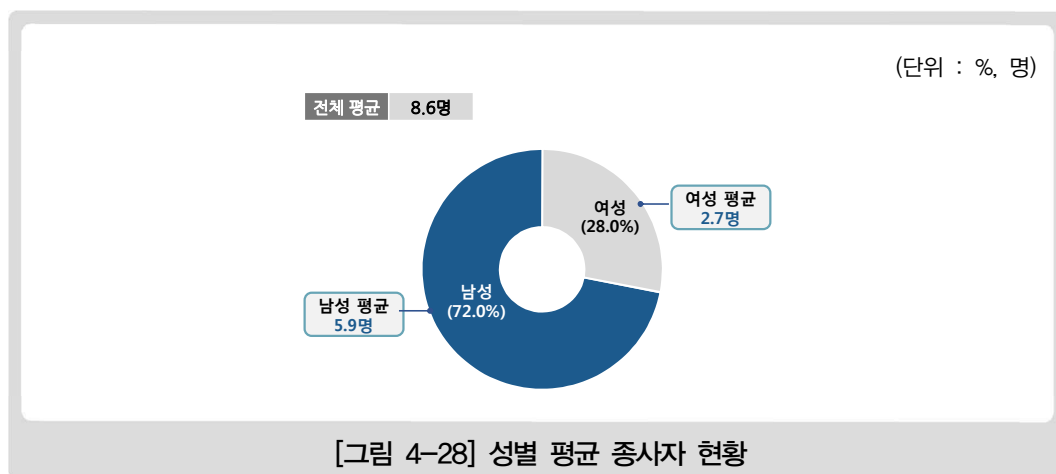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중복응답)

2) 인력현황

(1) 종사자 성별 현황

보조기기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8.6명으로 남성 평균 5.9명, 여성 평균 2.7명으로 나타났고 성별 평균 종사자 비율은 남성이 72.0%로 여성인 28.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급분야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비중은 의지/보조기(78.5%), 장애인보조기기(70.3%) 순이었고, 여성의 비중은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37.5%), 의료기기(33.9%) 순이었다. 업체유형별로는 남성의 경우 생산업(제조업)(75.8%)에서 높고, 여성의 비중은 임대업(대여업)(51.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표 4-32〉 성별 평균 종사자 현황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평균 종사자 비율		평균 종사자 수		
			남성	여성	합계	남자	여자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78.5	21.5	4.7	3.4	1.3
	의료기기	(73)	66.1	33.9	13.8	9.1	4.7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62.5	37.5	12.9	8.0	4.9
	장애인보조기기	(158)	70.3	29.7	8.8	6.2	2.6
	기타	(4)	89.2	10.8	16.5	14.8	1.8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75.8	24.2	10.1	7.0	3.1
	유통업	(24)	71.7	28.3	10.0	6.9	3.2
	판매업	(173)	66.4	33.6	5.0	3.2	1.8
	임대업(대여업)	(6)	49.0	51.0	11.2	5.2	6.0
	수입업	(10)	71.7	28.3	7.8	5.7	2.1
	수리업	(2)	75.0	25.0	1.5	1.0	0.5
	기타	(2)	81.7	18.3	78.0	62.5	15.5
계		(500)	72.0	28.0	8.6	5.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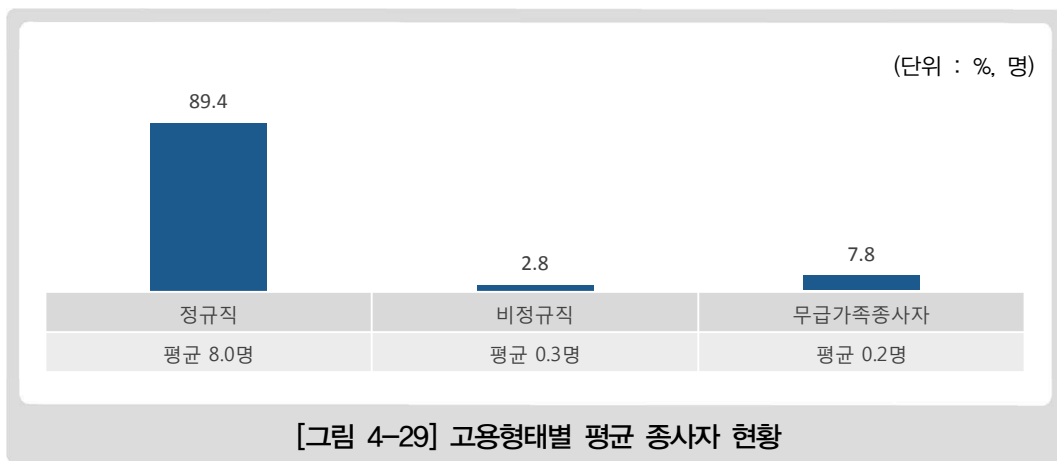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18)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고용형태별 평균 종사자 현황

보조기기 사업체의 정규직 종사자 수는 평균 8.0명이며, 비정규직 종사자는 평균 0.3명, 무급가족종사자는 평균 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비율로 살펴보면, 정규직(89.4%), 무급가족종사자(7.8%), 비정규직(2.8%) 순으로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층에서 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취급분야별로는 장애인보조기기(93.9%)에서 높고, 업체유형별로는 유통업(92.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⁹⁾



〈표 4-33〉 고용형태별 평균 종사자 현황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평균 종사자 비율			평균 종사자 수			
		정규직	비정규직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무급가족종사자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83.1	2.2	14.6	4.7	4.2	0.1
	의료기기	(73)	93.2	2.3	4.6	13.8	13.4	0.3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92.2	4.4	3.4	12.9	12.4	0.5
	장애인보조기기	(158)	93.9	3.1	3.0	8.8	8.2	0.6
	기타	(4)	100.0	0.0	0.0	16.5	16.5	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88.2	2.3	9.4	10.1	9.5	0.4
	유통업	(24)	92.1	7.9	0.0	10.0	9.4	0.6
	판매업	(173)	90.8	2.4	6.7	5.0	4.7	0.2
	임대업(대여업)	(6)	91.7	8.3	0.0	11.2	11.0	0.2
	수입업	(10)	90.5	7.5	2.0	7.8	7.4	0.3
	수리업	(2)	75.0	0.0	25.0	1.5	1.0	0.5
	기타	(2)	99.3	0.7	0.0	78.0	77.0	1.0
계		(500)	89.4	2.8	7.8	8.6	8.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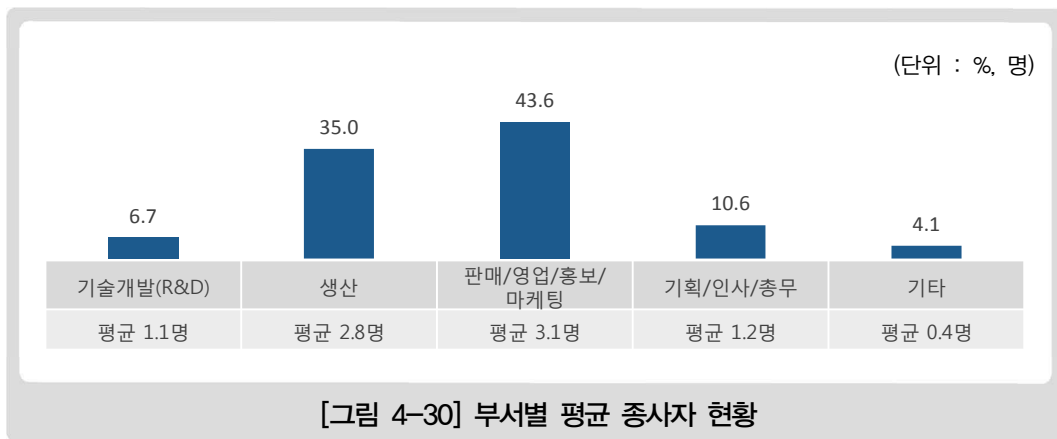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19)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3) 부서별 종사자 현황

부서별 종사자 현황은 판매/영업/홍보/마케팅 부서의 종사자가 43.6%(평균 3.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산(35.0%, 평균 2.8명), 기획/인사/총무(10.6%, 평균 1.2명), 기술개발(R&D)(6.7%, 평균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서별 종사자 비율에서 취급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술개발은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10.5%), 생산은 의지/보조기(60.9%), 판매/영업/홍보/마케팅은 장애인보조기기(62.5%), 기획/인사/총무는 의료기기(13.7%)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유형별로는 판매/영업/홍보/마케팅이 유통업(68.3%), 판매업(71.8%)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보다 유통 판매 중심의 산업시장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34〉 부서별 평균 종사자 현황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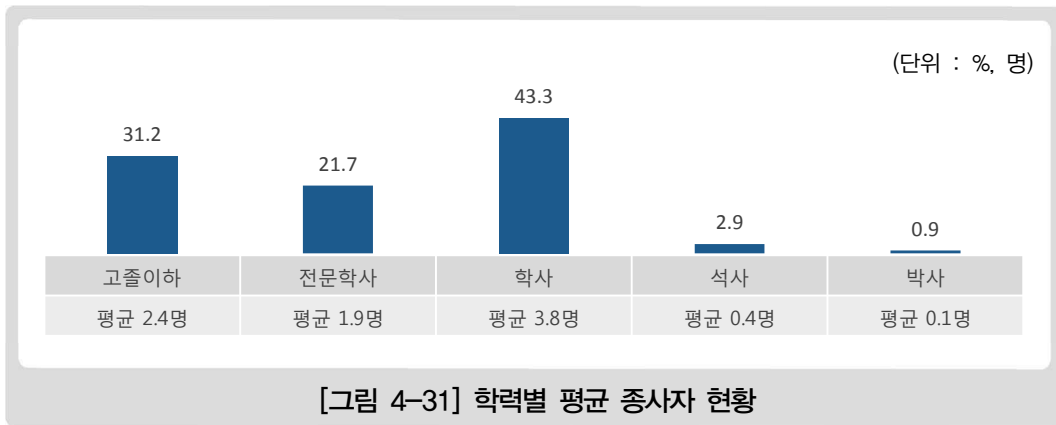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평균 종사자 비율					평균 종사자 수					
			기술개발 (R&D)	생산	판매/ 영업/ 홍보/ 마케팅	기획 인사 총무	기타	합계	기술개발 (R&D)	생산	판매/ 영업/ 홍보/ 마케팅	기획 인사 총무	기타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5.6	60.9	23.6	6.1	3.8	4.7	0.4	2.1	1.4	0.5	0.2
	의료기기	(73)	5.5	21.5	56.8	13.7	2.4	13.8	1.0	5.0	5.3	2.4	0.2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10.5	24.3	43.2	12.9	9.0	12.9	1.4	5.0	3.6	1.8	1.0
	장애인보조기기	(158)	7.0	14.0	62.5	13.6	2.9	8.8	1.8	1.6	3.9	1.2	0.4
	기타	(4)	10.4	24.7	40.1	17.6	7.1	16.5	1.5	8.5	2.3	2.5	1.8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9.7	54.9	23.9	8.6	2.8	10.1	1.2	4.6	2.7	1.3	0.3
	유통업	(24)	3.4	5.7	68.3	18.2	4.4	10.0	0.7	0.7	5.4	2.3	0.9
	판매업	(173)	2.0	9.6	71.8	11.6	5.0	5.0	0.3	0.5	3.2	0.7	0.3
	임대업(대여업)	(6)	8.3	4.2	42.9	17.3	27.3	11.2	0.2	0.2	3.7	1.8	5.3
	수입업	(10)	2.9	2.9	57.8	31.0	5.3	7.8	0.5	0.4	4.2	2.4	0.3
	수리업	(2)	0.0	50.0	25.0	0.0	25.0	1.5	0.0	0.5	0.0	0.0	0.5
	기타	(2)	56.7	0.0	31.0	12.3	0.0	78.0	61.0	0.0	10.5	6.5	0.0
	계	(500)	6.7	35.0	43.6	10.6	4.1	8.6	1.1	2.8	3.1	1.2	0.4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4) 학력별 종사자 현황

보조기기 사업체의 종사자 학력은 학사 학력이 43.3%(평균 3.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졸 이하(31.2%, 평균 2.4명), 전문학사(21.7%, 평균 1.9명), 석사(2.9%, 평균 0.4명), 박사(0.9%, 평균 0.1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급분야별로 살펴보면 학사 학력의 종사자 비율은 장애인보조기기(55.7%), 고졸이하 종사자 비율은 의지/보조기(49.4%), 전문학사 비율은 의료기기(27.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업체유형별에서는 학사 학력의 종사자 비율이 임대업(대여업)(6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²⁰⁾ 고졸이하 종사자 비율은 생산업(제조업)(42.2%), 전문학사 비율은 유통업(28.2%)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학력별 평균 종사자 현황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평균 종사자 비율					평균 종사자 수					
			고졸이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합계	고졸이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49.4	17.6	31.4	1.4	0.3	4.7	1.7	0.9	2.0	0.1	0.0
	의료기기	(73)	24.8	27.7	44.0	2.9	0.6	13.8	4.2	3.4	5.4	0.7	0.1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22.3	26.1	48.2	3.0	0.4	12.9	4.0	3.3	4.9	0.6	0.2
	장애인보조기기	(158)	15.1	22.4	55.7	4.8	1.9	8.8	1.8	1.7	4.6	0.6	0.1
	기타	(4)	42.6	11.4	41.5	0.0	4.5	16.5	7.0	1.3	7.8	0.0	0.5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42.2	20.3	34.1	2.5	0.9	10.1	3.5	2.2	3.8	0.5	0.1
	유통업	(24)	8.3	28.2	61.1	1.6	0.8	10.0	0.9	2.6	6.1	0.3	0.1
	판매업	(173)	17.2	23.3	54.9	3.5	1.1	5.0	1.0	1.1	2.7	0.2	0.0
	임대업(대여업)	(6)	11.7	25.1	60.8	2.4	0.0	11.2	0.3	2.0	8.5	0.3	0.0
	수입업	(10)	24.1	20.2	49.4	6.3	0.0	7.8	1.6	1.9	3.8	0.5	0.0
	수리업	(2)	75.0	25.0	0.0	0.0	0.0	1.5	1.0	0.5	0.0	0.0	0.0
	기타	(2)	6.7	6.7	76.7	10.0	0.0	78.0	10.0	10.0	43.0	15.0	0.0
계		(500)	31.2	21.7	43.3	2.9	0.9	8.6	2.4	1.9	3.8	0.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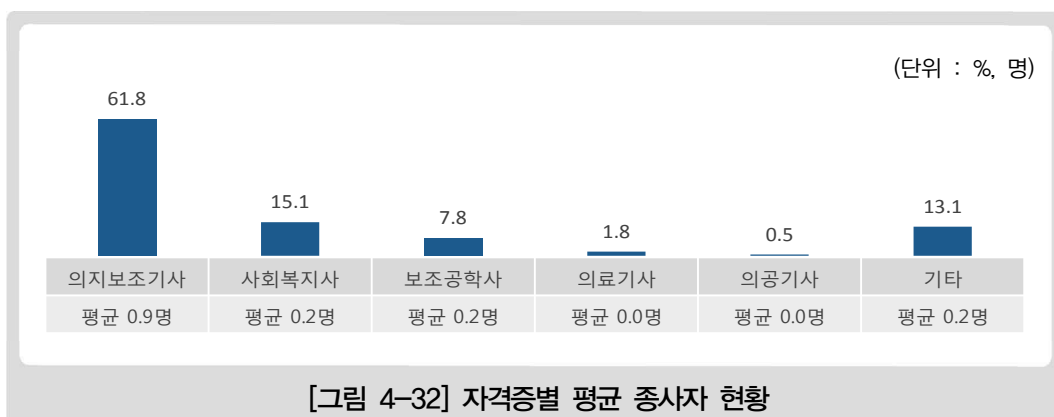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20)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5) 자격증별 평균 종사자 현황

보조기기 사업체 종사자의 자격증 현황은 의지보조기사 자격증이 61.8%(평균 0.9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사(15.1%, 평균 0.2명), 보조공학사(7.8%, 평균 0.2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의지보조기사 자격증 취득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지/보조기에서 94.2%로 가장 높고 업체유형별로는 생산업(제조업)(78.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¹⁾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종사자의 경우는 취업분야별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51.2%), 업체유형별 임대업(대여업)(50.0%)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보조공학사는 취업분야별 장애인보조기기(18.8%), 업체유형별 수입업(30.0%)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자격증별 평균 종사자 현황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평균 종사자 비율						평균 종사자 수						
			의지 보조기사	사회 복지사	보조 공학사	의료 기사	의공 기사	기타	합계	의지 보조기사	사회 복지사	보조 공학사	의료 기사	의공 기사	기타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94.2	1.1	2.2	1.7	0.1	0.8	1.8	1.6	0.0	0.1	0.0	0.0	0.0
	의료기기	(73)	16.8	40.9	12.1	3.0	0.0	27.1	1.2	0.2	0.3	0.1	0.0	0.0	0.7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37.4	51.2	6.5	3.3	1.6	0.0	1.0	0.5	0.4	0.1	0.0	0.0	0.0
	장애인보조기기	(158)	17.7	22.9	18.8	1.1	1.2	38.4	1.7	0.5	0.4	0.3	0.1	0.0	0.4
	기타	(4)	0.0	0.0	0.0	0.0	0.0	100.0	0.5	0.0	0.0	0.0	0.0	0.0	0.5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78.9	8.0	6.7	1.0	0.0	5.4	1.8	1.2	0.2	0.2	0.0	0.0	0.2
	유통업	(24)	24.2	45.5	16.7	4.5	0.0	9.1	1.0	0.5	0.3	0.1	0.0	0.0	0.1
	판매업	(173)	29.7	26.4	8.1	3.3	1.6	30.9	1.1	0.3	0.3	0.1	0.0	0.0	0.4
	임대업(대여업)	(6)	33.3	50.0	16.7	0.0	0.0	0.0	0.7	0.2	0.3	0.2	0.0	0.0	0.0
	수입업	(10)	52.5	17.5	30.0	0.0	0.0	0.0	1.3	0.4	0.4	0.5	0.0	0.0	0.0
	수리업	(2)	100.0	0.0	0.0	0.0	0.0	0.0	0.5	0.5	0.0	0.0	0.0	0.0	0.0
	기타	(2)	29.1	11.6	2.3	4.7	2.3	50.0	22.5	12.5	5.0	1.0	2.0	1.0	1.0
	계	(500)	61.8	15.1	7.8	1.8	0.5	13.1	1.5	0.9	0.2	0.2	0.0	0.0	0.2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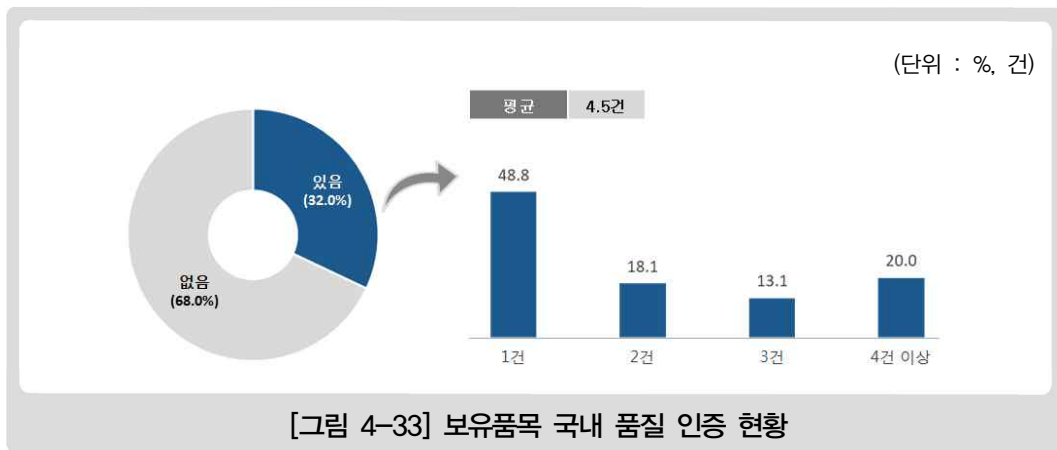
21)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3) 품목현황

(1) 국내 품질 인증 현황

국내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기 사업체는 32.0%로 국내 품질 인증 보유 사업체의 인증 건수를 조사한 결과 1건(48.8%), 4건 이상(20.0%), 2건(18.1%), 3건(13.1%) 순으로 품질 인증 평균 건수는 4.5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품질 인증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조기기 사업체는 취급분야별에서는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47.8%), 업체유형별로는 수입업(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²⁾



〈표 4-37〉 보유품목 국내 품질 인증 현황

(단위 : %, 건)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평균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16.8	83.2	84.8	12.1	3.0	0.0	1.2
	의료기기	(73)	38.4	61.6	32.1	21.4	17.9	28.6	14.2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47.8	52.2	21.2	21.2	24.2	33.3	3.7
	장애인보조기기	(158)	39.9	60.1	50.8	19.0	9.5	20.6	2.5
	기타	(4)	75.0	25.0	66.7	0.0	33.3	0.0	1.7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38.9	61.1	50.9	17.3	10.9	20.9	5.2
	유통업	(24)	37.5	62.5	33.3	44.4	11.1	11.1	2.7
	판매업	(173)	19.7	80.3	50.0	14.7	11.8	23.5	3.3
	임대업(대여업)	(6)	0.0	100.0	—	—	—	—	—
	수입업	(10)	50.0	50.0	40.0	0.0	60.0	0.0	2.2
	수리업	(2)	0.0	100.0	—	—	—	—	—
	기타	(2)	100.0	0.0	0.0	50.0	50.0	0.0	2.5
계		(500)	32.0	68.0	48.8	18.1	13.1	20.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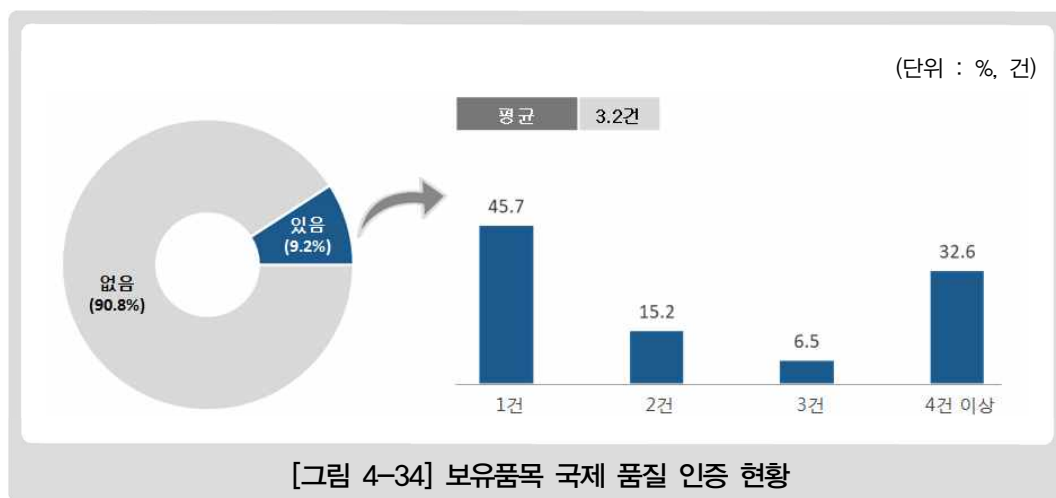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국내 품질 인증 보유 기준

22)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국제 품질 인증 현황

국제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기 사업체는 9.2%, 미보유한 보조기기 사업체가 90.8%로 대다수가 국제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 품질 인증 보유 사업체의 인증 건수를 조사한 결과, 1건(45.7%), 4건 이상(32.6%), 2건(15.2%), 3건(6.5%) 순으로 품질 인증 평균 건수는 3.2건으로 나타났다.

국제 품질 인증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조기기 사업체는 취급분야별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14.5%), 업체유형별 수입업(2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보유품목 국제 품질 인증 현황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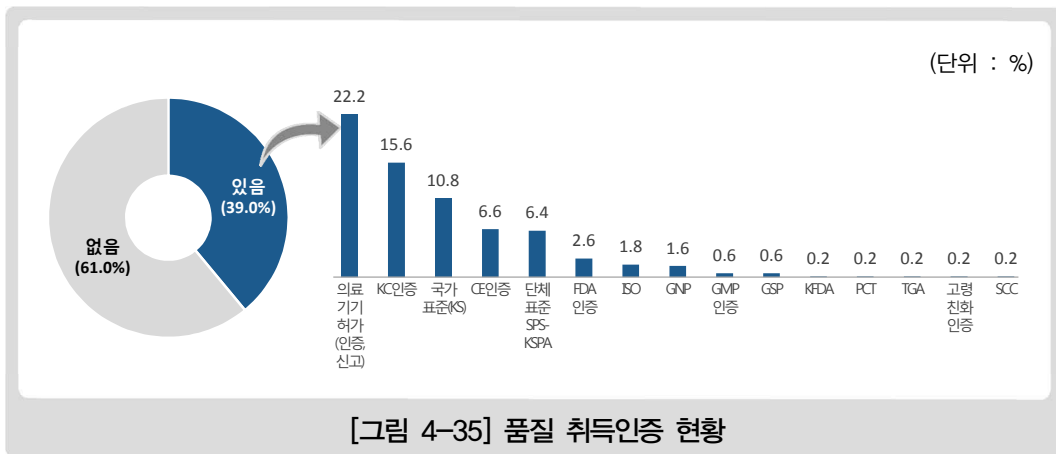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평균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3.6	96.4	57.1	28.6	14.3	0.0	1.6
	의료기기	(73)	12.3	87.7	33.3	11.1	0.0	55.6	4.1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14.5	85.5	60.0	30.0	10.0	0.0	1.5
	장애인보조기기	(158)	12.7	87.3	40.0	5.0	5.0	50.0	4.1
	기타	(4)	0.0	100.0	—	—	—	—	—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9.5	90.5	51.9	25.9	3.7	18.5	2.3
	유통업	(24)	4.2	95.8	100.0	0.0	0.0	0.0	1.0
	판매업	(173)	9.2	90.8	37.5	0.0	6.3	56.3	4.6
	임대업(대여업)	(6)	0.0	100.0	—	—	—	—	—
	수입업	(10)	20.0	80.0	0.0	0.0	50.0	50.0	4.5
	수리업	(2)	0.0	100.0	—	—	—	—	—
	기타	(2)	0.0	100.0	—	—	—	—	—
계		(500)	9.2	90.8	45.7	15.2	6.5	32.6	3.2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국제 품질 인증 보유 기준

(3) 품질 취득인증 현황

보조기기 사업체 중 품질 취득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39.0%로 품질 취득인증 종류를 살펴보면, 의료기기허가(인증, 신고)(22.2%), KC인증(15.6%), 국가표준(KS)(10.8%), CE인증(6.6%), 단체표준 SPS-KSPA(6.4%)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허가(인증, 신고)의 품질 인증을 보유한 보조기기 사업체는 취급분야별 의료기기(30.1%), 업체유형별 수입업(6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품질 취득인증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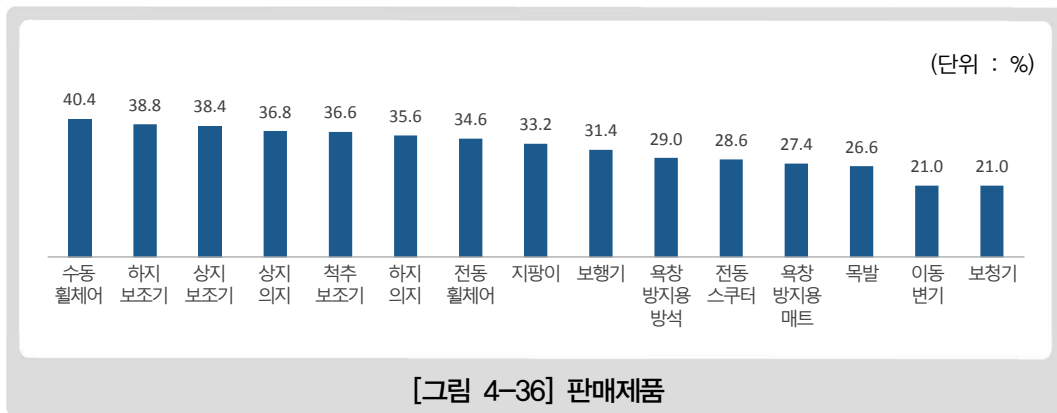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없음	의료기기허가(인증, 신고)	KC인증	국가표준(KS)	CE인증	단체표준 SPS-KSPA	FDA인증	ISO	GNP	GMP인증	GSP	KFDA	PCT	TGA	고령친화인증	SCC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79.6	14.8	1.5	3.1	1.5	0.0	0.0	1.5	0.5	0.0	0.0	0.0	0.0	0.0	0.0
	의료기기	(73)	56.2	30.1	21.9	11.0	8.2	8.2	2.7	2.7	1.4	1.4	0.0	1.4	0.0	0.0	0.0
	복지용구 (고령친화용품)	(69)	42.0	26.1	31.9	23.2	14.5	21.7	5.8	2.9	4.3	1.4	1.4	0.0	0.0	1.4	1.4
	장애인보조기기	(158)	49.4	25.9	22.8	14.6	8.9	7.0	4.4	1.3	1.9	0.6	1.3	0.0	0.6	0.0	0.6
	기타	(4)	25.0	25.0	25.0	2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56.9	21.9	18.0	11.3	6.0	6.4	1.1	2.5	2.5	0.7	0.7	0.4	0.4	0.4	0.0
	유통업	(24)	62.5	16.7	20.8	16.7	4.2	8.3	0.0	0.0	0.0	0.0	0.0	0.0	0.0	0.0	0.0
	판매업	(173)	69.4	21.4	11.0	8.7	8.1	6.4	5.2	1.2	0.6	0.6	0.6	0.0	0.0	0.0	0.6
	임대업(대여업)	(6)	66.7	33.3	0.0	1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입업	(10)	30.0	60.0	10.0	10.0	10.0	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리업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2)	0.0	0.0	10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500)	61.0	22.2	15.6	10.8	6.6	6.4	2.6	1.8	1.6	0.6	0.6	0.2	0.2	0.2	0.2	0.2

* 주) 사업체 전체 기준(중복응답)

(4) 판매제품²³⁾

보조기기 사업체 중 판매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동휠체어(40.4%), 하지보조기(38.8%), 상지보조기(38.4%), 상지의지(36.8%), 척추보조기(3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동휠체어 및 의지보조기의 판매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수동휠체어는 취득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가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체유형별로 임대업(100.0%), 수입업(60.0%)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판매제품

(단위 : %)

구분	사태수	수동 휠체어	하지 보조기	상지 보조기	상지 의지	척추 보조기	하지 의지	전동 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욕창 방지용 방석	전동 스쿠터	욕창 방지용 매트	목발	이동 변기	보청기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40.3	91.3	90.3	87.8	84.7	85.2	38.3	32.7	26.0	28.1	30.6	25.5	29.6	10.7
	의료기기	(73)	50.7	8.2	6.8	6.8	9.6	6.8	41.1	41.1	41.1	37.0	38.4	37.0	39.7	28.8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53.6	2.9	2.9	2.9	5.8	1.4	36.2	53.6	52.2	43.5	29.0	42.0	31.9	7.2
	정맥인보조기기	(158)	31.0	4.4	5.1	3.2	3.8	3.2	27.2	22.2	25.3	20.9	22.2	19.6	15.2	36.7
	기타	(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31.4	55.1	55.1	53.4	52.7	51.6	27.9	26.9	24.0	24.4	21.6	23.0	20.8	9.9
	유통업	(24)	50.0	16.7	16.7	16.7	20.8	16.7	41.7	50.0	54.2	37.5	37.5	37.5	41.7	25.0
	판매업	(173)	50.9	18.5	17.3	16.2	16.2	16.2	43.4	41.6	40.5	34.7	39.3	33.5	34.7	40.5
	임대업(대여업)	(6)	100.0	0.0	0.0	0.0	0.0	0.0	66.7	33.3	16.7	33.3	16.7	33.3	33.3	0.0
	수입업	(10)	60.0	10.0	10.0	0.0	0.0	0.0	40.0	30.0	40.0	40.0	30.0	20.0	10.0	10.0
	수리업	(2)	50.0	50.0	50.0	50.0	50.0	0.0	50.0	50.0	50.0	50.0	50.0	50.0	0.0	0.0
	기타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500)	40.4	38.8	38.4	36.8	36.6	35.6	34.6	33.2	31.4	29.0	28.6	27.4	26.6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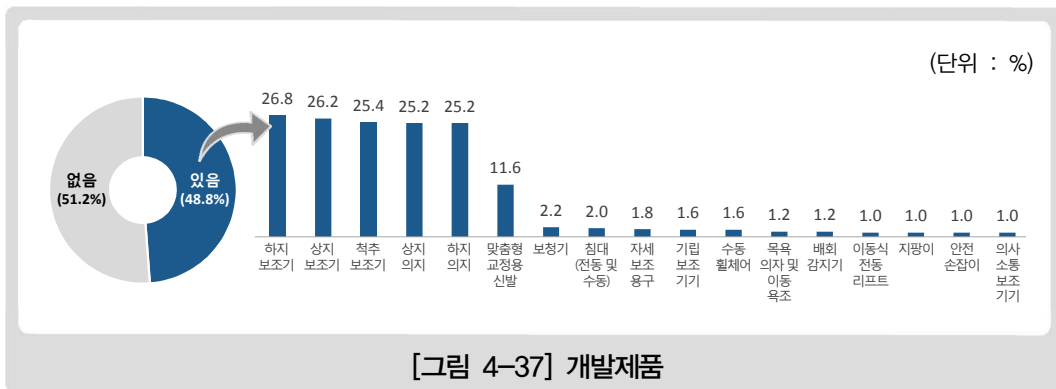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중복응답)

23) 판매제품에 대한 그래프 및 표는 상위 15개 항목의 값을 제시하였음

(5) 개발제품²⁴⁾

보조기기 개발제품으로는 하지보조기(26.8%), 상지보조기(26.2%), 척추보조기(25.4%), 상지의지와 하지의지(각각 2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기기 사업체의 개발제품이 대부분 의지보조기 분야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하지보조기는 취급분야별 의지/보조기(66.3%), 업체유형별 생산업(제조업)(42.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개발제품

(단위 : %)

구분		사례수	없음	하지 보조기	상지 보조기	척추 보조기	상지 의지	하지 의지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침대 (전동 및 수동)	자세 보조 용구	기립 보조 기기	수동 휠체어	목욕 의자 및 이동 욕조	배회 감지기	이동식 전동 리프트	자팡이	안전 손잡이	의사 소통 보조 기기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26.0	66.3	64.3	62.2	62.2	62.2	29.6	0.0	0.0	0.0	0.5	0.0	0.0	0.0	0.0	0.0	0.0	0.0
	의료기기	(73)	71.2	1.4	1.4	1.4	1.4	1.4	0.0	4.1	5.5	0.0	2.7	4.1	1.4	1.4	1.4	2.7	0.0	0.0
	복사용구(고령 친화용품)	(69)	55.1	0.0	1.4	1.4	0.0	0.0	0.0	0.0	8.7	4.3	1.4	2.9	5.8	2.9	1.4	2.9	7.2	1.4
	장애인 보조기기	(158)	71.5	1.9	1.9	1.9	1.9	1.9	0.0	5.1	0.0	3.8	2.5	1.9	0.6	1.9	1.3	0.6	0.0	2.5
	기타	(4)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0.0	0.0	0.0
주 업체유형	생산업 (제조업)	(283)	24.7	42.8	42.0	40.6	40.3	39.9	17.3	3.2	3.2	2.8	2.1	2.5	2.1	1.8	1.8	1.4	1.8	1.4
	유통업	(24)	83.3	4.2	4.2	4.2	4.2	4.2	0.0	0.0	0.0	0.0	0.0	0.0	0.0	4.2	0.0	0.0	0.0	0.0
	판매업	(173)	87.9	6.9	6.4	6.4	6.4	6.9	4.6	1.2	0.0	0.0	0.6	0.0	0.0	0.0	0.0	0.6	0.0	0.6
	임대업 (대여업)	(6)	83.3	0.0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입업	(10)	8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10.0	10.0	0.0	0.0	0.0	0.0	0.0	0.0
	수리업	(2)	5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500)	51.2	26.8	26.2	25.4	25.2	25.2	11.6	2.2	2.0	1.8	1.6	1.6	1.2	1.2	1.0	1.0	1.0	1.0

* 주) 사업체 전체 기준(중복응답)

24) 개발제품에 대한 그래프 및 표는 상위 15개 항목의 값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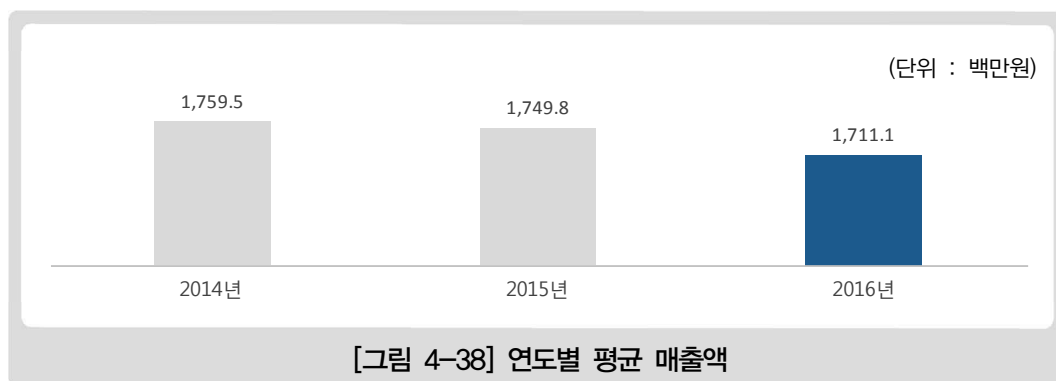
4) 운영현황

(1) 연도별 평균 매출액

보조기기 사업체의 2016년 평균 매출액은 1,711.1백만원으로 취급분야별 의료기기(3,712.0백만원), 업체유형별 유통업(3,862.3백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⁵⁾

그러나 2015년과 평균 매출액을 비교할 때 2.2% 감소하였으며 2015년 평균 매출액 역시 2014년 평균 매출액과 비교할 때 0.5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기기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오히려 이전보다 점점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42〉 연도별 평균 매출액²⁶⁾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례수	평균 매출액	사례수	평균 매출액	사례수	평균 매출액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89)	586.2	(191)	633.8	(194)	662.8
	의료기기	(65)	3,786.4	(66)	3,755.0	(72)	3,712.0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3)	3,011.3	(67)	3,030.8	(69)	2,858.0
	장애인보조기기	(124)	1,779.6	(134)	1,639.3	(153)	1,516.5
	기타	(4)	3,914.8	(4)	4,198.3	(4)	4,196.3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69)	2,126.6	(274)	2,148.7	(281)	2,142.7
	유통업	(23)	3,294.2	(23)	3,654.0	(24)	3,862.3
	판매업	(135)	698.9	(146)	676.8	(167)	657.7
	임대업(대여업)	(4)	575.0	(5)	728.3	(6)	388.0
	수입업	(10)	1,830.5	(10)	1,986.4	(10)	2,018.3
	수리업	(2)	112.5	(2)	112.5	(2)	122.5
	기타	(2)	9,977.0	(2)	6,537.5	(2)	7,219.0
	계	(445)	1,759.5	(462)	1,749.8	(492)	1,711.1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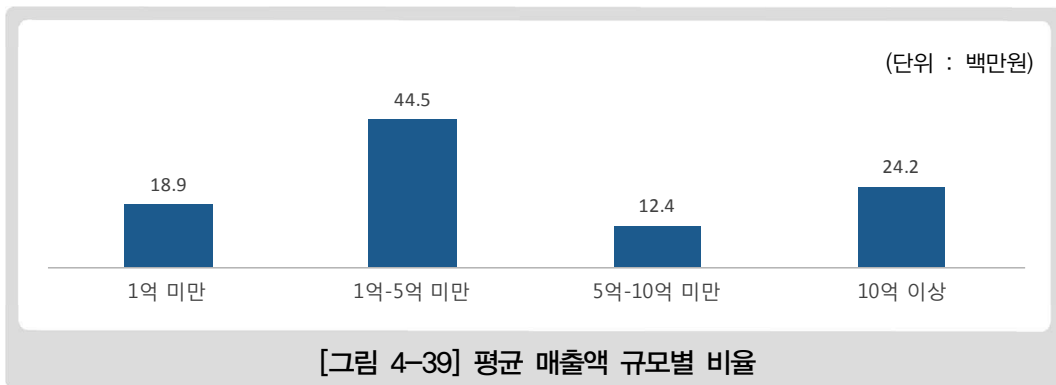
25)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6) 2015~2017년 사이에 신규로 설립된 보조기기 사업체로 인해 연도별 평균 매출액의 사례수 차이가 발생함

(2) 평균 매출액 규모별 비율

보조기기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평균 매출액 1~5억 미만의 보조기기 사업체가 4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억 이상(24.2%), 1억 미만(18.9%), 5억~10억 미만(12.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액 1억~5억 미만의 보조기기 사업체는 취급분야별 의지/보조기(50.0%), 업체유형별 판매업(5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평균 매출액 규모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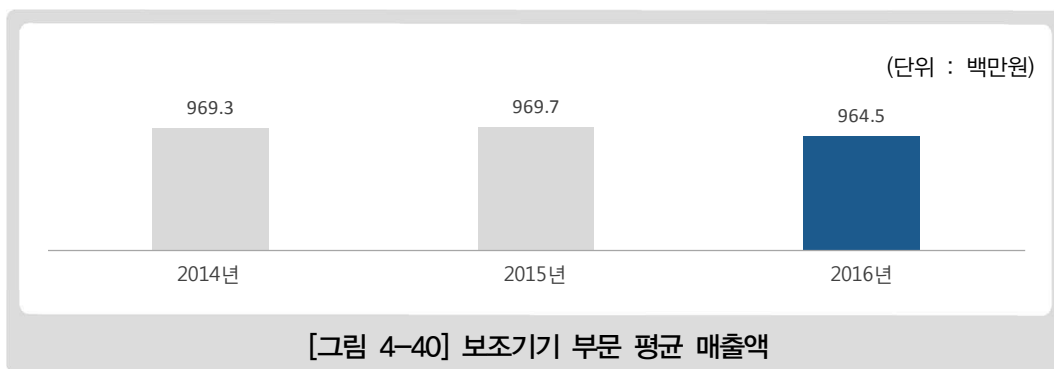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1억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 이상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4)	29.9	50.0	10.8	9.3
	의료기기	(72)	6.9	38.9	15.3	38.9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11.6	33.3	13.0	42.0
	장애인보조기기	(153)	14.4	45.1	12.4	28.1
	기타	(4)	0.0	50.0	25.0	25.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1)	19.6	40.9	13.9	25.6
	유통업	(24)	4.2	29.2	8.3	58.3
	판매업	(167)	20.4	55.7	9.6	14.4
	임대업(대여업)	(6)	33.3	16.7	33.3	16.7
	수입업	(10)	0.0	10.0	20.0	70.0
	수리업	(2)	50.0	50.0	0.0	0.0
	기타	(2)	0.0	50.0	0.0	50.0
계		(492)	18.9	44.5	12.4	24.2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3) 보조기기 부문 평균 매출액

보조기기 사업체의 보조기기 평균 매출액은 964.5백만원으로 2016년 보조기기 부문 평균 매출액을 취급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기 부문이 3,017.7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업체유형별로는 수입업(1,310.3백만원)과 생산업(제조업)(1,271.4백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⁷⁾ 한편 보조기기 2015년과 보조기기 부문 평균 매출액을 비교할 때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보조기기 부문 평균 매출액²⁸⁾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례수	평균 매출액	사례수	평균 매출액	사례수	평균 매출액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89)	281.4	(191)	290.9	(194)	289.2
	의료기기	(65)	2,933.3	(66)	2,999.3	(72)	3,017.7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3)	877.3	(67)	861.6	(69)	812.6
	장애인보조기기	(124)	947.9	(134)	900.8	(153)	842.2
	기타	(4)	3,667.8	(4)	4,017.8	(4)	4,061.3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69)	1,200.1	(274)	1,229.8	(281)	1,271.1
	유통업	(23)	1,123.5	(23)	1,053.8	(24)	920.2
	판매업	(135)	479.9	(146)	469.5	(167)	461.6
	임대업(대여업)	(4)	487.5	(5)	597.0	(6)	338.0
	수입업	(10)	1,189.7	(10)	1,252.8	(10)	1,310.3
	수리업	(2)	32.5	(2)	32.5	(2)	34.5
	기타	(2)	1,983.0	(2)	1,350.5	(2)	1,503.0
계		(445)	969.3	(462)	969.7	(492)	964.5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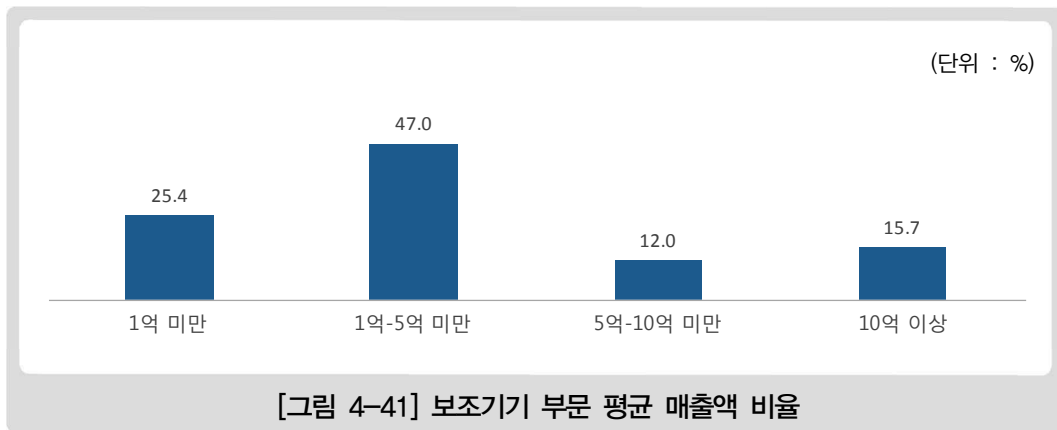
27)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8) 2015년~2017년 사이에 신규로 설립된 보조기기 사업체로 인해 연도별 평균 매출액 사례수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4) 보조기기 부문 평균 매출액 규모별 비율

보조기기 사업체의 보조기기 부문 평균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평균 매출액 1억~5억 미만이 보조기기 사업체가 4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1억 미만(25.4%), 10억 이상(15.7%), 5억~10억 미만(12.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액 1억~5억 미만의 보조기기 사업체는 취급분야별 의지/보조기(50.5%), 업체유형별 판매업(5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⁹⁾



〈표 4-45〉 보조기기 부문 평균 매출액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1억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 이상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4)	35.1	50.5	8.2	6.2
	의료기기	(72)	11.1	44.4	16.7	27.8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21.7	42.0	17.4	18.8
	장애인보조기기	(153)	22.2	45.1	12.4	20.3
	기타	(4)	0.0	75.0	0.0	25.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1)	26.7	44.8	13.5	14.9
	유통업	(24)	12.5	33.3	12.5	41.7
	판매업	(167)	25.1	55.7	8.4	10.8
	임대업(대여업)	(6)	33.3	33.3	16.7	16.7
	수입업	(10)	10.0	10.0	30.0	50.0
	수리업	(2)	100.0	0.0	0.0	0.0
	기타	(2)	0.0	50.0	0.0	50.0
계		(492)	25.4	47.0	12.0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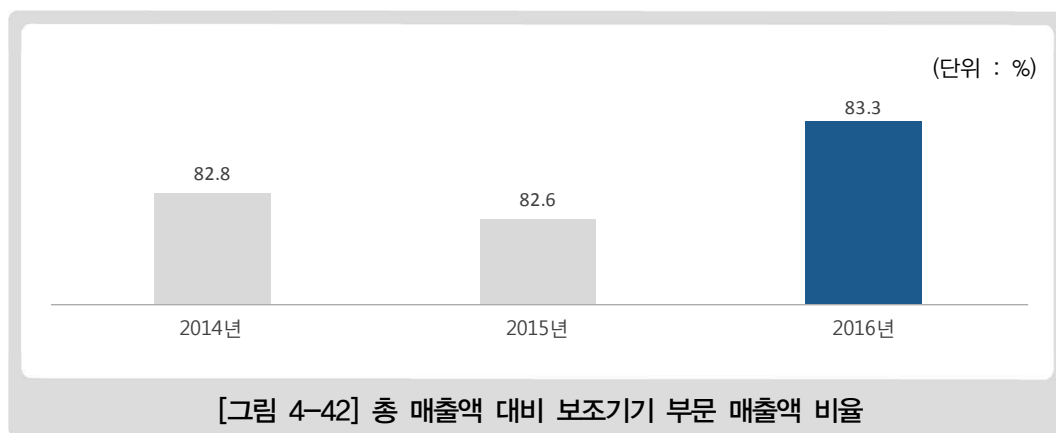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29)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5) 총 매출액 대비 보조기기 부문 매출액 비율

보조기기 사업체 중 총 매출액 대비 보조기기 부문 매출액 비율은 2016년 83.3%로 나타났고 2014년(82.8%), 2015년(82.6%)에 비해 전체 매출액 대비 보조기기 매출액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보조기기부문에 대한 규모는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전체 매출액 대비 보조기기 매출액 비율은 취급분야별로 의지/보조기(90.6%), 업체유형별에서는 임대업(91.7%)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총 매출액 대비 보조기기 부문 매출액 비율³⁰⁾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89)	90.6	(191)	90.5	(194)	90.6
	의료기기	(65)	79.9	(66)	80.4	(72)	80.7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3)	64.9	(67)	65.1	(69)	67.1
	장애인보조기기	(124)	82.1	(134)	81.5	(153)	83.1
	기타	(4)	67.5	(4)	75.7	(4)	71.8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69)	81.9	(274)	81.3	(281)	81.6
	유통업	(23)	76.5	(23)	73.5	(24)	74.5
	판매업	(135)	87.6	(146)	88.3	(167)	88.9
	임대업(대여업)	(4)	87.5	(5)	85.4	(6)	91.7
	수입업	(10)	71.7	(10)	71.7	(10)	71.5
	수리업	(2)	60.0	(2)	60.0	(2)	60.0
	기타	(2)	24.8	(2)	27.5	(2)	33.5
계		(445)	82.8	(462)	82.6	(492)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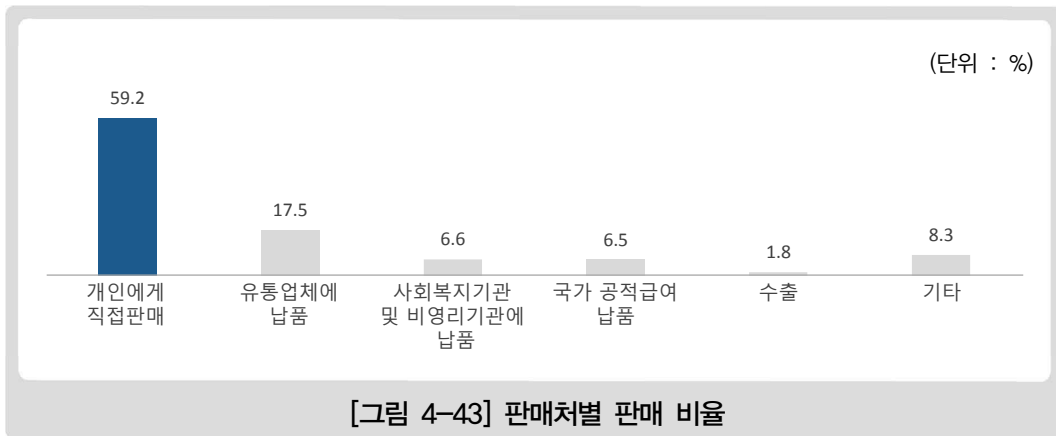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30) 2015년~2017년 사이에 신규로 설립된 보조기기 사업체로 인해 연도별 평균 매출액 사례수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6) 판매처별 판매 비율

보조기기 사업체의 판매처별 판매 비율로 개인에게 직접판매가 5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통업체에 납품(17.5%),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기관에 납품(6.6%), 국가 공적급여 납품(6.5%), 수출(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기기 사업체의 판매 비율이 직접 판매 및 유통업체 납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관 및 국가 공적급여 납품 등은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에게 직접 판매한다고 응답한 보조기기 사업체는 취급분야별 의지/보조기(76.8%), 업체유형별로 임대업(대여업)(8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¹⁾



〈표 4-47〉 판매처별 판매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개인에게 직접판매	유통업체에 납품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기관 납품	국가 공적급여 납품	수출	기타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76.8	5.1	2.2	1.0	0.5	14.5
	의료기기	(73)	46.7	30.6	7.6	4.4	4.8	5.9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38.7	37.2	9.8	8.0	3.0	3.3
	장애인보조기기	(158)	52.5	18.6	10.5	12.9	1.7	3.7
	기타	(4)	35.0	13.8	6.0	40.0	0.0	5.3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55.0	19.3	6.3	6.2	2.9	10.3
	유통업	(24)	23.7	51.0	11.9	12.5	0.1	0.8
	판매업	(173)	73.5	8.7	5.9	6.0	0.4	5.6
	임대업(대여업)	(6)	80.0	0.0	20.0	0.0	0.0	0.0
	수입업	(10)	21.5	49.0	11.0	9.5	0.0	9.0
	수리업	(2)	95.0	0.0	0.0	0.0	0.0	5.0
	기타	(2)	2.5	2.5	5.0	30.0	0.0	60.0
계		(500)	59.2	17.5	6.6	6.5	1.8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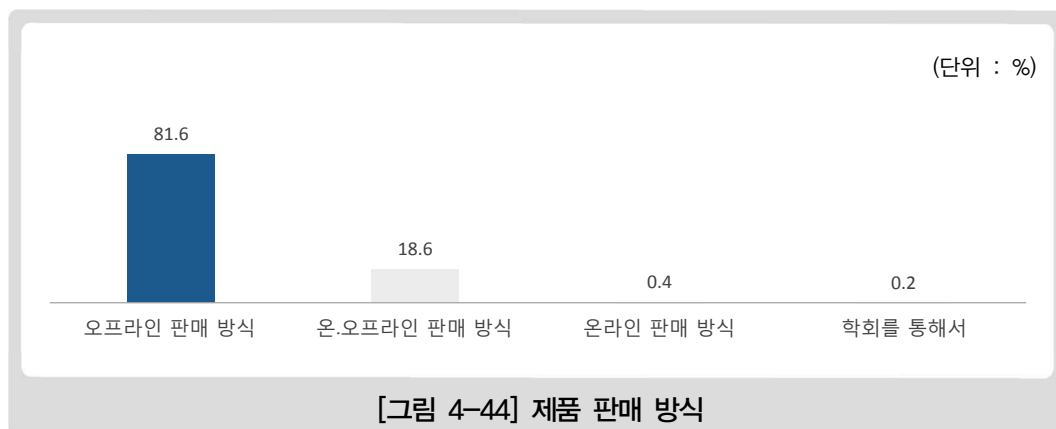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31)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7) 제품 판매 방식

보조기기 사업체의 제품 판매 방식은 오프라인 판매 방식이 8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온·오프라인 판매 방식(18.6%), 온라인 판매 방식(0.4%), 학회를 통해서(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기기 사업체의 제품 판매 방식이 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프라인 판매 방식이라는 응답한 보조기기 사업체가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으며, 취급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지/보조기가 98.5%로 높게 나타났고, 업체유형별에서 임대업(대여업)(100.0%), 생산업(86.6%)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²⁾



〈표 4-48〉 제품 판매 방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오프라인 판매 방식	온.오프라인 판매 방식	온라인 판매방식	학회를 통해서	10억 이상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98.5	1.5	0.5	0.0	6.2
	의료기기	(73)	64.4	35.6	0.0	1.4	27.8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71.0	29.0	0.0	0.0	18.8
	장애인보조기기	(158)	73.4	27.2	0.6	0.0	20.3
	기타	(4)	75.0	25.0	0.0	0.0	25.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86.6	13.8	0.0	0.4	14.9
	유통업	(24)	62.5	37.5	4.2	0.0	41.7
	판매업	(173)	79.2	20.8	0.6	0.0	10.8
	임대업(대여업)	(6)	100.0	0.0	0.0	0.0	16.7
	수입업	(10)	30.0	70.0	0.0	0.0	50.0
	수리업	(2)	100.0	0.0	0.0	0.0	0.0
	기타	(2)	0.0	100.0	0.0	0.0	50.0
계		(500)	81.6	18.6	0.4	0.2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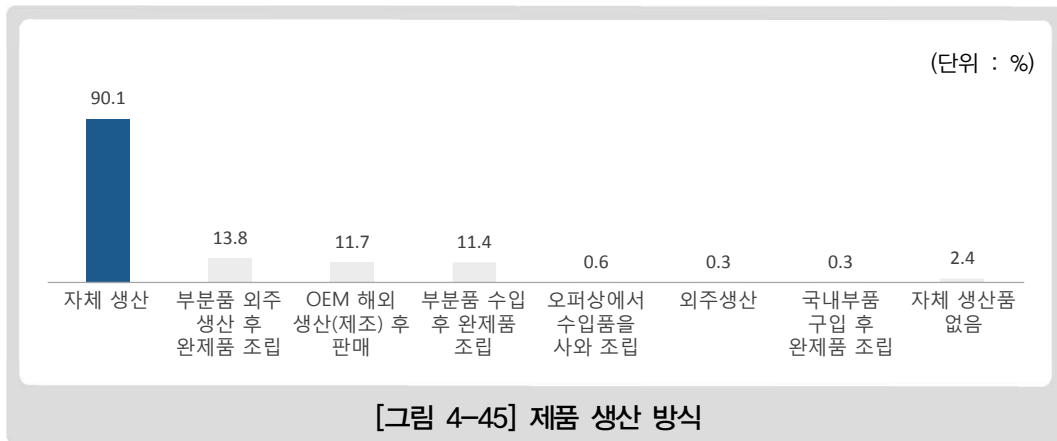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32)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8) 제품 생산 방식

보조기기 사업체의 제품 생산 방식은 자체 생산한다는 응답이 9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분품 외주 생산 후 완제품 조립(13.8%), OEM 해외 생산(제조) 후 판매(11.7%), 부분품 수입 후 완제품 조립(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기기 사업체의 제품 생산 방식이 자체 생산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체 생산으로 응답한 보조기기 사업체가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취급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지/보조기가 97.4%로 높게 나타났고, 업체유형별로는 유통업(100.0%), 생산업(제조업)(9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³⁾



[그림 4-45] 제품 생산 방식

〈표 4-49〉 제품 생산 방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자체생산	부분품 외주생산후 완제품 조립	OEM 해외생산 (제조) 후 판매	부분품 수입후 완제품 조립	오퍼상에서 수입품을 사와 조립	외주생산	국내부품 구입후 완제품 조립	자체 생산품 없음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89)	97.4	7.4	10.6	8.5	1.1	0.0	1.6
	의료기기	(35)	82.9	14.3	14.3	25.7	0.0	0.0	5.7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41)	73.2	26.8	12.2	17.1	0.0	2.4	2.4
	장애인보조기기	(66)	83.3	21.2	13.6	9.1	0.0	0.0	3.0
	기타	(3)	100.0	66.7	0.0	0.0	0.0	0.0	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91.5	13.1	10.2	11.0	0.0	0.4	2.1
	유통업	(7)	100.0	28.6	42.9	28.6	0.0	0.0	0.0
	판매업	(38)	78.9	15.8	18.4	10.5	5.3	0.0	2.6
	임대업(대여업)	(1)	0.0	0.0	0.0	0.0	0.0	0.0	100.0
	수입업	(3)	100.0	33.3	0.0	0.0	0.0	0.0	0.0
	수리업	(2)	100.0	0.0	0.0	50.0	0.0	0.0	0.0
	기타	(191)	89.5	9.9	9.4	9.4	1.0	0.5	3.7
계	(334)	90.1	13.8	11.7	11.4	0.6	0.3	0.3	2.4

* 주) 제품 생산 사업체 전체 기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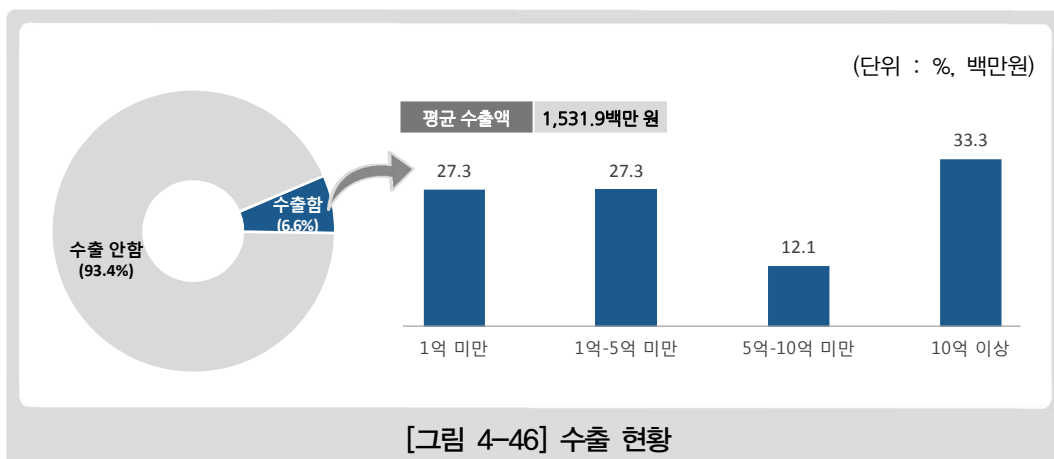
33)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9) 수출 현황

보조기기 사업체 중 해외 수출 비율이 6.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수출액은 1,531.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 이상이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억 미만과 1억-5억 미만(각각27.3%), 5억-10억 미만(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기기 사업체 대부분이 해외 수출 비율이 미약하며 10억 이상의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수출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수출액 규모가 10억 이상으로 응답한 보조기기 사업체는 취급분야별 장애인보조기기(36.4%), 업체유형별 생산업(제조업)(37.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수출 현황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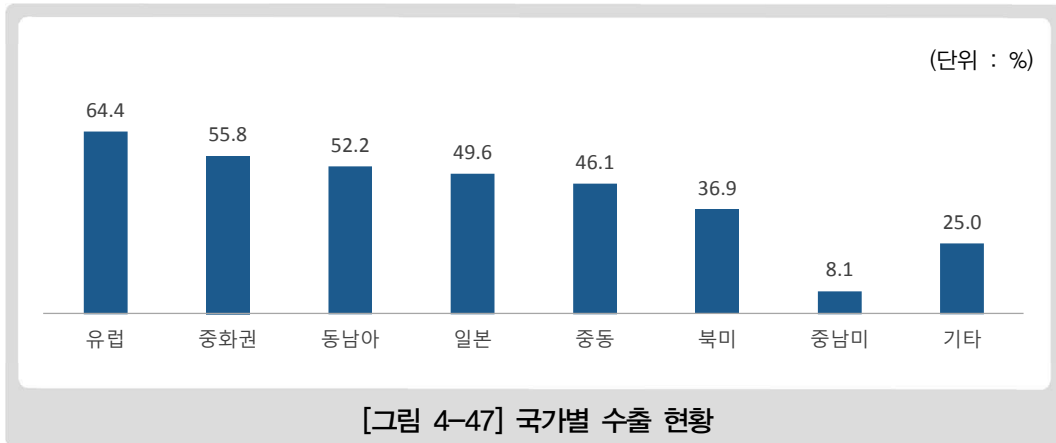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수출함	수출안함	수출함					평균(백만 원)
				1억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 이상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96)	2.6	97.4	20.0	60.0	0.0	20.0	385.4
	의료기기	(73)	12.3	87.7	22.2	11.1	22.2	44.4	1,216.7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11.6	88.4	25.0	37.5	12.5	25.0	2,031.9
	장애인보조기기	(158)	7.0	93.0	36.4	18.2	9.1	36.4	1,947.3
	기타	(4)	0.0	100.0	-	-	-	-	-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10.2	89.8	20.7	27.6	13.8	37.9	1,733.2
	유통업	(24)	4.2	95.8	100.0	0.0	0.0	0.0	70.0
	판매업	(173)	1.2	98.8	100.0	0.0	0.0	0.0	40.0
	임대업(대여업)	(6)	0.0	100.0	-	-	-	-	-
	수입업	(10)	0.0	100.0	-	-	-	-	-
	수리업	(2)	0.0	100.0	-	-	-	-	-
	기타	(2)	50.0	50.0	0.0	100.0	0.0	0.0	140.0
계		(500)	6.6	93.4	27.3	27.3	12.1	33.3	1,531.9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2016년 수출 있음 기준

(10) 국가별 수출 현황

국가별 보조기기를 수출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럽이 6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화권(55.8%), 동남아(52.2%), 일본(49.6%), 중동(46.1%)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조기기 사업체는 취급분야별 의지/보조기(85.0%), 업체유형별 생산업(제조업)(64.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⁴⁾



〈표 4-51〉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

구분		사례수	유럽	중화권	동남아	일본	중동	북미	중남미	기타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5)	85.0	53.3	10.0	10.0	100.0	50.0	0.0	0.0
	의료기기	(9)	27.1	52.7	82.5	79.4	2.3	32.1	13.4	10.0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8)	65.0	62.8	6.0	72.5	8.0	14.0	10.0	0.0
	장애인보조기기	(11)	72.5	50.5	20.5	26.0	60.0	50.0	1.0	4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9)	64.4	49.2	52.2	55.3	46.1	30.7	8.1	25.0
	유통업	(1)	0.0	0.0	0.0	20.0	0.0	80.0	0.0	0.0
	판매업	(2)	0.0	100.0	0.0	0.0	0.0	0.0	0.0	0.0
	기타	(1)	0.0	40.0	0.0	10.0	0.0	50.0	0.0	0.0
계		(33)	64.4	55.8	52.2	49.6	46.1	36.9	8.1	25.0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2016년 수출 있음 기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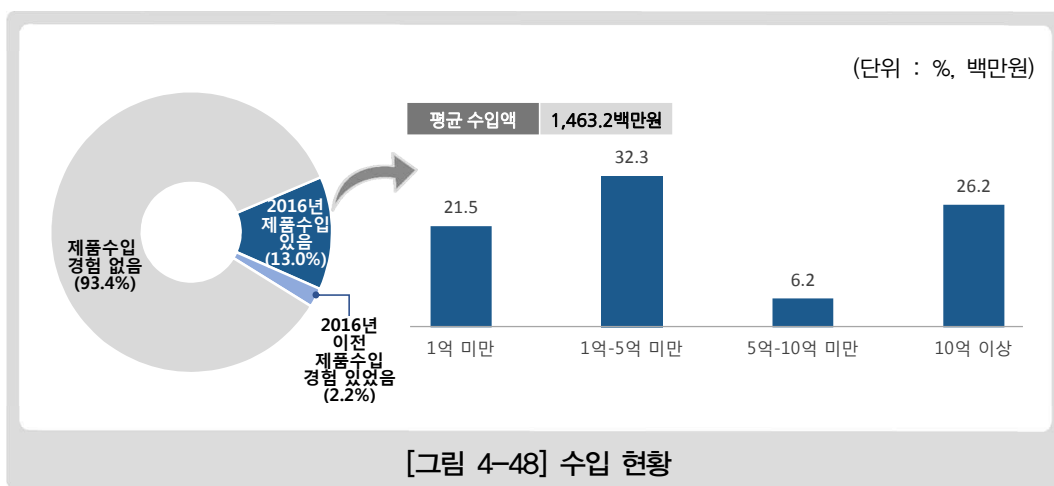
34)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11) 수입 현황

보조기기 사업체 중 해외 수입 비율이 1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수입은 1,463.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입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5억 미만이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0억 이상(26.2%), 1억 미만(21.5%), 5억~10억 미만(6.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입액 규모가 1억~5억 미만으로 응답한 보조기기 사업체는 취급분야별 장애인보조기기(45.8%), 업체유형별 임대업(대여업)(10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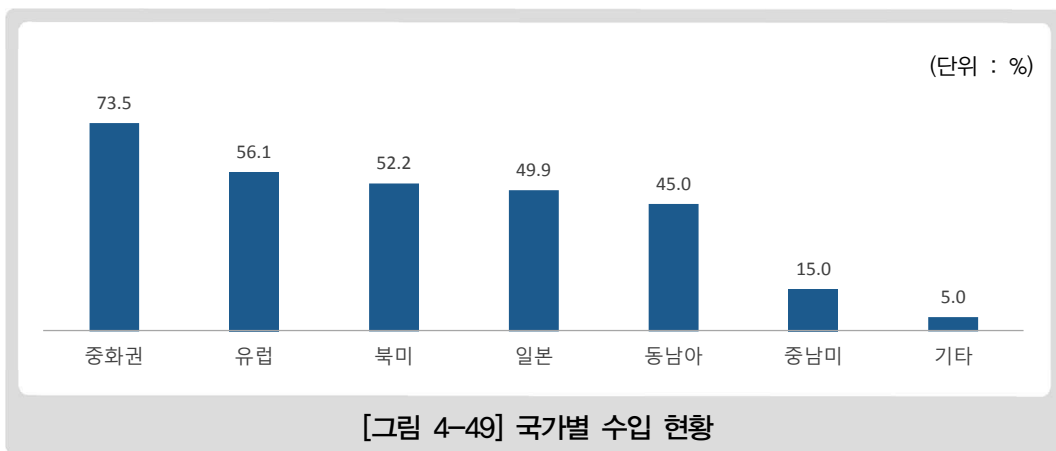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016년 수입 있음	2016년 이전 제품수입 경험 있었음	제품 수입 경험 없음	2016년 수입 있음					
						1억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 이상	거절	평균 (백만원)
주 취급 분야	의지/보조기	(196)	6.1	1.5	92.3	33.3	16.7	0.0	33.3	16.7	4,309.0
	의료기기	(73)	16.4	6.8	76.7	33.3	16.7	25.0	8.3	16.7	540.0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20.3	1.4	78.3	7.1	35.7	0.0	42.9	14.3	1,009.3
	장애인보조기기	(158)	15.2	1.3	83.5	12.5	45.8	4.2	25.0	12.5	999.6
	기타	(4)	75.0	0.0	25.0	66.7	33.3	0.0	0.0	0.0	114.7
주 업체 유형	생산업(제조업)	(283)	9.2	3.2	87.6	34.6	26.9	7.7	23.1	7.7	606.0
	유통업	(24)	41.7	8.3	50.0	0.0	20.0	10.0	40.0	30.0	6,092.9
	판매업	(173)	9.8	0.0	90.2	23.5	41.2	5.9	17.6	11.8	491.3
	임대업(대여업)	(6)	16.7	0.0	83.3	0.0	100.0	0.0	0.0	0.0	300.0
	수입업	(10)	100.0	0.0	0.0	0.0	40.0	0.0	40.0	20.0	2,123.0
	수리업	(2)	0.0	0.0	100.0	-	-	-	-	-	-
	기타	(2)	50.0	0.0	50.0	100.0	0.0	0.0	0.0	0.0	90.0
계		(500)	13.0	2.2	84.8	21.5	32.3	6.2	26.2	13.8	1,463.2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2016년 수입 있음 기준

(12) 국가별 수입 현황

국가별 보조기기를 수입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화권이 73.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럽(56.1%), 북미(52.2%), 일본(49.9%), 동남아(4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중화권에 수입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화권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조기기 사업체는 취급분야별로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82.2%), 의료기기(82.0%)가 높게 나타났고, 업체유형별로 수입업(78.3%), 판매업(7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⁵⁾



〈표 4-53〉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구분		사례수	중화권	유럽	북미	일본	동남아	중남미	기타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2)	53.6	44.2	46.4	43.3	25.0	15.0	0.0
	의료기기	(12)	82.0	64.0	80.0	55.0	60.0	0.0	0.0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14)	82.2	72.5	30.0	76.7	80.0	0.0	0.0
	장애인보조기기	(24)	72.7	53.3	49.1	29.7	40.0	0.0	5.0
	기타	(3)	100.0	0.0	100.0	100.0	0.0	0.0	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6)	72.5	45.5	68.2	57.0	38.8	20.0	0.0
	유통업	(10)	60.0	44.0	32.0	37.5	53.3	10.0	0.0
	판매업	(17)	77.1	85.0	53.8	43.3	0.0	0.0	5.0
	임대업(대여업)	(1)	0.0	0.0	0.0	100.0	0.0	0.0	0.0
	수입업	(10)	78.3	50.0	38.0	46.7	0.0	0.0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계		(65)	73.5	56.1	52.2	49.9	45.0	15.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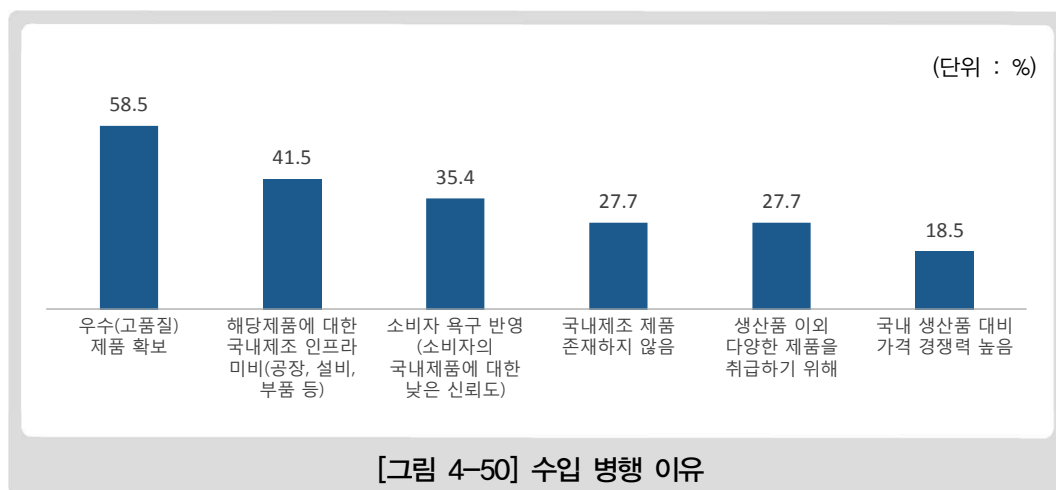
* 주) 사업체 전체기준, 2016년 수입 없음 기준(중복응답)

35)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13) 수입 병행 이유

보조기기 사업체 중 수입을 병행하고 있는 이유로 우수(고품질) 제품 확보라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해당제품에 대한 국내제조 인프라 미비(공장, 설비, 부품 등)(41.5%), 소비자 욕구 반영(소비자의 국내제품에 대한 낮은 신뢰도)(35.4%)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고품질) 제품 확보라는 응답한 보조기기 사업체는 취급분야별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78.6%), 업체유형별 수입업(9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⁶⁾



〈표 4-54〉 수입 병행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우수(고품질) 제품 확보	해당제품에 대한 국내제조 인프라 미비(공장, 설비, 부품 등)	소비자욕구반영 (소비자의 국내제품에 대한 낮은 신뢰도)	국내제조제품 존재하지 않음	생산품 이외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	국내 생산품 대비 가격 경쟁력 높음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12)	58.3	41.7	33.3	16.7	33.3	8.3
	의료기기	(12)	33.3	25.0	25.0	33.3	16.7	8.3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14)	78.6	64.3	57.1	14.3	42.9	21.4
	장애인보조기기	(24)	62.5	41.7	33.3	29.2	25.0	29.2
	기타	(3)	33.3	0.0	0.0	100.0	0.0	0.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26)	42.3	34.6	26.9	26.9	38.5	19.2
	유통업	(10)	70.0	70.0	30.0	30.0	0.0	20.0
	판매업	(17)	58.8	35.3	41.2	17.6	23.5	17.6
	임대업(대여업)	(1)	100.0	100.0	100.0	0.0	100.0	0.0
	수입업	(10)	90.0	40.0	50.0	40.0	30.0	20.0
	기타	(1)	0.0	0.0	0.0	100.0	0.0	0.0
계		(65)	58.5	41.5	35.4	27.7	27.7	18.5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2016년 수입 있음 기준(중복응답)

36) 응답자 특성 분석 시 유효표본 수 5표본 미만 항목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5) 산업 시장규모³⁷⁾

2016년 보조기기 전체 산업 매출액은 약 5,378억 3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주 취급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기가 2,377억으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보조기기가 1,475억, 의지 보조기가 730억,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가 630억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체유별로 살펴보면, 생산업(제조업)이 3,768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업이 1,156억, 유통업이 256억, 수입업이 140억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5〉 보조기기 산업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보조기기 산업 시장규모(매출액 추정)	비율
주 취급분야	의지/보조기	73,036	13.6
	의료기기	237,784	44.2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3,099	11.7
	장애인보조기기	147,568	27.4
	기타	16,316	3.0
주 업체유형	생산업(제조업)	376,817	70.1
	유통업	25,682	4.8
	판매업	115,659	21.5
	임대업(대여업)	2,549	0.5
	수입업	14,008	2.6
	수리업	82	0.0
	기타	3,006	0.6
계		537,803	100.0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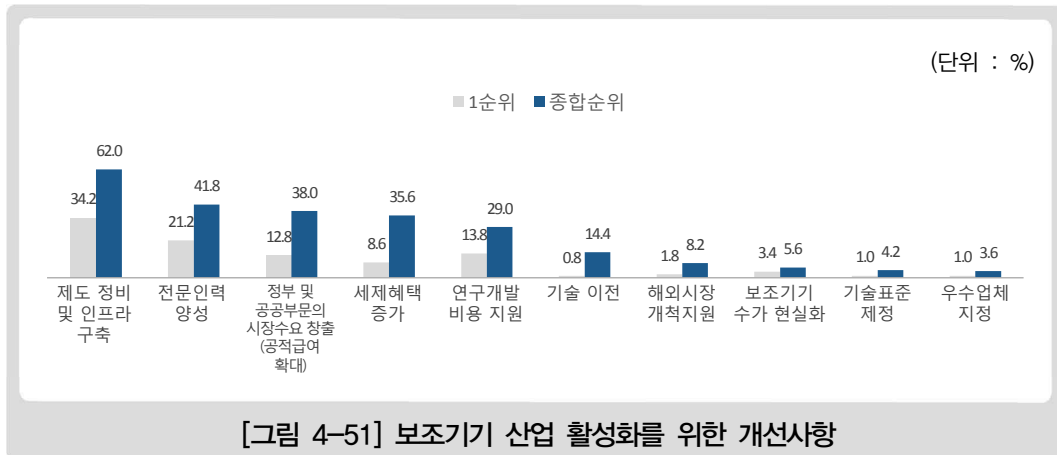
37) 전체 모집단 중 응답한 결과를 기준으로 반영한 규모 추정치임

6) 제도개선

(1)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41.8%), 정부 및 공공부문의 시장수요 창출(공적급여 확대)(3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마련 등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분야별 의지/보조기(67.3%), 업체유형별 유통업(8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6〉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종합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정부 및 공공부문 시장수요 창출(공적 급여확대)	세제혜택 증가	연구개발비 용지원	기술이전	해외시장 개척지원	보조기기 수가 현실화	기술표준 제정	우수업체 지정
주 취 업 분 야	의지/보조기	(196)	67.3	39.8	18.4	34.7	22.4	7.7	6.6	13.8	3.1	4.6
	의료기기	(73)	56.2	34.2	61.6	45.2	45.2	11.0	8.2	0.0	4.1	4.1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69)	63.8	56.5	43.5	40.6	30.4	31.9	8.7	0.0	2.9	4.3
	장애인보조기기	(158)	58.2	42.4	48.1	28.5	27.8	16.5	10.1	0.6	6.3	1.9
	기타	(4)	25.0	0.0	75.0	100.0	75.0	25.0	0.0	0.0	0.0	0.0
주 업 체 유 형	생산업(제조업)	(283)	60.1	42.4	32.9	33.9	32.5	14.5	9.2	8.5	3.5	4.9
	유통업	(24)	87.5	37.5	62.5	37.5	41.7	16.7	12.5	0.0	0.0	0.0
	판매업	(173)	61.8	41.0	41.6	38.2	22.0	11.6	5.8	1.7	4.6	2.3
	임대업(대여업)	(6)	66.7	33.3	66.7	33.3	50.0	16.7	0.0	0.0	0.0	0.0
	수입업	(10)	70.0	50.0	50.0	30.0	10.0	40.0	20.0	0.0	20.0	0.0
	수리업	(2)	0.0	50.0	50.0	50.0	0.0	50.0	0.0	50.0	0.0	0.0
	기타	(2)	50.0	50.0	0.0	50.0	50.0	0.0	0.0	50.0	0.0	0.0
	계	(500)	62.0	41.8	38.0	35.6	29.0	14.4	8.2	5.6	4.2	3.6

* 주) 사업체 전체 기준

(2) 국내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

국내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에 대한 의견으로 낮은 보험 수가라는 응답이 1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수가 비현실성과 수가 항목 규제(16.3%), 복잡한 규제(5.9%), 수입품 선호도 증가 추세(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7〉 국내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

(단위 : 개, %)

내용	사례수	비중
낮은 보험 수가	(42)	17.6
수가 비현실성과 수가 항목 규제	(39)	16.3
복잡한 규제	(14)	5.9
수입품 선호도 증가 추세	(12)	5.0
전문인력 부족	(11)	4.6
유통구조의 단일화 필요	(10)	4.2
보조기기 홍보 부족	(10)	4.2
본인 부담이 낮아야 한다	(9)	3.8
지원정책의 복잡함	(9)	3.8
작은 시장 규모	(9)	3.8
사회적 인식 부족	(9)	3.8
자격증 취득 비합리성과 국가공인자격증 필요	(8)	3.3
무자격자 판매 행위	(7)	2.9
소비자 고객인식 부족	(7)	2.9
국가의 의료기 가격 지원 혜택 부족	(6)	2.5
업종별 판매제품 비규제 및 중복	(6)	2.5
병원의 독점	(6)	2.5
지원 정책의 비현실성	(5)	2.1
정부의 부처별 관리 부족	(5)	2.1
업체의 공정성 부족 및 횡포	(5)	2.1
보조기 판매의 제조업화 문제	(5)	2.1
업체 난립	(5)	2.1
지원대상자 부적격 사례	(4)	1.7
품목 분류의 비정확성	(4)	1.7
개발비 및 투자금 유치 부족	(3)	1.3
재료비가 비싸다	(3)	1.3
정부의 예산 확대 부족	(3)	1.3
행정처리로 인한 인력낭비	(3)	1.3
중증장애인의 지원 부족	(3)	1.3
정보 공유 부족	(3)	1.3
보험 수가 기간 단축 필요	(2)	0.8
맞춤형과 기성제품의 가격차이 없음	(2)	0.8

내용	사례수	비중
인력 관리 부족	(2)	0.8
등급 심사의 까다로움	(2)	0.8
영세업체 지원 부족	(2)	0.8
정부의 직접적인 제품 구매 및 상용화 부족	(2)	0.8
해외업체 및 대기업 독점	(2)	0.8
제품의 실용성 부족	(2)	0.8
대기업의 시장 진입	(2)	0.8
복합한 서류 절차	(2)	0.8
기술력 부족	(2)	0.8
의지보조기협회의 권한 부족	(2)	0.8
신규제품 등록시 과도한 비용 발생	(1)	0.4
기술인력 부족	(1)	0.4
투명하지 못한 공단 고시제	(1)	0.4
국산제품으로 한정된 정부보조 및 지원	(1)	0.4
대기업 참여 제조 부족	(1)	0.4
맞춤형 배송체제의 어려움	(1)	0.4
보조기 다양화 부족	(1)	0.4
품목의 세분화 부족	(1)	0.4
제품 성능 검증 부족	(1)	0.4
수요처 발굴의 어려움	(1)	0.4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1)	0.4
제조 및 공정과정의 까다로움	(1)	0.4
보조기 산업의 비활성화	(1)	0.4
의료기기 법률 복잡성	(1)	0.4
지원대상자 제한이 많음	(1)	0.4
신기술 활용 및 도전정신 부족	(1)	0.4
전문성 부족	(1)	0.4
제품도용 문제	(1)	0.4
온라인/인터넷 덤핑 판매	(1)	0.4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홍보 부족	(1)	0.4
의사들의 인식 부족	(1)	0.4

(3) 국내 보조기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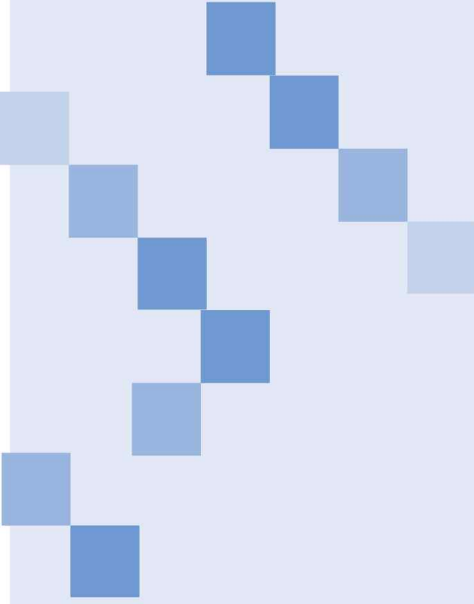
국내 보조기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대한 의견으로 규제가 완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각각 9.4%), 수가표 책정이 필요하다, 의료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각각 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8〉 국내 보조기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단위 : 개, %)

내용	사례수	비중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17)	9.9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16)	9.4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16)	9.4
수가표 책정이 필요하다	(15)	8.8
의료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15)	8.8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13)	7.6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	(8)	4.7
고객/소비자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8)	4.7
국내개발 및 생산기업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7)	4.1
정부의 기계설비 지원이 필요하다	(6)	3.5
중소 영세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6)	3.5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6)	3.5
복지비 자금을 늘려야 한다	(5)	2.9
지원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4)	2.3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4)	2.3
보조기기 산업체 복지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3)	1.8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한다	(3)	1.8
행정 처리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	(3)	1.8
장애인 제도 홍보가 부족하다	(3)	1.8
보조기산업 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2)	1.2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지정업체 선정	(2)	1.2
장애인 복지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	(2)	1.2
정부 및 공공부문의 시장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2)	1.2
현실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하다	(2)	1.2

내용	사례수	비중
보조기기에 대한 의사의 권유 및 협조가 필요하다	(2)	1.2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연수 및 지원이 필요하다	(2)	1.2
외국 회사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	(2)	1.2
국산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2)	1.2
국가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2)	1.2
수입업자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다	(1)	0.6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1)	0.6
전시장이 부족하다	(1)	0.6
전시장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1)	0.6
체험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1)	0.6
제작보수 교육을 지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1)	0.6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1)	0.6
보조공학사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1)	0.6
해외시장 판로 및 개척 지원이 필요하다	(1)	0.6
정부 부처별 소통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1)	0.6
대기업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1)	0.6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	(1)	0.6
연구개발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1)	0.6
자금 대출 지원, 저리 대출이 필요하다	(1)	0.6
무자격자 판매행위의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1)	0.6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	(1)	0.6
보조기 협회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1)	0.6
기업과 병원간의 담합이 없어야 한다	(1)	0.6
보조기 종류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이 필수로 추가되어야 한다	(1)	0.6
의료기기와 의지/보조기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1)	0.6
장애인 지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1)	0.6
수입절차가 까다롭다	(1)	0.6
보조기기 품목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1)	0.6
의료기기상 판매로 매출 실적이 감소한다	(1)	0.6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인한 재고 관리가 어렵다	(1)	0.6
수요처 발굴이 어렵다	(1)	0.6
공급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1)	0.6



시사점

1. 보조기기 이용실태
2. 보조기기 산업실태





1

보조기기 이용실태

보조기기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소지하고 있는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 비율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기 소지 비율은 높으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중증과 경증 장애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의 경우 47.2%가 자신에게 보조기기가 적합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경증장애는 45.7%가 소지 이후 신체적 변화라는 응답이 높아 중증과 경증간의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경증의 경우 신체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한 신체적 변화에 따른 보조기기 사용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몇 년간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공적급여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전히 구입 비용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의 대표적인 공적급여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지급 품목에 대한 지원 기준액에 대한 부분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가격 현실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외에도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몰라서와 구입처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조기기 정보 지원 체계 구축 마련을 통해 정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조기기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제품의 내구성 등 품질에 대한 불만족 이유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보조기기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체계가 마련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대부분 매일 사용하고 있고 하루 평균 1시간~3시간 미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편안하고 안전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많은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이용하면서 전문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이 대부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기는 기술 발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출시되는 행태가 보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제품 선택, 다양한 제품 기능에 대한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용 교육 및 훈련이 효과적인 보조기기 사용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과 평가, 사용교육 및 훈련, 사후관리 이용 경험의 평균 80%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기기 지원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도적 개선사항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중증 및 경증 장애 모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조기기 서비스 전문기관의 인프라 부족, 정보제공 체계 미비 및 지원 확대 등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착과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보조기기 일반현황,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보조기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보조기기 제품개발이 활성화되고 및 제품 상용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조기기 산업현황은 판매업 49.4%, 생산업 63.3%, 유통업 29.2%, 수입업 20%, 임대업 16.7%순으로 나타나 생산보다 판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기 사업체 중 연구개발 운영 여부의 경우 82.4%가 연구개발 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7.6%만이 연구개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 실시 없음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8.2%만이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제품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연구개발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의 지원 수준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 시행의 시급함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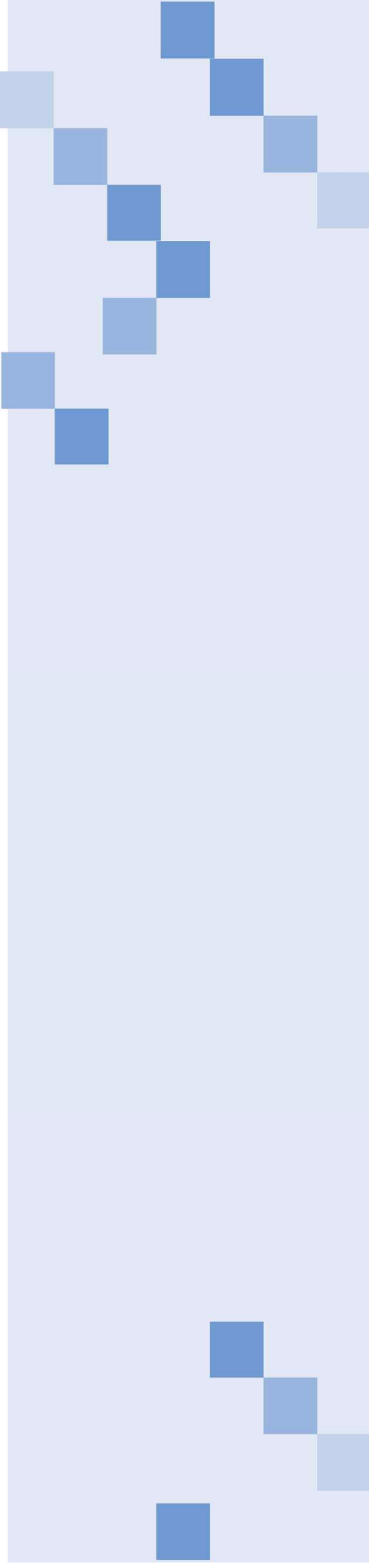
둘째, 보조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육성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보조기기 보조기기산업의 수출입 비용, 비중 및 생산방식을 살펴본 결과, 수입 비중은 수출보다 높고 수출비용은 수입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의 생산 방식이 해외 생산후 판매 및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생산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을 병행하는 이유가 국내 생산 인프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수입, 수출 및 생산 업체 유형 별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및 생산 설비 지원 등의 맞춤형 업체 육성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국내 공적급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 보조기기 산업 규모 결과를 살펴볼 때 산업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장애인보조기기, 의지/보조기, 복지용구만을 추산할 때 약 2,800억원으로 나타났고, 2016년 공적급여 지원 규모가 약 2,800억 수준으로 나타나 공적급여 규모와 산업시장규모가 비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도 정부지원금 개선(공적급여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38%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구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공적급여 확대 검토가 필요하고, 시장경제의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액 현실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절실하다.

최근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보조기기 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기기 업체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인력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정책 시행이 미비한 실정이다.

보조기기 산업 성장으로 인해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품질 강화,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생산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로 이어지는 자본력 강화 등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7 장애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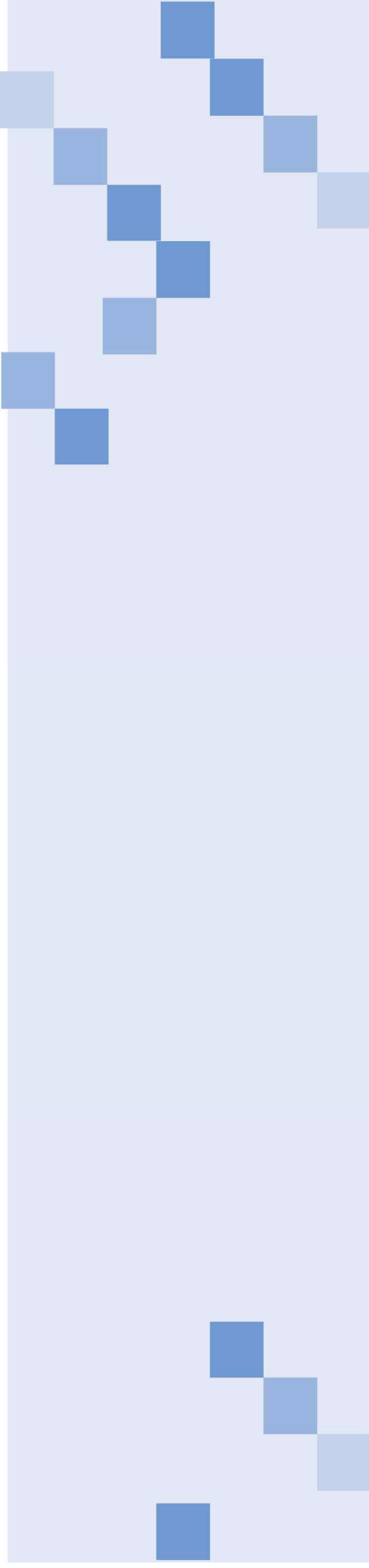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6),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2017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2010a), 보조기구·서비스 기초 실태 및 수요 추계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2010b), 2009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기구
법·제도 개선 제안 연구(Ⅲ)

법제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록

부록 1. 2017년 보조기기 산업실태조사 조사표



2017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ID					
LIST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지원·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노인의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보조기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를 근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기기 관련 산업지원책 마련필요 및 기초실태 연구 부재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기초산업동향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보조기기 산업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내 보조기기 산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동향 파악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며 귀하의 의견은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표에 기입하신 귀하의 내용은 통계분석 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주관기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조사기관: (주)서던포스트(070-7586-0112)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 장애인보조기기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보조기기 실태조사에서 보조기기의 생산·판매·유통·대여·수입·수리 등의 산업동향 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본 조사가 기획 됨

보조기기에 대한 정의

- 장애인등의 신체적 / 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 함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정의)의 2>

응답자 현황

응답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대표번호)	() -	전화번호 (직통번호)	() -
이메일	@		

PART I. 기본정보					
A. 회사명		B. 대표자명			
C. 설립시기		년			
D. 기업형태	설립근거 기준	01) 개인	02) 법인	03) 회사이외의 법인	
	준거법 기준	01) 내국회사	02) 외국회사		
	기 타	01) 중소기업 해당	02) 벤처기업 해당	03) 해당없음	
E. 소재지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도
		09) 강원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
		17) 세종			
F. 업체유형 (복수응답가능)		01) 생산업(제조업)	02) 유통업	03) 판매업	04) 임대업(대여업)
		05) 수입업 ※ 완제품만	06) 수리업	07) 기타 ()	
(F. '업체유형' 복수 응답자 만) F-1. 주 업체유형		() *위 F.업체유형에서 선택하신 보기 중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G. 취급분야 (복수응답가능)		01) 의지·보조기		02) 의료기기	
		03) 복지용구(고령친화용품)		04) 장애인보조기기	
		05) 기타 ()			
(G. '취급분야' 복수 응답자 만) G. 주 취급분야		() *위 G..취급분야에서 선택하신 보기 중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H. 연구개발(R&D) 부서 유무		01) 예	02) 아니오		
I. 연구개발(R&D) 유무 (최근 3년 기준)		01) 예	02) 아니오		
J. 기업인증취득현황 (복수응답)		01) 벤처기업인증		02) 이노비즈 인증	
		03) 신기술우수제품(NEP) 인증		04) 해외인증	
		05) 메인비즈인증		06)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07)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정		08) 기타 ()	
		09) 해당없음(이유:)			

PART II. 일반현황

※ 보유 보조기기 품목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K. 보유품목 품질 인증 현황		01) 국내인증 []유 []무	03) 전수 ()건
		02) 국제 인증 []유 []무	04) 전수 ()건
L. 품질 취득인증 종류 (복수응답가능)		01) 의료기기허가(인증,신고) 04) 국가표준(KS) 07) 기타 ()	02) 단체표준 SPS -KSPA 05) FDA 인증
		03) KC인증 06) CE인증	
M. 주요판매 / 개발제품 (복수응답 가능)	판매제품 (복수응답 가능)	() *보기카드를 참고하여 아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로 입력해주십시오	
	개발제품 (복수응답 가능)	() *보기카드를 참고하여 아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로 입력해주십시오	

※ 인력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N. 성별	01) 남자	02) 여자	(A) 합계
2017년 8월 말 기준	명	명	명

O. 고용 형태	03) 정규직	04) 비정규직	05) 무급가족종사자	(B) 합계
2017년 8월 말 기준	명	명		명

- 정 규 직: 1년 이상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일하는 종사자, 자영업자
- 비 정 규 직: 1년 미만 계약된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파트타임, 훈련생 등
- 무급가족종사자: 가족이나 친인척 중 무급으로 정규 근로시간의 1/3이상 근무

P. 부서별 현황	06) 기술개발 분야(R&D)	07) 생산분야	08) 판매/영업/ 홍보/마케팅	09) 경영기획/ 인사/총무	10) 기타	(C) 합계
2017년 8월 말 기준	명	명	명	명	명	명

- 1인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원수를 중복으로 기입하지 않음
연중 업무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의 인력으로 분류 함

Q. 학력	11) 고졸이하	12) 전문학사	13) 학사	14) 석사	15) 박사	(D) 합계
2017년 8월 말 기준	명	명	명	명	명	명

R. 자격증 현황	16) 보조 공학사	17) 사회 복지사	18) 의지 보조기사	19) 의료기사	20) 의공기사	21) 기타	(E) 합계
2017년 8월 말 기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보유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증 보유자

의지/보조기사: 의지/보조기사 자격증 보유자

의료기사: 의료기사 자격증 보유자(기능사, 산업기사 제외)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의공기사: 의공기사 자격증 보유자 (기능사, 산업기사 제외)

기타: 위 제시된 자격증 이외 보건/의료산업 관련 자격증 보유자

PART Ⅲ. 운영현황

문1) 귀사의 매출액(최근 3년 전체 매출 기준)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1) 전체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보조기기 매출액 또는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문2) 귀사의 판매처별 판매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2016년 기준)

(※ 해당 판매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통업체에 납품	2) 국가 공적급여 납품	3) 개인에게 직접 판매	4)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기관에 납품	5) 수출	6) 기타	합계
%	%	%	%	%	%	100%

문3) 귀사의 판매방식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오프라인 판매 방식 | ② 온라인 판매방식 |
| ③ 온·오프라인 판매 방식 | ④ 기타 () |

문4) (생산하는 기업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귀사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 | |
|-------------------------------|---------------------|
| ① 자체 생산 | ② OEM 해외생산(제조) 후 판매 |
| ③ 부분품 수입 후 완제품 조립 | ④ 부분품 외주생산 후 완제품 조립 |
| ⑤ 기타 () | ⑥ 자체 생산품 없음 |

문5) 귀사는 생산 및 제조 품목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예(→ 6번 문항 응답) | ② 아니요(→ 7번 문항으로 이동) |
|-----------------|---------------------|

문6) (수출하는 기업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수출 국가와 수출액을 적어 주십시오.

(2016년 기준)

※ 완제품만 해당됨(부품 수출은 포함되지 않음)

구분	수출액	
2016년	백만원	2016년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 %

수출 대상 국가/지역	수출품목 (보기카드를 참고하여 p.3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로 입력해주시오)	수출 비중
1) 북미 (미국/캐나다)		%
2) 유럽 (러시아 포함)		%
3) 중화권 (중국/홍콩/대만)		%
4) 중남미		%
5) 일본		%
6) 동남아 (싱가폴/베트남/인도 포함)		%
7) 중동권		%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합계		100 %

문7) 귀사는 생산제품 이외 다른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까?

※ 완제품만 해당됨(부품 수입은 포함되지 않음)

- ① 2016년 수입 있음 (→ 8~9번 문항 응답)
 ② 2016년 이전 제품수입 있었으나, 2016년 수입 없었음 (→ PARTIV.제도개선으로 이동)
 ③ 제품 수입 경험 없음 (→ PARTIV.제도개선으로 이동)

문8) (수입하는 기업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수입 국가와 수입액을 적어 주십시오.

(2016년 기준)

※ 완제품만 해당됨(부품 수입은 포함되지 않음)

구분	수입액
2016년	백만원

수입 대상 국가/지역	수입품목 (보기카드를 참고하여 p.3의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로 입력해주시오)	수입 비중
1) 북미 (미국/캐나다)		%
2) 유럽 (러시아 포함)		%
3) 중화권 (중국/홍콩/대만)		%
4) 중남미		%
5) 일본		%
6) 동남아 (싱가폴/베트남/인도 포함)		%
7) 중동권		%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합계		100 %

문9) 생산 품목 이외 수입을 병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국내 생산품 대비 가격 경쟁력 높음
- ② 국내제조 제품 존재하지 않음
- ③ 해당제품에 대한 국내제조 인프라 미비(공장, 설비, 부품 등)
- ④ 우수(고품질) 제품 확보
- ⑤ 소비자 욕구 반영(소비자의 국내제품에 대한 낮은 신뢰도)
- ⑥ 생산품 이외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
- ⑦ 기타 ()

PART IV. 제도개선

문10) 보조기기 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
- ② 연구개발비용 지원
- ③ 전문인력 양성
- ④ 해외시장 개척지원
- ⑤ 정부 및 공공부문의 시장수요 창출(공적급여확대)
- ⑥ 세제혜택 증가
- ⑦ 기술표준 제정
- ⑧ 기술 이전
- ⑨ 우수업체 지정
- ⑩ 기타 ()

문11) 국내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2) 국내 보조기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성명		조사일시	월	일
검증원		에디터		

부록 2. 산업실태조사 대상 사업체 정보

■ 생산업(제조업)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	동화메디칼	서울	생산업(제조업)	02-969-9910
2	(주)하우메디케어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42-1199
3	핑키밍키	서울	생산업(제조업)	02-812-0348
4	영화의료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37-4707
5	용성오토핸드콘트롤	서울	생산업(제조업)	02-423-9999
6	대안의료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437-8275
7	한일보조기센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32-7137
8	성림교역	서울	생산업(제조업)	02-2068-8191
9	세창정형제화연구소	서울	생산업(제조업)	02-473-4545
10	소망의수족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286-9985
11	세기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63-5523
12	현대의료산업사	서울	생산업(제조업)	02-942-2298
13	신일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812-8650
14	지에스메디텍	서울	생산업(제조업)	070-7568-2473
15	(주)원남메디칼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674-5000
16	광화문의수족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20-1189
17	금강보청기-본점	서울	생산업(제조업)	1588-5233
18	경희의지/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969-6492
19	한국와이맥스 유한회사	서울	생산업(제조업)	02-2093-1388
20	서울메디칼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33-6162
21	서울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17-0248
22	보이스웨어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016-8500
23	현대의수족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830-4733
24	네오엑세스	서울	생산업(제조업)	02-6959-2250
25	동아메디칼	서울	생산업(제조업)	02-855-1288
26	새한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42-3131
27	서대문의수족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35-6003
28	한미실리콘의수족센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04-4609
29	정립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90-6111
30	광선메디칼	서울	생산업(제조업)	02-435-1415
31	주식회사 사랑으로	서울	생산업(제조업)	070-7757-2014
32	성애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2611-7047
33	금호환경기계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665-3401
34	알파앤오매가	서울	생산업(제조업)	02-536-6523
35	솔브레이스상사	서울	생산업(제조업)	02-2678-9641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36	대양의수족	서울	생산업(제조업)	02-471-3893
37	엑스비전테크놀로지	서울	생산업(제조업)	02-888-1623
38	영일엠	서울	생산업(제조업)	031-768-8501
39	대중메딕스(주)	서울	생산업(제조업)	02-2256-7722
40	천호보조기상사	서울	생산업(제조업)	02-488-5167
41	(주)에스티앤지	서울	생산업(제조업)	02-6267-8195
42	딜라이트 주식회사	서울	생산업(제조업)	02-6354-2611
43	(주)알푸스	서울	생산업(제조업)	02-546-8875
44	(주)베토벤보청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54-7771
45	(주)지멘허어링코리아	서울	생산업(제조업)	02-2015-0433
46	삼화의지/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42-3314
47	한양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466-8419
48	하나메디칼	서울	생산업(제조업)	02-857-8886
49	반석메디텍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92-3950
50	국민의지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09-0170
51	연세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15-9157
52	구본교의수족연구센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868-4569
53	그림플레이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79-6779
54	제이팍코퍼레이션	서울	생산업(제조업)	02-6910-0130
55	일광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63-9855
56	(주)박의지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07-4092
57	휴본	서울	생산업(제조업)	02-822-1117
58	(주)한국아팩스	서울	생산업(제조업)	02-579-3566
59	클루소프트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02-7567
60	학림공업	서울	생산업(제조업)	02-868-9371
61	유진헬스케어	서울	생산업(제조업)	02-2236-6966
62	두손의수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15-2456
63	사랑의줄잇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933-8794
64	시온제화(시온메디칼)	서울	생산업(제조업)	02-912-9626
65	에스앤비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56-8437
66	동현의지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32-9907
67	한빛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12-3780
68	명성보조기상사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18-2409
69	동민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14-4354
70	대림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15-4649
71	삼성의수족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22-1269
72	엠에스	서울	생산업(제조업)	02-713-8831
73	이케어	서울	생산업(제조업)	02-484-7988
74	주식회사 삼성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411-2536
75	휴먼보조기	서울	생산업(제조업)	02-2658-0066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76	지니큐브	서울	생산업(제조업)	02-3285-2370
77	오티콘코리아	서울	생산업(제조업)	02-2022-3900
78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831-7012
79	사람을보호하는 기업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311-2907
80	종합특수보조기상사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7-9738
81	성화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757-1813
82	ORTEC (올텍)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305-0895
83	주식회사 씨앤에이글로벌가나안보청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257-3900
84	우정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6-1702
85	바이오소텍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636-6634
86	한국의료보장구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328-4534
87	은해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4-6040
88	국제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7-3429
89	뉴로의수족보조기상사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8-7368
90	초량의수족보조기상사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8-2071
91	독일스타보청기(주)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804-9999
92	광원메디텍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304-1520
93	대동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4-0288
94	고려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7-9946
95	참좋은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2-0980
96	가온에이스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208-8357
97	태천의료산업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327-4505
98	성모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6-5689
99	뉴로메디케어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818-8170
100	(주)힐닉스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5-0707
101	대성홀케어 (주)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365-2233
102	오소오슬림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782-3590
103	선진재활의료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862-6231
104	우리메디칼(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4-5999
105	아이온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202-3438
106	동명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8-7430
107	씨앤피(C&P)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742-2209
108	삼인정밀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727-3602
109	호림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464-0011
110	동양앤디씨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918-0202
111	중앙의지/보조기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866-6236
112	티에이치케이컴퍼니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643-1300
113	조은오소텍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638-3939
114	삼원스카이	부산	생산업(제조업)	051-325-5100
115	세원프로에이드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963-9040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16	포트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768-8397
117	OK 의수족보조기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256-2255
118	중앙보조기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425-7018
119	신광무역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593-0811
120	한국보조기상사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255-4580
121	지오메디텍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353-7575
122	동진보조기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257-4983
123	유광정밀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357-5512
124	(주)대원MS-영남베드앤메디칼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287-5757
125	국제물류기계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312-0077
126	이레 의수족보조기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763-0953
127	SH 의지센터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955-4969
128	미키코리아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562-7501
129	대구제일보조기.의수족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561-0220
130	미래보조기상사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426-6658
131	대구보조기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422-0302
132	지엘보조기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651-9846
133	대호보조기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475-7575
134	현대보조기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422-7878
135	주식회사 소리안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431-5931
136	신세계의수족보조기센터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353-6639
137	에스피앤유	대구	생산업(제조업)	070-8977-5555
138	보성메디케어	대구	생산업(제조업)	053-422-0211
139	신영메디칼보조기	인천	생산업(제조업)	-
140	유비큐판매(주)	인천	생산업(제조업)	1688-8766
141	민택산업	인천	생산업(제조업)	032-564-9610
142	서대문보조기의료기	인천	생산업(제조업)	032-516-0344
143	디비케이	인천	생산업(제조업)	02-6204-2503
144	어니스트비전	인천	생산업(제조업)	032-875-8895
145	포시존상사	인천	생산업(제조업)	1899-0125
146	서범보조기상사	인천	생산업(제조업)	032-431-4406
147	광일케어	인천	생산업(제조업)	032-576-5361
148	썬의지/보조기의료기	인천	생산업(제조업)	032-517-8982
149	제이에스메디텍	인천	생산업(제조업)	032-506-1937
150	세광의수족	광주	생산업(제조업)	062-224-8222
151	세인의수족	광주	생산업(제조업)	062-368-7582
152	전남메디텍	광주	생산업(제조업)	062-232-6949
153	광주의수족	광주	생산업(제조업)	062-225-0302
154	네요	광주	생산업(제조업)	062-228-5848
155	성도재활센터	광주	생산업(제조업)	062-675-2626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56	현대의수족	광주	생산업(제조업)	062-672-0665
157	(주)한일의수족	광주	생산업(제조업)	062-224-1504
158	호남의수족	광주	생산업(제조업)	062-222-6878
159	조은메디칼(주)	대전	생산업(제조업)	042-822-6122
160	동남의지	대전	생산업(제조업)	031-255-1306
161	셀바스헬스케어	대전	생산업(제조업)	042-864-4460
162	장애인의수족보조기	대전	생산업(제조업)	042-222-8182
163	서울의지연구소	대전	생산업(제조업)	042-255-2032
164	그린메디케어	대전	생산업(제조업)	042-486-8371
165	에이치씨메디칼	대전	생산업(제조업)	042-489-5536
166	통합의수족보조기제작소	대전	생산업(제조업)	042-257-6585
167	신용의수족보조기상사	대전	생산업(제조업)	042-254-6763
168	원남의지	대전	생산업(제조업)	042-257-2480
169	우정보조기상사	울산	생산업(제조업)	052-242-1021
170	세운의료기보조기	울산	생산업(제조업)	052-281-1147
171	성남보조기상사	울산	생산업(제조업)	052-243-2331
172	울산의수족보조기	울산	생산업(제조업)	052-243-1148
173	블루엔터프라이즈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2-249-7712
174	백제보조기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253-6884
175	삼마메디칼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576-0373
176	(주)해피베드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11-8315
177	휴먼디자인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291-9957
178	(주)지엘코리아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712-2811
179	에스엔씨케어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591-0975
180	쉴테크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431-7915
181	에이원의료기산업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293-6009
182	영원메디칼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484-6162
183	썬웨이브텍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421-0457
184	창림모아츠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359-8323
185	코지케어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44-3326
186	휴먼케어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486-9015
187	(주)성도엠씨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2-672-1381
188	샘물정보통신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753-0293
189	차울이앤지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89-5150
190	대한정형의지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2-655-8271
191	리프트케어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2-849-2985
192	남양전자기공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68-8436
193	팜파스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83-8384
194	희망메디칼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99-6801
195	수원의지센터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258-8233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96	함께하는사람들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745-0025
197	두원씨앤씨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353-9040
198	(주)씨에스테크놀로지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97-6049
199	만드로 주식회사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70-4405-9995
200	다산일렉트론(주)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500-4641
201	대한의수족보조기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492-8542
202	미키코리아메디칼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77-7971
203	엔에스비에스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65-7989
204	래미안보장구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07-7762
205	한일이지/보조기센터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651-2480
206	대성화학공업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355-6080
207	엔티바이오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532-5987
208	주식회사 휠라인-제조업체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734-1874
209	부천보조기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2-657-0114
210	한국보조기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444-2400
211	세비앙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765-3110
212	서광의수족보조기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45-9956
213	하라테크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2-3452-8410
214	팀모빌리티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8059-0565
215	아시아엠이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677-7522
216	(주)엠펙에스코리아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286-3990
217	(주)오피엘코리아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2-6403-2390
218	헤스테나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70-8835-1779
219	경기의수족보조기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239-4382
220	세움메디케어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
221	(주)에이치비티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447-0425
222	(주)닛신메디칼성남지점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737-2884
223	우성이엔지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864-0394
224	미래제화연구소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2-3427-0389
225	이지무브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689-3114
226	이지시스템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720-5010
227	영풍보조기제작소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454-9912
228	삼주유니콘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988-4363
229	엠투엠넷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387-3311
230	평화양행	경기도	생산업(제조업)	031-593-4130
231	태인의수족	강원	생산업(제조업)	033-648-3631
232	고려보조기	강원	생산업(제조업)	033-646-7477
233	춘천의수족보조기상사	강원	생산업(제조업)	033-253-7385
234	원주천호보조기	강원	생산업(제조업)	033-762-8844
235	케어라인	충북	생산업(제조업)	043-543-5721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236	동양라바	충북	생산업(제조업)	043-836-8593
237	폴리텍	충북	생산업(제조업)	041-541-5160
238	대성보조기	충북	생산업(제조업)	043-843-1343
239	청주보조기	충북	생산업(제조업)	043-264-1322
240	대원의지	충북	생산업(제조업)	043-265-4811
241	공방오피마인드	충남	생산업(제조업)	041-561-4506
242	바른몸 재활공방	충남	생산업(제조업)	041-579-3204
243	하나메디케어	충남	생산업(제조업)	041-571-6100
244	위드알앤에이	충남	생산업(제조업)	041-583-3052
245	(주)거봉	충남	생산업(제조업)	041-541-0360
246	실버코리아	충남	생산업(제조업)	041-669-7484
247	웰라이프	충남	생산업(제조업)	041-575-5368
248	월드케어	충남	생산업(제조업)	041-573-8878
249	한빛의수족보조기	충남	생산업(제조업)	041-575-8900
250	오텍	충남	생산업(제조업)	041-338-8261
251	통합의수족보조기제작소	전북	생산업(제조업)	063-271-6585
252	새누리	전북	생산업(제조업)	063-832-9576
253	서강재활사	전북	생산업(제조업)	063-246-2079
254	누리보조기	전북	생산업(제조업)	063-263-3199
255	전북재활사	전북	생산업(제조업)	063-274-6627
256	해울	전북	생산업(제조업)	063-851-8652
257	(유)하늘케어	전북	생산업(제조업)	063-271-9966
258	군산의료보조공학센터	전북	생산업(제조업)	063-466-2257
259	하나의수	전남	생산업(제조업)	061-722-9596
260	해성재활사	전남	생산업(제조업)	061-741-8085
261	(주)맨엔텔	경북	생산업(제조업)	054-444-2377
262	ORTEC(올텍)보조기	경북	생산업(제조업)	054-273-7767
263	일심보조기	경북	생산업(제조업)	054-535-0690
264	나이스텍	경북	생산업(제조업)	053-961-6568
265	동성보조기의료기	경북	생산업(제조업)	054-247-7410
266	세라톤보청기	경북	생산업(제조업)	054-452-9222
267	예손의료보조기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241-2225
268	경남보조기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242-0815
269	태동프라임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326-3171
270	엠씨텍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323-5195
271	(주)오케이메디텍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252-5567
272	동남보조기상사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334-3477
273	진주보조기상사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757-1569
274	애스앤애프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325-5596
275	한신의료보조기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247-8183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277	미음드레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863-3440
278	호형이엔지	경남	생산업(제조업)	070-7842-9080
279	엠에스마산보조기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222-8000
280	상아보조기상사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759-8855
281	동명보조기	경남	생산업(제조업)	055-244-9597
282	국립재활보조기	제주	생산업(제조업)	064-752-1292
283	소망보조기	제주	생산업(제조업)	064-752-7805

유통업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	엘피케이에스	서울	유통업	02-3477-3006
2	아이루페	서울	유통업	02-784-0118
3	조아	서울	유통업	02-322-8242
4	굿모닝보청기(주) 본점	서울	유통업	02-468-9600
5	(주)유진메디케어	서울	유통업	02-2236-2306
6	오서코리아주식회사	서울	유통업	070-4610-0012
7	(주)태양메디텍	서울	유통업	02-363-9462
8	메디타운	서울	유통업	02-400-0677
9	케어라이프코리아(주)	서울	유통업	02-455-0858
10	(주)동승통상	서울	유통업	02-3447-1488
11	한리텍	서울	유통업	02-400-3172
12	보장구 메디칼	서울	유통업	1544-3536
13	홍익무역	서울	유통업	02-872-3349
14	휴원트	대구	유통업	053-324-2955
15	토마토헬스케어	광주	유통업	062-447-4748
16	도울산업	경기도	유통업	-
17	케어맥스코리아	경기도	유통업	031-901-9163
18	페이드코리아	경기도	유통업	070-4417-7332
19	에고테크	경기도	유통업	031-717-3261
20	인투씨앤씨	경기도	유통업	070-4755-0030
21	(유)진산메디칼	전북	유통업	063-227-9034
22	동아메디타운	전북	유통업	063-274-561
23	더존메딕스	경남	유통업	055-353-5625
24	주식회사 클리어뷰코리아	경남	유통업	055-336-4743

■ 판매업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서울	판매업	02-577-3831
2	오티콘보청기	서울	판매업	02-2022-3900
3	윙택이엔지	서울	판매업	02-567-0888
4	소리플러스	서울	판매업	02-2614-7711
5	비전케이	서울	판매업	02-2168-3515
6	오렌지실버어르신용품점	서울	판매업	02-532-9599
7	(주)엠코리아홈케어	서울	판매업	02-1599-9363
8	라이프 서포트 스테이션(LSS)	서울	판매업	02-431-6105
9	메디온	서울	판매업	02-2235-8083
10	케어런의료기	서울	판매업	02-900-3116
11	노바의료기	서울	판매업	02-2638-0005
12	디인비 (DinB)	서울	판매업	02-3395-9450
13	제이엔헬스케어	서울	판매업	02-401-1475
14	소담보청기	서울	판매업	02-2295-0110
15	(주)동산히어링 스타키보청기 성동지점	서울	판매업	02-465-0101
16	(주)동방	서울	판매업	02-869-8582
17	(주)케이디텍	서울	판매업	02-741-3378
18	강남국제보청기	서울	판매업	02-537-0309
19	케어존	서울	판매업	02-2667-3091
20	소리보청기	서울	판매업	02-3280-9258
21	서울보청기(주)	서울	판매업	02-1588-2365
22	(주)한국보청기	서울	판매업	02-2274-3755
23	샤크로	서울	판매업	070-7410-6593
24	액티피아메디칼	서울	판매업	1588-3037
25	핸디인터내셔널	서울	판매업	02-725-2190
26	닷	서울	판매업	02-864-1113
27	(주)알고코리아	서울	판매업	02-536-6523
28	모두피아	서울	판매업	02-2618-6782
29	영일의료기	서울	판매업	02-2268-0101
30	독일 지멘스 보청기 서대문구 프리미엄 센터	서울	판매업	02-391-4999
31	케어라이프	서울	판매업	02-2068-7942
32	(주)오픈메디칼	서울	판매업	-
33	코리아케어서프라이	서울	판매업	02-701-8362
34	건용아이비씨	서울	판매업	02-563-5260
35	(주)애니메디	서울	판매업	02-2678-9993
36	스타키보청기성수센터	서울	판매업	02-465-6080
37	빛과세상광명사	서울	판매업	02-754-0533
38	바투비전	서울	판매업	02-463-4669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39	주식회사 필라이프	서울	판매업	02-2634-8822
40	대한의수족연구소	서울	판매업	02-763-1581
41	순음보청기	서울	판매업	02-742-7741
42	쌍봉종합의료기	서울	판매업	02-763-8601
43	위드로	서울	판매업	02-429-2505
44	보이스아이	서울	판매업	02-811-3760
45	(주)바이오피지오-하트의료기	서울	판매업	070-4200-8459
46	나눔보청기 대전용문점-나눔보청기직영점	서울	판매업	02-2285-5421
47	아이미르	서울	판매업	02-404-8322
48	준메디칼	서울	판매업	02-6104-3656
49	이원케어	서울	판매업	02-797-7992
50	성림메디칼	부산	판매업	051-581-5896
51	유창의료기 중부지사	부산	판매업	051-244-0982
52	네오텍	부산	판매업	051-624-3700
53	참좋은메디칼	부산	판매업	051-441-2522
54	백세건강 메디칼	부산	판매업	051-862-3147
55	대한독일보청기	부산	판매업	051-558-3999
56	독일보청기-독일지멘스보청기	부산	판매업	051-803-0606
57	한신의료기	부산	판매업	051-245-1911
58	명인보조기상사	부산	판매업	051-806-7136
59	동국의료기	부산	판매업	051-311-8826
60	도원보조기	부산	판매업	051-639-9293
61	대동종합보조기	부산	판매업	051-891-3550
62	(주)보필서부산센터	부산	판매업	051-257-9924
63	조은소리보청기	대구	판매업	053-963-9040
64	화신의료기	대구	판매업	053-626-8991
65	라인메디칼	대구	판매업	053-587-5838
66	백건스쿠터	대구	판매업	-
67	세기헬스마트	대구	판매업	053-426-7755
68	한독보청기	대구	판매업	053-257-8500
69	(주)더존보청기	대구	판매업	053-422-1114
70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대구	판매업	053-654-9352
71	금아의수족연구소	대구	판매업	053-751-5430
72	재활보조기	대구	판매업	053-255-2257
73	서문보청기	대구	판매업	053-525-2112
74	메디존	대구	판매업	053-323-7500
75	스위트존	대구	판매업	053-422-0211
76	유투케어	대구	판매업	053-525-5520
77	100세동안남동구점	인천	판매업	032-473-0100
78	동신의료기	인천	판매업	032-526-8682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79	누리복지용구	인천	판매업	032-468-8853
80	이음보청기	인천	판매업	032-568-0205
81	케어114	인천	판매업	032-556-4114
82	(주)광우헬스케어-리사운드보청기	인천	판매업	032-523-9222
83	다솜메디칼	인천	판매업	032-777-3516
84	독일디지털보청기	인천	판매업	032-553-4800
85	에프에스텍	인천	판매업	032-875-2295
86	(주)오버컴	인천	판매업	032-441-0078
87	(주)백두실버랜드	광주	판매업	062-673-2362
88	(주)가가헬스케어-)가가의료기	광주	판매업	062-1522-4361
89	제인실업	광주	판매업	062-265-2506
90	세기메디칼	광주	판매업	062-367-5700
91	광주엠코리아	광주	판매업	-
92	소리언어청각센터 소리보청기	대전	판매업	042-526-6880
93	소리대장간	대전	판매업	1588-3975
94	건강한100세하나복지용구	대전	판매업	042-823-8321
95	밝은보청기	대전	판매업	042-471-9796
96	모두히어링	대전	판매업	042-221-4260
97	(주)소리대장간	대전	판매업	1588-3975
98	휠체어 타는 사람들	대전	판매업	-
99	에스에스메디칼	대전	판매업	042-223-7119
100	대명보조기	대전	판매업	042-256-8019
101	바른	대전	판매업	042-822-2093
102	독일보청기	울산	판매업	052-261-6185
103	고려종합의료기상사	울산	판매업	052-274-1910
104	뉴웨이인터내셔널	경기도	판매업	031-1644-2269
105	다사랑의료기	경기도	판매업	031-637-1372
106	씨엔에스코리아	경기도	판매업	031-740-9898
107	실버케어114	경기도	판매업	032-323-8106
108	금빛행복나라	경기도	판매업	032-676-0612
109	베스트메딕스	경기도	판매업	070-8181-0226
110	(주)들리미	경기도	판매업	031-924-6610
111	서울보청기 전문센터	경기도	판매업	031-666-3348
112	새서울 보조기	경기도	판매업	031-877-1029
113	(주)나사	경기도	판매업	031-225-7658
114	(주)나누우리	경기도	판매업	031-979-2185
115	케어손	경기도	판매업	031-976-5812
116	케어베드	경기도	판매업	031-919-4030
117	고양의료기100동안복지용구사업소	경기도	판매업	031-967-9967
118	메디앤샵	경기도	판매업	032-325-7574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19	그랑노블	경기도	판매업	02-6052-5365
120	헥스온	경기도	판매업	031-709-0101
121	HYMN Mc	경기도	판매업	02-2043-4900
122	동탄이지보청기	경기도	판매업	031-8015-2777
123	바이오보청기 경기총판	경기도	판매업	031-282-3453
124	주식회사 알에스케어서비스	경기도	판매업	031-901-3658
125	주식회사 티오엠모빌리티	경기도	판매업	031-901-8958
126	인메디케어 (남수원지사)	경기도	판매업	031-222-7681
127	(주)나눔에이치앤씨	경기도	판매업	02-3667-7575
128	동화의료기	경기도	판매업	031-848-5185
129	대하메디	경기도	판매업	031-759-3651
130	와우보청기	경기도	판매업	031-936-7557
131	(주)해피라이프	경기도	판매업	02-1599-2585
132	회르만보청기 종로점	경기도	판매업	02-730-8489
133	실버의료기	경기도	판매업	070-7499-3259
134	인디풋	경기도	판매업	031-758-1808
135	포에버헬스케어	경기도	판매업	031-499-4516
136	선진메디칼	경기도	판매업	031-641-1171
137	동탄보청기 와이텍소보청기	경기도	판매업	031-613-9090
138	재활의학 조선의지	경기도	판매업	031-751-0747
139	은성인터내셔널	경기도	판매업	031-970-9800
140	집으로 메디케어	경기도	판매업	031-851-5275
141	고박사보청기	강원	판매업	033-747-3279
142	카나다보청기센터	강원	판매업	033-648-5025
143	(주)생활낙원	충북	판매업	043-225-7077
144	이오의료기	충북	판매업	043-857-4857
145	메디케어히어링주식회사	충북	판매업	043-900-9224
146	성우보조기	충북	판매업	043-651-9995
147	세운의료기	충북	판매업	043-848-7976
148	의료기백화점	충남	판매업	041-571-8985
149	이원의료기	충남	판매업	041-852-5657
150	미래보조기	충남	판매업	041-573-6665
151	종합의료보조기센터	전북	판매업	063-284-3224
152	대우의수족보조기	전북	판매업	063-841-5172
153	조영식재활사	전북	판매업	063-283-1742
154	전주보청기	전북	판매업	063-251-5757
155	전남보청기	전남	판매업	061-284-5117
156	제일의지 보조기	전남	판매업	061-727-5988
157	안동보조기산성메디칼	경북	판매업	054-822-9999
158	이원의료기문경점	경북	판매업	054-555-2121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59	덴마크보청기	경북	판매업	054-956-7025
160	동아의료보조기.보청기	경북	판매업	054-858-3334
161	동양의료보조기보청기	경북	판매업	054-553-7127
162	파티마보조기의료기백화점	경북	판매업	054-273-4503
163	남해독일보청기	경남	판매업	055-864-1201
164	한신브레텍독일보청기	경남	판매업	055-637-8332
165	동아의료기	경남	판매업	055-745-0500
166	맑은소리보청기	경남	판매업	055-356-7166
167	스마일케어	경남	판매업	055-326-0969
168	좋은보청기	경남	판매업	055-386-0330
169	독일의료기.보청기	경남	판매업	055-327-0040
170	동방보조기상사	경남	판매업	055-753-9944
171	사람과 세상	경남	판매업	070-8229-9006
172	제주보청기	제주	판매업	064-748-6233
173	세종와우메디컬	세종	판매업	-

■ 임대업(대여업)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	케어빌리지	서울	임대업(대여업)	02-599-5354
2	(주)디보스케어(강북센터)	서울	임대업(대여업)	02-352-9924
3	디와이메닉스(주)	서울	임대업(대여업)	02-848-2311
4	주식회사 동산메디케어	대구	임대업(대여업)	053-765-8988
5	콤스테크놀러지	경기도	임대업(대여업)	031-776-3900
6	헬스케어메디텍	강원	임대업(대여업)	033-651-1401

■ 수입업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	에이블라이프	서울	수입업	1544-5399
2	(주)대경인터내셔널	서울	수입업	02-587-9311
3	진산메디칼	서울	수입업	02-363-4727
4	엑티브프로코리아	서울	수입업	02-3291-4565
5	휠로피아	서울	수입업	02-2607-8655
6	오픈케어	서울	수입업	02-838-5033
7	대성공업	대구	수입업	053-581-5566
8	제이엠텍	경기도	수입업	031-385-2014
9	휠스코리아	경기도	수입업	031-746-0584
10	무궁화오토	경기도	수입업	031-284-1870

■ 수리업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	로타리양화	광주	수리업	062-227-6571
2	성지보조기상사	경남	수리업	055-354-6691

■ 기타

No	사업체명	소재지	주 업체유형	연락처
1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서울	기타	070-7945-1010
2	셀바스에이아이	서울	기타	02-6190-7500

부록 3.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 2016. 12. 30] [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및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국가는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장 또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① 보조기기를 생산·판매·유통·대여·수입·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유통·대여·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기기센터

제13조(중앙보조기기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4.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6. 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앙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중앙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보조공학사”라 한다)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종류·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③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④ 보조공학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 12. 30] 제15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9. 19.>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 : 2018. 12. 30] 제16조

제17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 12. 30] 제17조

제18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시행일 : 2018. 12. 30] 제18조

제19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시행일 : 2018. 12. 30] 제19조

제20조(수수료) 보조공학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일 : 2018. 12. 30] 제20조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압류 등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급 또는 지원된 보조기기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3662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15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보조공학사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2항”을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